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한국”)과 캐나다(“캐나다”)(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양국 국민 간의 특별한 우호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및 지역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및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폭 넓은 국제 협력의 촉매가 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지역 및 양자간 협력 기제하의 그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통합을 증진하며,

그들의 영역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확장되고 확고한 시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근로 조건 및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한 증진과 보호가 호혜적인 사업 활동의 촉진을 유도할 것을 인정하고,

무역에 대한 왜곡을 축소하고,

그들의 무역을 관할할 명확하고, 투명하며, 상호 유리한 규정을 수립하고,

사업 기획과 투자를 위하여 예측 가능한 상업적 체제를 보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환경에 관한 법과 규정의 집행을 향상시키고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환경 보호와 보전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집행하고, 노동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이 그들의 문화 정책을 보전하며,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권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를 목적으로 그들의 문화 산업을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적시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1.3 조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는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경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의무의 범위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 영역 내의 지역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역정부에 의해 취하여진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제21장(분쟁해결)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이 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 조

다른 협정의 참조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참조하거나, 참조로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그 참조는 그러한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불가분의 일부인 관련 주석, 주해, 의정서, 부속서, 부록 등을 포함한다.

제 1.6 조

문화 협력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고 세계 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서로의 경쟁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 문화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합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에 합의한다. 미래의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섭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문화유산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이다.

4. 제 23.2 조(개정)는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제 8 장(투자) 및 제 21 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 규정은 제 2 항에 따라 협상되는 협정을 포함하여 이 조에 적용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자동차 분야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 촉진

양 당사국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생산과 공급망의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분야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8 조

일반적 적용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란 제20.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립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과세를 말하며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추가세 또는 추가금의 형태를 포함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세계무역기구의 의무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라. 수입수량제한 및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GPA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4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조치는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법에 따른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뉴욕협약이란 1958 년 6 월 10 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부속서 15-가(공기업의 국가별 정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소유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6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상의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이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을 말한다.

제 1.9 조
국가별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정부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단일 공화국인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주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주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주를 말하며, 유콘과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그리고 누나부트를 포함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1) 캐나다의 영토, 상공, 내수 및 영해

2)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6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5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대륙붕

부속서 1-가
다자간 환경협정

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9년 6월 22일 개정판)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90년 6월 29일, 1992년 11월 25일, 1997년 9월 17일, 1999년 12월 3일 개정판)

다.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라.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에서 채택된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마.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규정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 1 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한다.

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 또는

나. 최혜국 적용 관세율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그들의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특혜관세도 부여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외의 자국의 관세를 수정하는 것

나.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다. 이 협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하의 모든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 2.4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제 12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

나. 언론매체 또는 음향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

라.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제 1 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인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다.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담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달리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수반할 것¹

마.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바. 그 상품이 그 인의 출국 시 또는 1 년 이내 일시 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그 밖의 더 긴 기간 내에 수출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입될 것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제 1 항라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¹다른 형태의 통화 담보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담보는 이 호에서 언급된 담보 요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비통화 형태의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담보는 그 당사국이 사용하는 기존 형태의 담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 임대 또는 전시 또는 시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라. 그 상품이 일시 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간 내에 수출될 것, 그리고
-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입될 것

4. 상품이 제 1 항에 따라 무관세 일시 반입이 허용되고 당사국이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부과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의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모든 부과금, 그리고
- 나. 자국 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부과금 또는 벌금

5. 제 8 장(투자) 및 제 9 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나. 당사국은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당사국은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하는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특정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그 상업용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 인쇄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부속서 2-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²
2. 한쪽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7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1 조에 따른 경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를 따른

²이 항은 외국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상태로 수입되고,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외국 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상태로 재수입되지 않는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규정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 1 항에 따라 통합된 1994 년도 GATT 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가격 요건 및 수입가격 요건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4.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가격설정,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한쪽 당사국은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자동차 상품에 관한 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그 비당사국이 원산지인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부여한다.

제 2.10 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1. 한쪽 당사국은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세관 사용자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어떤 것도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 8 조를 변경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 2.11 조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은 그들의 상호무역에서 양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 평가 규칙을 규율한다.

제 2.12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어느 상품의 총수입량이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와 합치하게,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적용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적용관세율, 또는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에 따라 정해지며, 부속서 2-라에 정의된 대로 관세가 부과된 당해 연도 말까지만 유지된다.
4.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제 7 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또는
- 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따른 조치

5. 각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부과한 후 60 일 이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 2.14 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당사국은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 후, 그리고
- 나.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제 2.13 조 관세율할당 운영 및 이행

1. 부속서 2-사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그 밖의 모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그리고
 - 나. 수입하는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기업이나 인은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각 연도에 걸쳐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 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2-사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5.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관세율할당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제 4 절 상품무역위원회

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어느 때에도 회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 가.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한다.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제안을 검토한다.

- 다. 이 장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그리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변경에 합치되도록 이 협정의 그 밖의 조항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공동위원회에 제안한다.
- 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관세 또는 비관세 문제를 검토한다.³ 그리고
- 마. 다음이 제기한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 한쪽 당사국, 또는

2) 제 4 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3. 위원회가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그러한 회부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 20.1 조(공동위원회)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4.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이 장의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90 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된 때에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당사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어떠한 사안이라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가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하여 합의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이 장의 수정 또는 추가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취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이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원산지 판정이나 사전심사결정을 내리거나, 이 협정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대로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

³ 양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라벨링 및 정의를 포함한 아이스와인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한다.

8.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다에 규정된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절 정의

제 2.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자료가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필름 또는 기록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하고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에 열거된 상품을 말하며,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된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이 협정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상품이란 다음의 상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가. 트랙터(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호, 제 8425.39 호, 제 8425.41 호, 제 8425.42 호, 제 8425.49 호, 제 8426.11 호, 제 8426.12 호, 제 8426.19 호, 제 8426.20 호, 제 8426.30 호, 제 8426.41 호, 제 8426.49 호, 제 8426.91 호, 제 8426.99 호, 제 8427.20 호, 제 8428.10 호, 제 8428.20 호, 제 8428.31 호, 제 8428.32 호, 제 8428.33 호, 제 8428.39 호, 제 8428.40 호, 제 8428.60 호, 제 8428.90 호, 제 8429.11 호, 제 8429.19 호, 제 8429.20 호, 제 8429.30 호, 제 8429.40 호, 제 8429.51 호, 제 8429.52 호, 제 8429.59 호, 제 8430.10 호, 제 8430.20 호, 제 8430.31 호, 제 8430.39 호, 제 8430.41 호, 제 8430.49 호, 제 8430.50 호, 제 8430.61 호, 제 8430.69 호, 제 8431.10 호, 제 8431.31 호, 제 8431.39 호, 제 8431.41 호, 제 8431.42 호, 제 8431.43 호, 제 8431.49 호, 제 8474.10 호, 제 8474.20 호, 제 8474.31 호, 제 8474.32 호, 제 8474.39 호, 제 8474.80 호, 제 8474.90 호, 제 8479.10 호, 제 8701.30 호, 제 8704.10 호, 제 8705.10 호, 제 8705.20 호, 제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미화 1 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에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49 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그리고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수리 또는 개조는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⁴을 만드는 작업이나 공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세 철폐 양허표란 부속서 2-라의 규정을 말한다.

⁴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만드는 생산 또는 조립의 일부인 작업이나 공정은 미완성 상품의 수리가 아니다. 상품의 구성부품은 수리 또는 개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속서 2-가

제 2.2 조 및 제 2.7 조에 대한 예외

제 1 절 한국의 조치

1.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캐나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에 의한 조치, 그리고
- 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제 2 절 캐나다의 조치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한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에 대하여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을 포함한 조치
 - 1) 원목의 수출
 - 2) 적용가능한 지방정부 법령에 따른 미가공 어류의 수출
 - 3) 관세율표에 언급된 관세상품분류코드 제 9897.00.00 호, 제 9898.00.00 호 및 제 9899.00.00 호에 해당하는 금지세번 상품의 수입
 - 4) 2001 년 「소비세법」 및 2002 년 제 22 장 개정본의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사용되는 무수 알코올에 대한 캐나다의 소비세

5) 연안무역법 S.C.(1992 년, 제 31 장)에 따라 캐나다의 연안 무역에서 선박의 사용, 그리고

6) 와인 및 증류주의 국내 판매 및 유통,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캐나다에 의한 조치

3. 제 2 항가호 1 목에 대하여, 캐나다는 원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가법」에 따른 절차가 투명하고 대중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원목 수출 통제와 관련된 「수출입허가법」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 그러한 제안의 공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캐나다는 원목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가법」 절차가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원목의 수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며, 원목 수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세계무역기구에 따라 해결된다.

부속서 2-나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국제통상 공무원, 규제 공무원 및 원목 수출의 통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 가. 임산물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 나.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 다. 세계무역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산물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한쪽 당사국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속서 2-다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는
 - 가. 규제, 국제무역 및 산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자동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부 관료를 포함한다.
 - 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한다.
 -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한 유일한 포럼이 된다.
 - 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자동차 대화체와 같은 자동차 상품 사안을 다루는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2.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3. 소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 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 2-라
관세 철폐

제 1 절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1. 양 당사국 간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합치하여 각 당사국의 각각의 관세상품분류체계에 규정된 것이다.

2.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66.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33.3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0 퍼센트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6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4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2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0 퍼센트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철폐로부터 제외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1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0.9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1.8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2.7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3.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4.5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5.5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6.4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7.3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8.2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9.1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0 퍼센트

3. 이 부속서, 부속서 2-바, 부속서 2-사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 가. 이행 1 년차란 제 23.4 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나. 이행 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다. 이행 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라. 이행 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마. 이행 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바. 이행 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사. 이행 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아. 이행 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자. 이행 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차. 이행 1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카. 이행 1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타. 이행 1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너. 이행 1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더. 이행 1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러. 이행 1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며. 이행 1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버. 이행 2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 서. 이행 2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4. 상품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2011 년 1 월 1 일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율로 한다.

5. 제 2.3 조에 따라 관세 철폐의 목적상,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양허 단계의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캐나다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0.001 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1 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제 2 절

한국에만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6. 이 절은 이 부속서에 첨부된 한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단계별 양허유형:

가. 단계별 양허유형 G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3.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66.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5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33.3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6.7 퍼센트

6) 이행 6 년차: 0 퍼센트

나. 단계별 양허유형 H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5.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71.4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57.1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42.9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28.6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4.3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0 퍼센트

다. 단계별 양허유형 I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2 년차에 기준세율의 8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7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7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7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7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라. 단계별 양허유형 J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2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9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2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단계별 양허유형 K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터 이행 7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8 년차에 기준세율의 12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0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바. 단계별 양허유형 L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25 퍼센트로 인하되고, 잔여 관세는 9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50.6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45.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39.4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33.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28.1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22.5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6.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11.2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5.6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사. 단계별 양허유형 M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9 년차부터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10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50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5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아. 단계별 양허유형 N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7.5 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2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 관세는 7.5 퍼센트로 유지되고, 이행 10 년차부터는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75.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75.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5.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5.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75.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75.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75.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75.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50.0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5.0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자. 단계별 양허유형 O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1.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3.3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5.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6.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8.3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1.7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3.3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16.7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8.3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차. 단계별 양허유형 P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2.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4.6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6.9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9.2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1.5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3.8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6.2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8.5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30.8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23.1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15.4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7.7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0 퍼센트

카. 단계별 양허유형 Q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3.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6.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3.3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6.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6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53.3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46.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40.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33.3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6.7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20.0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13.3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6.7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타. 단계별 양허유형 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4.4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8.9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7.8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72.2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66.7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61.1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55.6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50.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44.4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38.9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33.3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27.8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22.2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16.7 퍼센트
- 16) 이행 16 년차: 11.1 퍼센트
- 17) 이행 17 년차: 5.6 퍼센트
- 18) 이행 18 년차: 0 퍼센트

파. 단계별 양허유형 S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매년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15 년차까지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7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8 년차부터 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87.5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62.5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50.0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37.5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25.0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12.5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하. 단계별 양허유형 T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관세율(퍼센트)
이행 1 년차	4.2
이행 2 년차	3.5
이행 3 년차	2.8
이행 4 년차	2.1
이행 5 년차	1.4
이행 6 년차	0.7
이행 7 년차	0

거. 단계별 양허유형 U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관세율(퍼센트)
이행 1 년차	3.3
이행 2 년차	1.6

이행 3 년차	0

너. 단계별 양허유형 X의 품목에 대하여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대한민국의 양허표 LX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사항에 규정된 약정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캐나다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부속서 2-마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한국의 영역에서 캐나다의 영역으로 재반입되고, 캐나다 「해상법」에 따라 등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89 류의 다음 상품에 대하여, 캐나다는 그러한 상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가치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901.10.10호
- 제8901.10.90호
- 제8901.20.10호
- 제8901.20.90호
- 제8901.90.91호
- 제8901.90.99호
- 제8902.00.10호
- 제8904.00.00호
- 제8905.10.00호
- 제8905.20.10호
- 제8905.20.20호
- 제8905.90.10호
- 제8905.90.90호
- 제8906.90.91호
- 제8906.90.99호

부속서 2-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품목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 2.12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 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1.10.0000 호, 제 0201.20.1000 호, 제 0201.20.9000 호, 제 0201.30.0000 호, 제 0202.20.1000 호, 제 0202.20.9000 호, 제 0202.30.0000 호, 제 1602.50.1000 호 및 제 1602.50.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17,769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21,217	21,854	22,509	23,18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 세율(퍼센트)										
HSK 세번 0201.10.0000,	40.0	40.0	40.0	40.0	40.0	30.0	30.0	30.0	30.0	3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 세율(퍼센트)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72.0	72.0	72.0	72.0	72.0	54.0	54.0	54.0	54.0	54.0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23,880	24,596	25,334	26,094	26,877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24.0	24.0	24.0	24.0	24.0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43.2	43.2	43.2	43.2	43.2	0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19.1000 호 및 제 0203.19.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톤)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8,627	8,972	9,331	9,70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2.5	22.5	22.5	22.5	22.5	15.8	14.6	13.5	12.4	11.3

이행년도	11	12	13	14
발동수준(메트릭톤)	10,092	10,496	10,916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10.1	9.0	7.9	0

다.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1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톤)	545	567	589	613	638	663	690	717	746	77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5.0	25.0	25.0	25.0	25.0	17.5	16.3	15.0	13.8	12.5

이행년도	11	12	13	14
발동수준(메트릭톤)	807	839	87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11.3	10.0	8.8	0

라.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메트릭톤)	60,986	63,425	65,962	68,601	71,34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5.0	20.0	17.5	15.0	12.5	0

마.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10.0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3,60	3,70	3,81	3,93	4,05	4,17	4,29	4,42	4,56	4,69

(메트릭톤)	0	8	9	4	2	3	9	8	0	7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트)	45.0	45.0	45.0	45.0	45.0	33.8	33.8	33.8	33.8	33.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4,838	4,983	5,133	5,287	5,445	5,609	5,777	5,950	6,129	6,313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 (퍼센트)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후지사과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사과의 총메트릭톤이다.

바. 아래에 포함된 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20.1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223	230	237	244	251	259	266	274	282	291
긴급수입제한조 치	45.0	45.0	45.0	45.0	45.0	33.8	33.8	33.8	33.8	33.8

관세율(퍼센트)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300	309	318	327	337	347	358	369	380	391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 트)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동양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배의 총메트릭톤이다.

사. 아래에 포함된 겔보리 및 쌀보리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1003.00.9010 호 및 제 1003.00.902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① 1003.00.9010	324	324	324	324	324	243	243	243	243	243
② 1003.00.902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224.8	224.8	224.8	224.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① 1003.00.9010	194	194	194	194	194	0
② 1003.00.9020	179.7	179.7	179.7	179.7	179.7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3 항을 참조할 것.

아. 아래에 포함된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 세번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발동수준 (메트릭톤)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트)	304	304	304	304	304	228	228	228	228	228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4 항을 참조할 것.

자. 아래에 포함된 팔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세번 제0713.32.9000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238	298	357	417	476	500	524	547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119	186	268	364	해당 없음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412	403	394	385	376	338	325	311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55	40	25	15	해당 없음			

이행년도	9	10	11	12	13	14	15	16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571	595	619	643	666	690	714	해당 없음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297	283	217	199	180	162	143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부속서 2-사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 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에 기술된 물량의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천연꿀

2.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00
2	105
3	110
4	115
5	120
6	125
7	130
8	135
9	140
10	145
11	150
12	155
13	160
14	165
15	170
16	175
17	180
18	185
19	190
20	195
21	200

이행 21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200 메트릭톤으로 한다.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분기별 (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운영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0409.00.0000호

겉보리 및 쌀보리

3.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14	연간 2,500
15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로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 할당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해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사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003.00.9010호 및 제1003.00.9020호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4.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품목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9	연간 500
10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 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 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아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맥아

5.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3,000
2	14,200
3	15,400
4	16,600
5	17,800
6	19,000
7	20,200
8	21,400
9	22,600
10	23,800
11	25,000
12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이 재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6항자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O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107.10.0000호

식용대두(IP)

6. 가. 마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5,000
2	7,500
3	10,000
4	12,500
5	15,000
6	15,400
7	15,800
8	16,200
9	16,600
10	17,000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17,000 메트릭톤으로 한다.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두가공업자들의 협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그 협회는 나호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는 그 협회가 배분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 나. 그 협회는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배분한다. 서면신청은 수입자가 배분을 신청한 후 적어도 7개월 이후 운송을 위하여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서명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협회는 수입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의 4월 1일 이전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유효하다.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선적은 그 제품이 IP 대두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사기관으로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 라.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로서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01.00.9010
호 및 제1201.00.9090호

사료용 식물(기타)

7.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20,000
2	25,000
3	30,000
4	35,000
5	40,000
6	45,000
7	50,000
8	55,000
9	55,000
10	무제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다. 등록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농가는 당해 연도의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14.90.9090호

동물용 보조사료

8.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500
2	600
3	700
4	700
5	800
6	800
7	900
8	900
9	1,000
10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당해 연도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2309.90.2099호 및 제2309.90.9000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은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제 3.2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제 3.3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 또는
- 3)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됨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무생물 천연자원
-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상품
-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그 영역에서 전적으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그리고 영해의 외측 한계선 내에서 수행된 수렵, 밧 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11 부에 따라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다만, 그 중고품은 그러한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하며 이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충분한 생산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 또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 3.4 조 가치 평가

1.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서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치 평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부속서 3-가에 명시된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2. 제 8701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그 상품의 순원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4. 제 2 항에 따라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의 생산자는
 - 가.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 나.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여, 그 상품에 그 총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그 총 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그 총 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또는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 4 항에 따라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범주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의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 다.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 라.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 또는
-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범주

6. 제 4 항에 따라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 8706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 1) 그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2) 어느 분기 또는 월. 다만 그 상품은 그 계산의 기초를 이루는 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또는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나. 가호에 언급된 평균은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어떤 상품 또는 모든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제 3.5 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1. 비원산지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정의의 목적상 제 3.12 조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비원산지 구성상품과 비원산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가. 당사국으로의 수입 당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가격으로서, 필요한 경우 수입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치, 또는

나. 국내 거래인 경우, 그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국제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원산지 재료 가치”란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

칙에 따라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재료 가치를 말한다. 만약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경우, “원산지 재료 가치”는 제 2 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가치가 될 것이다.

제 3.6 조

자가생산 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어떠한 자가생산 재료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자가생산 재료의 가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 또는

나. 그 자가생산 재료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의 합

제 3.7 조

누적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

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제 3.3 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 3.8 조

최소허용수준

이 장의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거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다만,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 3-가의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계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0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원사의 총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

로 간주된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61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그러한 모든 원사의 총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4 부속서 3-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제 1 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9 조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

1. 재료 또는 상품이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모든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은 다음에 의하여 식별된다.

가. 각각의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특정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에 걸쳐 그러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 3.10 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통칙 3 에 따라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 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하여, 상품의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또는
- 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이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구성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비원산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11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상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로 간주되며,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2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 3.10 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용기, 팔레트, 또는 유사한 물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간접 재료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의 최종 구성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상품의 생산과 연계된 설비와 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안전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5 조 영역 원칙

1. 제 3.1 조부터 제 3.20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재반입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그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제 3.16 조 통과 및 환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것

제 3.17 조 적용과 해석

이 장의 목적상,

- 가. 품목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 나. 제 3.3 조제 2 항을 적용하는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해석의 통칙에 따라 호 또는 소호의 상품분류체계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 다. 이 장에 따라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이 원칙이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수정되어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 2)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 3)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 3.20 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제 3.18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따라 이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을 고려하여 이 장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제 4.14 조(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에 따른 검토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근거와 연구자료와 더불어 수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19 조

공동 지침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이 장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공동 지침을 개발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제 3.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류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분류된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따른 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관세 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인정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당사국에 등재된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외국등록 나용선으로, 그 외국에

의 등록이 용선 기간 동안 정지된 선박을 의미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구성요소, 부품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의미한다.

순원가란 총 비용에서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란 제 3.4 조제 4 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란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서, 비슷한 만기가 적시된 적용 가능한 국채율 보다 700 베이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그 밖의 비용이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비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이다.

기간비용이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 같이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그러한 비용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비용이란 상품의 생산에 연계된 그러한 비용을 말하며 재료 가격, 직접 노동비와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밋 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란 상황에 따른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로열티란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을 포함하여 저작권,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도면 또는 기밀 제조법 또는 공정

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권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종류의 지불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은 제외한다.

가. 장소를 불문한 직원교육, 그리고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 공구 세공, 다이 세팅,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유사한 컴퓨터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서비스

판매,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이란 다음에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가. 판매 또는 마케팅 촉진, 미디어 홍보, 광고 또는 시장 조사, 선전 또는 시범용 재료, 전시, 판매 회의, 무역 전시 또는 박람회, 현수막, 마케팅 전시, 무료 견본, 판매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인쇄물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인쇄물, 가격 목록, 서비스 매뉴얼 또는 판매 지원 정보), 로고 및 상표의 설립 또는 보호, 후원, 도매 또는 소매 재고 비용, 접대

나. 판매 또는 마케팅 장려금, 소비자, 소매판매자 또는 도매판매자 리베이트, 제품 장려금

다.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을 위한 보수 또는 봉급, 판매 수수료, 상여금, 수당(예: 의료, 보험 또는 연금), 여행 또는 생활경비, 회비 또는 전문적 수수료

라.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의 채용 또는 훈련, 또는 고객을 위한 종업원의 판매 후 훈련.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마. 제조물 책임보험

바.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한 사무 용품.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아.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및 유통 센터의 임대료 또는 감가상각비

자. 손해보험료, 세금, 공공 요금 또는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또는 유통센터의 수리 또는 유지비.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 보증수리를 위하여 생산자가 다른 인에게 한 지불

자가생산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 및 포장비용이란 운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그 상품을 직접 선적지로부터 구매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준비 및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 규정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를 말한다.

영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2 부에 따라 결정되는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경계까지의 바다 부분을 말한다.

총 비용이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총 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벌어들인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래가격이란 상품의 생산자의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으로서, 「관세평가협정」의 제 8 조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특히 수수료, 생산 지원, 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이 정의의 목적상 제 3.10 조 및 부속서 3-가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을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가. 생산지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당시 거래가격, 또는

나. 그 상품의 관세가격

필요한 경우, 화물운송비 및 보험료와 같이 그 상품이 생산지를 떠난 이후에 발

생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도록 조정된 가격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특정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 세번변경의 요건 또는 기타 특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4 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규정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포함한다.

마. “그 군 이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군 이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한다.

바. 다음의 표현은

- “그 호 내에서의 변경”,
- “그 소호 내에서의 변경”,
- “이들 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이들 소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의 (상품)으로 변경” 또는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 중 하나의 (상품)으로 변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동일 호(또는 소호)의 다른 상품 또는 재료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사. 두 개 이상의 규정이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선택규정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

- 1)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 가능한 첫 번째 규정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 2) 선택규정에 의해 허용된 유일한 세번변경은, 그 규정의 시작 부분에 명시된 세번변경과 더불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변경이다.
- 3)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선택규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되고, “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서 다시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에 포함된다. 그리고

- 4) “인지 상관없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란 4 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4 단위를 말한다.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6 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6 단위를 말한다.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낸다.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보다 생산이 더 수행된 경우에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3.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최대 비원산지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제 3.8 조의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며, 그러한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비율은 최소허용기준의 사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품에 적용 가능한 이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아니하는 호에 분류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제 3.3 조제 2 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최종상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상, 최종 상품생산에 사용되고 이 부속서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고려될 것이다.

5.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중고상품에도 적용된다.

제 2 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1 류-제 5 류)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 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 – 0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7.11 – 02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4 – 0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11 – 0210.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10.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3 류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치어, 핑거링스(fingerlings) 또는 유생과 같은 비원산지 종자로부터 성장한 제 3 류의 양식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03.01 – 0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1 – 0308.90	그 소호 또는 다른 소호 내에서 혼제되지 않은 물품에서 혼제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 0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901.90 호 또는 제 2106.90 호의 낙농 조제품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7 – 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 0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5 – 05.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8 – 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주 :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원예작물은 비당사국에서 수입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또는 그 밖의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 06.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류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塊莖)
07.01 – 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류	커피 · 차 · 마테(maté) 및 향신료
0901.11 –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21 – 0901.22	이 상품군 이외의 모든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 – 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4.11 – 090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904.21 – 09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10.80 호 또는 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11-090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7 – 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류	곡물
10.01 – 10.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 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2 류	채유(採油)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 1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류	락(lac), 검 · 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 1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 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 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제 15 류)
제 15 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
15.01 – 15.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1 – 1515.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1 – 151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물개 또는 물개 생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진 생산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 – 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 16 류-제 24 류)
제 16 류	육류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 1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306 호부터 제 0308 호까지의 훈제된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 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 – 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6.10 – 1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9 류	곡물 · 고운 가루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혼합물과 도우(doughs)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2 – 1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4 –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0 류	채소 · 과일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 2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11 –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8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41 – 2009.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크랜베리(cranberry) 주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10 – 2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09.60 호, 제 0904.21 호 또는 제 0904.2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고추장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된장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2 류	음료 · 주류 및 식초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가 함유된 음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3 – 2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30	이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2203 호부터 제 2208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알코올 농도가 물품의 전체 알코올 농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208.40 –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 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동물 사료용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 –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 및 시멘트
25.01 – 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6 류	광(鑛) · 슬래그(slag) 및 회(灰)
26.01 – 2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7 류	광물성 연료 · 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주 1 :	제 2707 호와 제 2710 호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2:	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주 3:	제 2710 호의 목적상, "직접혼합"이란 정제공정으로서는 처리단위로부터의 다양한 석유스트림과 저장탱크로부터의 석유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제품은 사전에 결정된 수치로 제 2710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7.01 – 2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7.10 – 27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2707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27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다른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페놀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페놀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27.08 – 2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이 류의 주 1 과 주 2 에 규정된 공정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 변경된 것, 또는 직접혼합의 결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711.11 – 2711.13	이들 소호 중 하나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711.14 – 271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2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7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2 호부터 소호 제 2711.2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11 – 271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20	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7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제 28 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주 3 부터 주 5 까지는 이 류의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주 2 :	주 1 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류의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주 3 : 화학반응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4 : 정제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주 5 : 분리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801.10 – 280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10 – 280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70 – 28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11 – 281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11 –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20 – 281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6.10 – 281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7 – 2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9.10 – 285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9 류	제 29 류 유기화합품
주 1 :	이 류의 주 3 부터 주 6 까지는 그들 주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주 2 :	주 1 에도 불구하고, 이 류의 원산지규정에서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다.
주 3 : 화학반응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4 : 정제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주 5 : 이성체 분리	이 류의 상품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성체의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6 : 분리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901.10 – 2942.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0 류	의료용품
3001.20 – 3002 .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3.10 – 3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003 호 또는 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5.10 – 30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6.10 – 3006.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1 류	비료
31.01 – 3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2 류	유연용 또는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10 – 32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4.11 – 32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6.11 – 320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7 –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 ·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
3301.12 – 33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2 – 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4 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 – 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2 – 34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11 – 3403.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 – 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10 – 35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11 – 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20 – 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3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 3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2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3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5.10 – 3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7 – 3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10 – 3809.9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11 – 381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2 – 3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905.3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905.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2905.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8.21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1 – 382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28 류부터 37 류까지, 제 40 류 또는 제 90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 39 류-제 40 류)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 3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의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상품의 전체 폴리머 중량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9.16 – 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 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4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4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4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40.07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 41 류-제 43 류)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 41.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1 – 41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41 – 4104.49	소호 제 4104.11 호 또는 소호 제 4104.19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30	소호 제 4105.10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2	소호 제 4106.2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2	소호 제 4106.3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 변경된 것, 또는 이 소호 또는 다른 호의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부터 크리스트 원피로 변경된 것
4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2	소호 제 4106.9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2 – 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 – 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 44 류-제 46 류)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및 판지와 이들의 제품(제 47 류-제 49 류)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 4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11– 4704.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5 – 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 및 도면
49.01 – 4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제 50 류	견

50.01 – 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4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1 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 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6 – 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11 – 5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2 류	면
52.01 – 5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4 – 5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 – 5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 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6 – 5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9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 5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7 – 5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 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8 – 5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12 – 5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6 류	워딩(wadding) · 펠트(felt) 및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 5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부터 제 5406 호까지 또는 제 5508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4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부터 제 5406 호까지 또는 제 5509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 57.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 5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9 류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4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307 호, 제 5308 호, 제 5310 호 또는 제 5311 호, 제 54 류 또는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 6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주 :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01 – 61.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편직)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봉재 또는 다른 결합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모양을 갖추기 위해 편직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2.01 – 62.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주 :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3.01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5111 호부터 5113 호까지, 제 5208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310 호, 제 5311 호, 제 5407 호, 제 5408 호,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 제 5801 호부터 제 5803 호까지, 제 5903 호 또는 제 6001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직물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 – 6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편직)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직물 또는 실이 별도로 분류된다면 직물 또는 실에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상품이 선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포장된 경우에는 세번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새로운 념마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새로운 념마 이외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새로운 념마 이외의 상품이 당사국 내에서 선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포장된 경우에는 세번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2 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 64 류-제 67 류)
제 6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64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64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640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6 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6603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66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66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6.02 – 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7 류	조제 깃털과 솜털 및 깃털이나 솜털의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깃털 또는 솜털 제품으로 변경된 것
67.02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부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 68 류-제 70 류)
제 68 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91 – 70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0 – 70.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11 – 70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7019.52 호 또는 소호 제 7019.5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19.52 – 70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부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 · 귀석 또는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 71 류)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 · 귀석 또는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10 – 7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 – 7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1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 72 류-제 83 류)
제 72 류	철강
72.01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 7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11 – 7304.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9 – 73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 – 7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08 – 7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11 – 73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15.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15.1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20 – 7315.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6 –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1.11 – 7321.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2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2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2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4.10 – 732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5 – 73.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41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4.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08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4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40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4.15 – 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 7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1 – 75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1 – 750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두께가 0.15 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5.07 – 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 7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10 – 760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 – 7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60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6.10 – 7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6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605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6.15 – 7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 78.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1 – 78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7804.11 호의 뒷면을 텃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8.06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806 호의 납 봉·막대·프로파일·선·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7806 호의 납 봉·막대·프로파일·선·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 7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4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뒷면을 텃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9.07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907 호의 아연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7907 호의 아연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 8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3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7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007 호의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석 판·시트 또는 스트립, 두께가(보강제는 제외한다)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석 박(薄)(인쇄한 것인지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주석 가루 또는 플레이크·주석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8007 호의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석 판·시트 또는 스트립, 두께가(보강제는 제외한다)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석 박(薄)(인쇄한 것인지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주석 가루 또는 플레이크·주석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10 – 811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 및 포크, 이들의 부분품
주 :	<i>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비금속의 손잡이는 그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i>

8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2.10 – 82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02.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02.3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2.39 – 8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3 – 8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5.10 – 820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또는 소호 제 8205.10 호부터 소호 제 8205.7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소호 또는 소호 제 8205.10 호부터 소호 제 8205.70 호까지의 물품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07.19 호 또는 제 8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07.19 호 또는 제 82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7.19 –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8 – 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11.91 호부터 소호 제 8211.93 호까지 또는 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11.91 호부터 소호 제 8211.93 호까지 또는 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1.91 – 821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11.94 호 또는 소호 제 8211.9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11.94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1.94 – 8211.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2 – 8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214.20 호의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5.10 – 82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1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211 호 또는 소호 제 8215.91 호 또는 소호 제 8215.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211 호 또는 소호 제 8215.91 호 또는 소호 제 8215.99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5.91 – 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10 – 83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1.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1.6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1.60 – 8301.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2 – 8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5.10 – 83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6 –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8.10 – 8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9 – 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11.10 – 83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84 류-제 85 류)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10 – 8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11 – 8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4.10 – 8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소호 제 84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6.10 – 8406.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7.10 –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0.11 – 841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11 – 8411.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1.91 호 또는 소호 제 8411.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1.91 호 또는 소호 제 8411.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1.91 –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10 – 84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11 – 8413.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3.91 호 또는 소호 제 8413.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3.91 호 또는 소호 제 8413.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3.91 –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10 – 8415.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10 – 841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10 – 84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10 – 841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8.91 호 또는 소호 제 8418.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8.91 호 또는 소호 제 8418.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8.91 –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11 – 841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0.91 호 또는 소호 제 8420.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0.91 호 또는 소호 제 8420.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0.91 –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11 – 842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1.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1.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1.21 – 8421.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1.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1.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1.91 –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11 – 842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10 – 842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10 – 8424.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 – 84.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3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8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10 – 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11 – 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10 – 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10 – 843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6.91 – 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7.10 – 843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10 – 843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10 – 843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9.91 호 또는 소호 제 8439.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9.91 호 또는 소호 제 8439.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9.91 – 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10 – 844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2.40 호 또는 소호 제 8442.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2.40 호 또는 소호 제 8442.5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2.40 –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1 – 844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3.91 호 또는 소호 제 8443.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3.91 호 또는 소호 제 8443.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3.91 – 844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4 – 84.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4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4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8.11 – 844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8.20 호부터 소호 제 8448.5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8.20 호부터 소호 제 8448.5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8.20 –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0.11 – 845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10 – 845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10 – 845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3.10 – 845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4.10 – 845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5.10 – 845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5.30 호 또는 소호 제 845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5.30 호 또는 소호 제 845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5.30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8 –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8466.9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6.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6.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8466.9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6.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6.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11 – 8467.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7.91 호부터 소호 제 8467.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7.91 호부터 소호 제 8467.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7.91 –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8.10 – 846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10 – 847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7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7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7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10 –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10 – 847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6.21 – 8476.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10 – 847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10 – 847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10 – 848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2.10 – 848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2.91 호 또는 소호 제 8482.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2.91 호 또는 소호 제 8482.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2.91 –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8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82 호 또는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82 호 또는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30 – 848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4.10 – 848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6.10 – 848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5 류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0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10 – 8504.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4.40 – 850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5.11 – 8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6.10 – 850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7.10 – 850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8.11-85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8.7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8.7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9.40 –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0.10 – 85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1.10 –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2.10 – 85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4.10 – 851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5.11 – 85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6.10 – 851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11 – 8517.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10 – 851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518.30 호의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18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2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2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2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21 .10 – 85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2 – 8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5.50 – 852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8525.80 호의 자이로스테빌라이저 카메라로 변경된 것
8526.10 – 8527.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8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0.10 – 8530.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3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1.10 – 85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3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10 –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3.10 – 853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5 – 85.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38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3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3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9.10 – 853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3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0.11 – 854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40.91 호 또는 소호 제 8540.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40.91 호 또는 소호 제 8540.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40.91 – 854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1.10 – 854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3.10 – 854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4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4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4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4.11– 854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5–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6.03 – 8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607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6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607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6.07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	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또는 제 94 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1. 해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 2. 미합중국의 영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하에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87.01 – 87.06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또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 이상인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8707.10 – 8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들 내에서 또는 그 소호들 간에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8708.10 – 870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들 중 하나 내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8709.11 – 87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7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70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1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714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7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714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4.10 – 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714.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714.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6.10 – 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71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71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 88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8.04 – 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 89.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8 부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0 류-제 92 류)
제 90 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00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3.11 – 90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 류 내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 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5.10 – 900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6.10 – 90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6.91 호 또는 소호 제 900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6.91 호 또는 소호 제 900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6.91 –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9007.10 호의 자이로스테빌라이저 카메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7.91 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7.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7.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7.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7.91 –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0.50 – 9010.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1.10 – 90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3.10 – 90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4.10 – 90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5.10 –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7.10 – 90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8.11 – 90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13 – 902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2.19 – 902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29 – 90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4.10 – 902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5.11 –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6.10 – 902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7.20 – 902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50 – 902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8.10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9.10 – 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0.10 – 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1.10 – 90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3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3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2.10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3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3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 9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08 – 9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1.10 – 91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1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1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1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1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3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 9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2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2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제 93 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 9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305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3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305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306.21 – 9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10 – 940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3.10 – 940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5.10 – 940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5.91 호부터 소호 제 9405.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5.91 호부터 소호 제 9405.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5.91 – 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5 류	완구 · 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이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5.04 – 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11 – 95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506.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506.3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506.32 – 9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7 – 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6 류	잡품
96.01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6 류 내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6 류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6.21 – 96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6.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6.3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7.11 – 9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7.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7.2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8.10 – 96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8.60 호부터 소호 제 9608.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8.60 호부터 소호 제 9608.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8.10 호부터 소호 제 9608.4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8.10 호부터 소호 제 9608.40 호까지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8.60 –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9 – 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이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3.10 – 96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4 –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1 부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제 97 류)
제 97 류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97.01 – 9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 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 1 절 원산지 증명

제 4.1 조 원산지 증명서

1.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마련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그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⁵
3. 각 당사국은
 -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4. 제 3 항은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⁵ 한국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캐나다의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가 다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정한 대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명시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자국 영역으로의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

6. 제 3 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 후 최소 2 년 동안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원산지의 증명으로 인정된다.

7.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한다.

제 4.2 조 수입 관련 의무

1.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것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를 작성할 것

다.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라.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공하며, 그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의 수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마. 수입자는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수입자가 제 1 항마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4.6 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
을 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상품이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 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로 납부되었던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4.3 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수입, 또는

나. 상품이 수입되는 영역의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의 수입

다만, 그 수입은 제 4.1 조 및 4.2 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4.4 조 수출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제 4.1 조제 3 항나호 3 목에 따라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공한 자국 영역의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그 밖의 요구된 서류를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그리고

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그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서가, 허위 진술 또는 표시에 관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동등한 법적 결과를,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가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부정확한 증명에 관련하여 제 1 항나호에 따른 서면 통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행정 및 집행

제 4.5 조 기록유지요건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 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더 긴 기간 동안 다음에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기록을 자국 영역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그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과 그에 대한 지불

2)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 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격과 그에 대한 지불

3)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4)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서류, 그리고

나.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 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청하는 기록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 4.6 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

나. 제 4.5 조가호에 언급된 기록의 검토 및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2. 제 1 항나호에 따른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 다음에 대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3)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대사관, 그리고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3. 제 2 항에 언급된 통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다. 검증 방문 예정일자 및 장소

라.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포함하여, 예정된 검증 방문의 목적과 범위

마.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바. 검증 방문을 위한 법적 권한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예정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의 관

세행정기관은 그 방문의 대상이 되었을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예정된 검증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검증 방문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은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검증 방문의 연기만을 이유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8.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검증 방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그 방문 동안 참석할 한 명 또는 두 명의 참관인을 지정하도록 허락한다. 다만,

가. 그 참관인들은 참관인이 아닌 방식으로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참관인들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방문의 연기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치 평가, *m/s* 기준 계산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는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내의 적용가능하고, 「관세평가협정」을 준수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11. 당사국에 의한 검증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행위유형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충족한다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인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 3 장(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때까지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보류할 수 있다.

제 4.7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8 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 장 하에서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력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그 정보를 받은 당사국이 자국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한다.
2. 이 장 하에서 수집된 비밀 정보는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결정 및 관세 사안의 결정에 대한 행정 및 집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획득된 정보는 제 3 장(원산지 규정)과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은 그러한 사용을 미리 통보 받을 것이다.

제 4.9 조 **벌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관련된 자국 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 민사 또는 행정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4.2 조제 2 항, 제 4.4 조제 3 항 및 제 4.6 조제 7 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법에 따라 그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사전심사결정

제 4.10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자국 영역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을 신속하게 발급한다.

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발생한 생산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

나.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순원가에 기초한 가치 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

다.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 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하는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라.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 2.6 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품목분류, 실행 관세율 또는 수입관련 적용 가능한 어떠한 조세, 또는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 그 결정을 요청하는 인으로부터 보충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그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을 요청하는 인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이후, 통일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다. 사전심사결정이 그 심사를 요청한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인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신청이 다음의 대상인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 관세행정기관이 그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검증

나. 관세행정기관에 의한 재심 또는 관세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다. 자국 국내법에 따른 자국 영역 내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재심

5. 제 7 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신청된 상품의 자국 영역 내로의 수입에 대하여 그 결정의 발급일자부터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부터 사전심사결정을 적용한다.

6. 사실과 상황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대하여 일관적인 대우를 제공한다.

7. 사전심사결정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사전심사결정이 다음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1) 사실

2) 사전심사결정의 대상인 상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3)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 평가의 적용, 또는

4)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 2.6 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른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규칙의 적용

나. 사전심사결정이 제 2 장(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한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라. 제 2 장(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또는

마. 사법적 결정 또는 자국 국내법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8.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발급된 일자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에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사전심사결정을 발급받은 인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일자 이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인이 그 심사결정을 선의로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 당사국은 90 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 일자를 연기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을 내린 상품의 가치평가를 조사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의 경우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사전심사결정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작업이 사전심사결정이 근거로 한 실질적인 사실과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 다. 가치 산정 또는 비용 할당을 위한 근거 또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증빙 자료와 계산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정확한지 여부

1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10 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황이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2.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이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이 그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 나.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1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 진술했거나 누락했거나, 또는 그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4 절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의 재심 및 불복청구

제 4.11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가.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 또는

나. 제 4.10 조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

2. 제 19.3 조(행정절차) 및 제 19.4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제 1 항에 언급된 재심 및 불복청구 권한이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재심

제 5 절 통일규칙

제 4.12 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그 각각의 법, 규정 또는 행정 정책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 내에 통일규칙의 모든 변경 또는 추가를 이행한다.

제 6 절 협력

제 4.13 조 협력

1.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결정, 조치 및 심사결정을 한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들)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가. 제 4.6 조에 따라 실행되는 검증의 결과로써 발급된 원산지 결정

나.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또는 가치, 또는 원산지 결정의 대상인 상품의 순원가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인 할당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발급한 심사결정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인지하는 결정

다. 앞으로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격하게 수정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제 4.10 조에 따른 사전심사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심사결정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그러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에 있어서 협력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그 각각의 관세 관련 법 또는 규정의 집행,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세관상호지원 협정 또는 그 밖의 관세 관련 협정에 따른 집행

나.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의 조화, 정보 요소의 표준화, 국제적 정보 구문의 수락 및 정보 교환과 같은 관세 관련 사안

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세 분석 기법의 조화 및 관세 분석소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라.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관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 및 사용자를 위한 모의 심사 환경 실습과 같은 관세 관련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마. 무역 및 사업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개발

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제 3 장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이 일관적으로 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검증 표준 및 체계의 개발

사.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대우 및 원산지 국가 표기의 목적상 수입되고 수출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교환, 그리고

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이라 한다)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WCO의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체계」 및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APEC 모범조치」에 규정된 것과 같은 상호 인정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제 4.14 조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 3 장(원산지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제안을 검토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변경을 시의 적절하게 준비하고 이러한 변경을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반영
 -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변경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변경과 부속서 2-라(관세 철폐), 또는
 - 2) 부속서 2-라(관세 철폐) 그리고 국가 상품분류체계
 -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마.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모든 합의된 변경 또는 추가에 대한 공동위원회 통보, 그리고
 - 바. 다음 사항의 합의를 위한 노력
 - 1)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된 해석, 적용 및 행정
 - 2)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및 통일규칙의 변경 또는 추가
 - 3) 한쪽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기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 그리고
 - 4)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관세 관련 사안

제 7 절 무역원활화

제 4.15 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상 무역의 원활화 및 다자적 기반의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의 추진 협력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기반으로 이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 가. 절차는 수입자 및 수출자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그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간소화된다.
- 나. 절차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국제무역조치 또는 국제표준에 근거한다
- 다. 반입 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도록 한다.
- 라. 무역원활화 조치는 또한 국가적 요건의 효과적 집행과 준수를 통하여 인을 보호하는 체계를 지원한다.
- 마. 그러한 과정에 관계되는 직원 및 절차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반영한다.
- 바. 당사국의 절차에 대한 상당한 변경의 전개는, 이행에 앞서 그 당사국의 무역 공동체 대표 간의 협의를 포함한다.
- 사. 절차는 주목할만한 거래에 관한 준수 노력에 집중하도록 위험 평가 원칙에 근거하며,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촉진하고, 수입자 및 수출자의 자발적인 의무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기술 지원 및 모범 사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제 4.16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자국 국내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제한, 통제, 규율 및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 반출에 제공되는 절차

나. 가능한 한도에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도착 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제한, 통제, 규율 또는 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최초의 도착 지점에서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자국 국내법에 따라, 모든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를 납부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⁶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 시간, 일주일 7 일 반출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⁶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할당, 보건 관련 또는 공공 안전 요건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또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상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당국이 반출되는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자국 각 기관의 요건이, 기관이나 그 기관을 대신하는 관세당국이 이러한 요건을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조정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요구된 모든 자료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시키는 조치를 한다.

6. 양 당사국은 보다 나은 협력 증진 및 전자적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자국의 무역 및 사업공동체와의 협의수단을 마련한다.

제 4.17 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신속한 반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 공동체 간 전자적 정보교환을 규정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나. 그러한 전자적 정보교환을 위하여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 대 정부 간 국제무역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간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WCO의 관세정보표준 및 WCO의 관련 권고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정보요소와 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 4.18 조 위험 관리

양 당사국은 저위험 상품의 반출 과정 및 절차를 원활히 하고 간소하게 하며, 고위험 상품의 반출에 대한 통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모든 수입 요건의 준수를 위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모든 반입화물을 검사하기 보다는, 자국의 검사 및 반출 절차 및 사후 검증 절차를 위험 평가 원칙에 근거하도록 한다. 이것은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는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4.19 조 특송 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 화물을 위한 신속한 세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 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세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의 「세관에 의한 특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나. 가능한 한도에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특송 화물을 도착 시 반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특송 화물이 물리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사전 전자정보의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자국 국내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특송 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마. 중량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리고,

바. 당사국의 법규와 합치하며, 그 당사국이 결정한 저가의 상품 반입을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 요건을 규정한다.

제 4.20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일반 기관 요건 및 반입 절차, 운영 시간 및 질의를 위한 연락처를 포함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요건에 관련된 자국의 모든 법규, 규정 및 행정적 성격의 고시를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신속히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위험 평가의 수행에 관련된 법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을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8 절 정의

제 4.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행정기관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 관련 법 및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하여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를 말한다.

특송 화물이란 WCO 의 「세관에 의한 특송품 즉시반출 지침」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동일한 상품이란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는 관련 없는 외형적 사소한 차이와는 관계없이,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입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관해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입자를 말한다.

간접 재료란 제 3.14 조(간접 재료)의 “간접 재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재료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상품의 순원가”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생산자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말한다.

통일규칙이란 제 4.12 조에 따라 수립된 “통일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란 관세 계산을 위한 목적상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위한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 조

목 적

이 장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

범 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3 조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5.4 조

분쟁해결

이 장은 제 21 장(분쟁 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5.5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될 때,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합을 조정하는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위원회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 및 협의를 증진하며, 당사국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 회합에 자국의 관련 정부 당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5.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관리는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 양자간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 가.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 나. 각 당사국의 조치 및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 절차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 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같은 다자 및 국제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증진한다.
- 마. 기술적, 제도적 협력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및 검토를 장려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 바. 양 당사국 간에 제기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한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첫 회합에서 위원회의 절차 규칙을 마련한다. 이후,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년에 한 번 회합한다.

제 6 장

표준 관련 조치

제 6.1 조

적용범위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입규격, 그리고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6.2 조

의무의 범위

1. 제 1.4 조(의무의 범위)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중앙정부에만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장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⁷ 및 지방정부 그리고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 6.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그 밖의 국제 협정의 확인

⁷ 이 장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 가.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상호 확인한다.
-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 조부터 제 9 조까지 그리고 부속서 1 과 3 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4 조

협력

-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관련 조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 2. 양 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회원국인 그 밖의 지역 및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무역촉진 양자 이니셔티브를 상호 확인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에 있어 협력한다.
 - 가. 지역 및 국제 표준화 기구 내 회원 자격을 통해서와 같이, 각 당사국의 표준화 기관이 적절한 경우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 나. 정부 이외의 양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 기구가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적합성평가 기구와의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

다. 관련 국제 표준과 지침을 기초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라. 그 각각의 인정제도 또는 기관 간 관련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된 적합성 평가 기관의 결과의 수용을 증진하는 것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자국 영역 내에서의 인정 촉진을 위한 협정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5. 이 협정에 통합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 5.4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 교환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6.5 조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지역 및 지방정부가 이 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서 협력한다.

가. 의료 장비 분야에서 표준 관련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것

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및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중복일 수 있는 시험과 인증 요건을 축소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 2 단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은 제 2 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 라. 저압 장비 분야에 있어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에서 개발된 표준과 같은 국제 표준의 부합화 및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각 당사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 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요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국가 인증기관이 관련 전기 안전요건 국가인증을 위한 기초로서 서로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시험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것
- 마. 국제 시험소 인정 협력체(ILAC)와 아시아 태평양 시험소 인정협력체(AP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에 따라, 한국 인정기구(KOLAS)와 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 수용을 촉진하는 것
- 바.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연구 결과 및 시험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국 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국립연구기구건설연구원(NRC-IRC),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간에 협력을 장려하는 것. 신뢰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 캐나다 국립연구기구건설연구원이 협력 약정에 관해 협상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제품 분야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의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제 6.6 조 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시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제안한 기술 규정에 대한 규제적 영향 분석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다만, 그 분석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에 관한 투명성 절차에서, 여전히 개정이 추가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 단계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제 3 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5.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을 위하여 최소 6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6. 제 1 항, 제 2 항 및 제 5 항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규정에 대한 자국의 영향 분석서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된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의견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10 조에 따라 수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문의처에 전송할 수 있다.

7.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 또는 답변의 요약, 자국이 최종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포한 날 보다 늦지 않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포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제 6.7 조

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시장에 허용한다.

안전기준의 반영 또는 동등성

2. 한국은 다음을 준수하는 캐나다를 원산지로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KMVSS”⁸라 한다) 및 이의 개정본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가. 부속서 6-가에 기재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하 “FMVSS”라 한다)과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또는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그 개정본의 조건에 따라 그 협정 부록 2-다-3 표 1에 기재된 UN 규정⁹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¹⁰

한국이 어떠한 추가적인 FMVSS, UN 규정, 또는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 또는 규정을 KMVSS와 동등한 것으로 달리 수용하는 경우, 한국은 또한 어떠한 수정을 포함하여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 법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이러한 표

⁸KMVSS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에 상응하는 표준을 말한다.

⁹이 조의 목적상, UN 규정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의 1958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¹⁰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제 2 항나호와 합치되게 UN 규정의 준수를 수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UN ECE 형식승인서는 적합성의 추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형식승인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이 승인된 형식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은 캐나다에 알린다. 이 각주는 제 4 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캐나다의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KMVSS 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3. 캐나다는 다음을 준수하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기준(이하 "CMVSS"¹¹라 한다) 및 이의 개정본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가. CMVSS 에 규정된 모든 적용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CMVSS 에 반영된 대로 부속서 6-나(표 1)에 기재된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또는

나. CMVSS 에 규정된 모든 적용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CMVSS 에 반영된 대로 부속서 6-나(표 2)에 기재된 UN 규정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적인 FMVSS, UN 규정, 또는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 또는 규정을 CMVSS 와 동등한 것으로 달리 수용하는 경우, 캐나다는 또한 어떠한 수정을 포함하여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 법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이러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한국의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CMVSS 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4. 제 2 항 및 제 3 항에 언급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가. 자동차 상품이 자국의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되고 표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¹¹ CMVSS 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V.1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을 말한다.

나. 제작사가 자기 인증한 자동차 상품을 포함하여, 자동차 상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는지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1)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또는

2)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규정된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각 당사국은 해당 상품이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 따라 그 자동차 상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해 자동차 상품을 자국의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시행되기 전에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과 공급자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라. 표준이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표준이나 방식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수정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수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안전 수준보다 더 낮은 안전 수준을 규정하거나 캐나다의 경우, 북아메리카 통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 또는 규정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에의 반영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준이나 규정을 자국의 국내법과 동등하다고 지속적으로 달리 수용한다.

5. 당사국이 제4항라호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을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수정을 통보한다. 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수정으로 인해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 및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의 동등성을 달리 수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고려 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이에 따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적합조사

6.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하여 제작사 또는 수입자가 관련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합조사에 관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의 근거 및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제작사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7. 양 당사국은 관련 세계기술규정, 또는 국제표준화기관이 발표한 그 밖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이하 통칭하여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라 한다), 또는 존재하는 경우 그 관련 부분을, 그러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5.4 조의 적용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당사국에 부적절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유가 적절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상품에 대한 적합조사 절차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합의한다¹². 당사국이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적합조사 절차를 적용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신기술

8.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상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¹² 이 항의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은 당사국이 해당 표준 또는 규정을 인용하거나 복제함으로써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한 표준 또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조사 절차와 관련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다.

이유로 자국에서의 그 상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9. 한쪽 당사국이 자동차 상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상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자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국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그 통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협력

10.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또는 그 승계기관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상품 사안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6.8 조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6-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역 및 관련 규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 및 촉진하는 것

나. 표준 관련 조치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다. 표준 관련 조치와 우수규제관행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라. 당사국의 모든 합리적인 정보 요청에 응하여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 마.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 사.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이 장의 조항 이행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 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대로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 차.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 회 회합한다.

제 6.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자동차 상품이란 다음의 제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가. 트랙터 (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 (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호, 제 8425.39 호, 제 8425.41 호, 제 8425.42 호, 제 8425.49 호, 제 8426.11 호, 제 8426.12 호, 제 8426.19 호, 제 8426.20 호, 제 8426.30 호, 제 8426.41 호, 제 8426.49 호, 제 8426.91 호, 제 8426.99 호, 제 8427.20 호, 제 8428.10 호, 제 8428.20 호, 제 8428.31 호, 제 8428.32 호, 제 8428.33 호, 제 8428.39 호, 제 8428.40 호, 제 8428.60 호, 제 8428.90 호, 제 8429.11 호, 제 8429.19 호, 제 8429.20 호, 제 8429.30 호, 제 8429.40 호, 제 8429.51 호, 제 8429.52 호, 제 8429.59 호, 제 8430.10 호, 제 8430.20 호, 제 8430.31 호, 제 8430.39 호, 제 8430.41 호, 제 8430.49 호, 제 8430.50 호, 제 8430.61 호, 제 8430.69 호, 제 8431.10 호, 제 8431.31 호, 제 8431.39 호, 제 8431.41 호, 제 8431.42 호, 제 8431.43 호, 제 8431.49 호, 제 8474.10 호, 제 8474.20 호, 제 8474.31 호, 제 8474.32 호, 제 8474.39 호, 제 8474.80 호, 제 8474.90 호, 제 8479.10 호, 제 8701.30 호, 제 8704.10 호, 제 8705.10 호, 제 8705.20 호, 제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우수규제관행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 수행을 위한 지침 원칙」(2005)에 정의된 우수규제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표준 관련 조치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말한다.

부속서 6-가

제 6.7 조제 2 항가호에 언급된 목록¹³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충돌시 승객 보호	정면	FMVSS 208	KMVSS 제 102 조제 1 항, 제 3 항
	측면	FMVSS 214	KMVSS 제 102 조제 1 항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FMVSS 204	KMVSS 제 89 조제 1 항제 2 호
충돌시 연료노출 방지		FMVSS 301	KMVSS 제 91 조제 1 항
충돌시 앞면유리 고정성		FMVSS 212	KMVSS 제 105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충돌시 앞면유리 침입성		FMVSS 219	KMVSS 제 105 조제 2 항제 3 호
좌석 및 그 잠금장치		FMVSS 207	KMVSS 제 97 조
머리지지대		FMVSS 202a	KMVSS 제 26 조, 제 99 조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FMVSS 206	KMVSS 제 104 조제 2 항
실내충격시 승객보호 (계기판넬, 좌석등받이, 팔걸이, 햇빛가리개)		FMVSS 201	KMVSS 제 88 조, 제 98 조, 제 100 조, 제 101 조
범퍼 충격흡수		49 CFR Part 581	KMVSS 제 93 조

¹³ 양 당사국은 이 표에 기재된 일부 대상의 경우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이 부품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나, 그 부품이 선택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6.7 조제 4 항다호 또는 라호에 수립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부품의 장착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FMVSS 111	KMVSS 제 108 조
조향장치 충격흡수		FMVSS 203	KMVSS 제 89 조제 1 항제 1 호
옆문 강도		FMVSS 214	KMVSS 제 104 조제 1 항
천정 강도		FMVSS 216a	KMVSS 제 92 조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FMVSS 210	KMVSS 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제 103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등화장치	설치기준	FMVSS 108	KMVSS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47 조
	전조등	FMVSS 108 ¹⁴	KMVSS 제 38 조, 제 48 조제 3 항, 제 106 조제 1 호
	안개등 ^{15, 16}	SAE J583 (2005 년 9 월판) 및 SAE J1319 (2005 년 5 월판), 또는 그러한 표준에 대한 개정본	KMVSS 제 38 조의 2, 제 106 조제 2 호
	후퇴등	FMVSS 108	KMVSS 제 39 조, 제 106 조제 3 호

¹⁴ 가스방전식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그 자동차가 전조등의 수직광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¹⁵ 안개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적용 가능한 SAE 표준을 준수하는 그러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¹⁶ 가스방전식 전면안개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전면안개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그 자동차가 전면안개등의 수직광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차폭등	FMVSS 108	KMVSS 제 40 조, 제 106 조제 4 호
	번호등	FMVSS 108	KMVSS 제 41 조, 제 106 조제 5 호
	후미등	FMVSS 108	KMVSS 제 42 조, 제 106 조제 6 호
	제동등	FMVSS 108	KMVSS 제 43 조제 1 항, 제 106 조제 7 호
	보조제동등	FMVSS 108	KMVSS 제 43 조제 2 항, 제 3 항, 제 106 조제 8 호
	방향지시등	FMVSS 108 ¹⁷	KMVSS 제 44 조, 제 106 조제 9 호
	보조방향지시등	FMVSS 108	KMVSS 제 44 조, 제 106 조제 10 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FMVSS 108	KMVSS 제 48 조제 4 항, 제 106 조제 11 호
운전자의 시계범위		FMVSS 111	KMVSS 제 50 조제 1 항, 제 2 항, 제 94 조제 1 항
원동기 출력		ISO 1585 ¹⁸	KMVSS 제 111 조
시계 확보 장치	창닫이기	FMVSS 104	KMVSS 제 51 조제 2 항, 제 109 조제 1 호

¹⁷ 이 동등성은 황색 또는 호박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¹⁸ 이 동등성은 내연기관(구동전동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에만 적용된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서리제거장치	FMVSS 103	KMVSS 제 109 조제 2 호
	안개제거장치	FMVSS 103	KMVSS 제 109 조제 3 호
	세정액분사장치	FMVSS 104	KMVSS 제 109 조제 4 호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FMVSS 124	KMVSS 제 87 조
연료 소비율		40 CFR Part 600	KMVSS 제 111 조의 4 제 1 항, 제 2 항제 1 호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FMVSS 135	KMVSS 제 15 조제 1 항, 제 3 항, 제 8 항, 제 90 조제 1 호
타이어 파열		FMVSS 110	KMVSS 제 88 조의 2
차실내장재 연소성		FMVSS 302	KMVSS 제 95 조
내부격실문 열림방지		FMVSS 201	KMVSS 제 111 조의 3

부속서 6-나

표 1

제 6.7 조제 3 항가호에 언급된 목록^{19, 20}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CMVSS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FMVSS 101	CMVSS 101
앞면유리 서리제거 및 안개 제거	FMVSS 103	CMVSS 103
앞면유리 창닦이기 및 세정	FMVSS 104	CMVSS 104
유압 및 전기식 제동장치	FMVSS 105	CMVSS 105
브레이크호스	FMVSS 106	CMVSS 106
등화장치 및 반사기	FMVSS 108	CMVSS 108
승용자동차의 타이어	FMVSS 109	CMVSS 109
타이어선택 및 립	FMVSS 110	CMVSS 110
후드걸쇠장치	FMVSS 113	CMVSS 113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	FMVSS 114	CMVSS 114

¹⁹ 양 당사국은 이 표에 기재된 일부 대상의 경우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이 부품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나, 그 부품이 선택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6.7 조제 4 항다호 또는 라호에 수립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부품의 장착을 요구할 수 있다.

²⁰ 양 당사국은 CMVSS를 구성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이들의 개정분에 이 부속서의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반영되었음을 인정한다.

자동차식별번호	49CFR565	CMVSS 115
자동차 브레이크액	FMVSS 116	CMVSS 116
동력구동 창문, 칸막이 및 지붕판넬장치	FMVSS 118	CMVSS 118
승용차 타이어를 제외한 특 정 타이어	FMVSS 119	CMVSS 119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 차용 타이어선택 및 림	FMVSS 120	CMVSS 120
공기식 제동장치	FMVSS 121	CMVSS 121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FMVSS 122	CMVSS 122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FMVSS 123	CMVSS 123
가속제어장치	FMVSS 124	CMVSS 12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FMVSS 126	CMVSS 126
통학버스의 보행자안전장치	FMVSS 131	CMVSS 131
경량자동차의 제동장치	FMVSS 135	CMVSS 135
경량자동차용 신규레이디얼 플라이타이어	FMVSS 139	CMVSS 139
승객보호	FMVSS 201	CMVSS 201
머리지지대	FMVSS 202	CMVSS 202
운전자 충격보호	FMVSS 203	CMVSS 203
조향컬럼 후방이동	FMVSS 204	CMVSS 204
창유리	FMVSS 205	CMVSS 205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FMVSS 206	CMVSS 206

좌석부착장치	FMVSS 207	CMVSS 207
정면충돌 승객보호	FMVSS 208	CMVSS 208
좌석안전띠 어셈블리	FMVSS 209	CMVSS 209
앞면유리 고정성	FMVSS 212	CMVSS 212
범퍼 (승용자동차)	49 CFR 581	CMVSS 215
천정 강도	FMVSS 216	CMVSS 216
앞면유리 침입성	FMVSS 219	CMVSS 219
전복 보호	FMVSS 220	CMVSS 220
연료장치 보존성	FMVSS 301	CMVSS 301
내장재 연소성	FMVSS 302	CMVSS 302
전해질 누출 및 감전보호	FMVSS 305	CMVSS 305
실내트렁크해제	FMVSS 401	CMVSS 401
저속자동차	FMVSS 500	CMVSS 500

표 2

제 6.7 조제 3 항나호에 언급된 목록¹⁵

대상	UN 규정	상응하는 CMVSS
전조등	UN-R 98	CMVSS 108
전조등	UN-R 112	CMVSS 108
전조등	UN-R 113	CMVSS 108
승용자동차의 소음	UN-R 51	CMVSS 1106
이륜자동차의 소음	UN-R 41	CMVSS 1106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UN-R 11	CMVSS 206
이모빌라이저	UN-R 116 (이모빌라이저에 한 함)	CMVSS 114
전후방보호장치(범퍼)	UN-R 42	CMVSS 215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UN-R 78	CMVSS 122
전조등	UN-R 8	CMVSS 108
전조등	UN-R 20	CMVSS 108
전조등	UN-R 31	CMVSS 108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UN-R 57	CMVSS 108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UN-R 72	CMVSS 108

¹⁵ 양 당사국은 CMVSS 를 구성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V.1 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이들의 개정본에 이 부속서의 UN 규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반영되었음을 인정한다.

부속서 6-다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조율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

2014 년 9 월 22 일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 정부 간에 자유무역협정 표준관련조치 장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협상과정에서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작업반 설치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제 6.5 조제 2 항사호(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 발효일부터 지체 없이 이 분야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작업반이 한국과 캐나다에 의하여 설치될 것으로 동의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서한에 관련하여 이 자유무역협정 하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회답 서한에 의하여 한국 대표단이 위 양해를 공유한다는 귀하의 확인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서 명/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2014 년 9 월 22 일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 정부 간에 이 자유무역협정 표준관련조치 장에 관한 귀하의 2014 년 9 월 22 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제 6.5 조제 2 항사호(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지체 없이 이 분야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제품 및 관련자재의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작업반이 한국과 캐나다에 의하여 설치될 것이라는 양해를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 대표단과 공유하였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서한에 관련하여 이 자유무역협정 하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및 모든 후속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제 7.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 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그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은 피해를 구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다음 조건 및 제한은 제 1 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에 적용된다.

- 가.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절차의 개시에 대한 서면 통보 및 관련한 협의 요청을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러한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절차개시일 후 1년 이내에 적용한다.
- 다.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1항과 제2항 및 제7.3조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은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단계적 관세 철폐에 관한 부속서 2-라(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3. 가.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 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당사국은(이하 “조치적용 당사국”이라 한다)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나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가호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조치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나호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제 3 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 개월 동안 실행되지 아니한다.

제 7.3 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당사국이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 일까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동안 조치적용 당사국은 제 7.5 조제 4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조치적용 당사국은 제 7.5 조제 4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 7.2 조제 1 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7.2 조제 2 항다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7.4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그 상품의 과도기간 동안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제 7.5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 규정, 결정 및 판정의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에서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판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부정판정은 그러한 재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게 그 당사국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제 4 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7.6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

당사국은 제안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제 21.6 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7.7 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가.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고, 이러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한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해결된다.

나.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

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이 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 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²¹

²¹ 제 2 항 및 제 4 항에 관하여 분쟁해결의 이용은 가능하지 아니하나, 양 당사국은 이 항들이 구속력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킴을 확인한다.

통보 및 협의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최소 부과

3. 가. 양 당사국은 총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보다 적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 1) 한국은 자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 2) 캐나다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고려한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은 부과될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액을 총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으로 할지, 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지를 캐나다 국내법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약속

4. 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당국이 약속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법과 절차에 관한 서면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 그리고 그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3 절 무역구제위원회

제 7.8 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2. 모든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나. 제7.7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이 무역구제 사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 마.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 바.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 1) 국제무역협상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 2)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 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제 4 절 정의

제 7.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란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국내 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7.2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에 종료되는 기간을 말한다.

가.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종료 후 10년, 또는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5년

제 8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8.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 8.8 조, 제 8.10 조 및 제 8.16 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 및 당국,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국의 비정부기구

제 8.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을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 10 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8.4 조 최혜국 대우^{22,23}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제 8.5 조 대우의 최소기준²⁴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제 1 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이 요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제 1 항의 의무는

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에 의해 부여된 대우를 말한다.

²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제 2 항에 언급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대우는 국제 조약 또는 무역 협정에 규정된 이 장의 제 2 절에서와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²⁴ 이 조는 부속서 8-가에 따라 해석된다.

- 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제 1 항의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은 이 조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8.6 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 1 항은 제 8.9 조제 5 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 8.3 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8.8 조 이행요건

1.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²⁵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공급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²⁵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3 항에 따른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이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제 1 항바호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3 조 및 제 8.4 조는 그 조치에 적용된다.

3.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이익의 지속적 수령이 다음의 어떠한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4. 제 3 항은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이익의 지속적인 수령이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²⁶

5. 제 1 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1 조에 따라,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 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나. 당사국의 경쟁 관련 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 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²⁷

6. 다음의 규정,

가. 제 1 항나호, 다호,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 1 항나호, 다호,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²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또는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 1 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²⁷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다.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 1 항 및 제 3 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 간의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8.9 조 비합치 조치

1.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²⁸,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²⁹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²⁸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²⁹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

2.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는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 8.3 조 및 제 8.4 조는 제 16.6 조(내국민대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조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 8.3 조, 제 8.4 조 및 제 8.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8.10 조 투자과 환경

1.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적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자국 영역 내 설립, 획득, 확장 또는 보유를 위한 장려로서 그러한 조치들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공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장려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8.11 조 수용 및 보상³⁰

1.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인 방식일 것

다. 적법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 1 항라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 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³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11 조는 부속서 8-나에 따라 해석된다.

- 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 라.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 마.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 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또는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통화로 지불된다.
3. 영향 받은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수용 당사국의 사법적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에 의한 그 경우와 그 투자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수용 당사국의 법에 따라 보유한다.
4.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한다.

제 8.12 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 나. 이윤, 배당,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 8.6 조 및 제 8.11 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자유사용가능 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송금은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련된 자국 국내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5.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투자에 기인한 소득, 수익, 이윤 또는 그 밖의 액수를 송금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송금 실패를 이유로 그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6. 제 5 항은 당사국이 제 4 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제 4 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그러한 송금을 달리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는 현물수익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13 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 또는 한쪽 당사국의 기관이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장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 중 하나에게 지불을 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기관을 위하여 그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 또는 명익에 대한 대위변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기관은 그 투자에 관해 모든 상황에서 그 투자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기관이 그렇게 승인한 경우 그 투자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 8.14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8.15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 8.3 조는 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 8.3 조 및 제 8.4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 그 투자자의 투자가 그 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투자자 또는 그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인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은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16 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영업하거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한 기업들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지지된 원칙 성명서를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관행과 내부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원칙은 노동, 환경, 인권, 공동체 관계 및 반부패와 같은 쟁점을 다룬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 8.17 조 목적

제 21 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이 절은 투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8.18 조 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제 8.10 조, 제 8.15 조 및 제 8.16 조를 제외한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투자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제 8.19 조 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이 절에 따른 중재에 다른 쪽 당사국이 제 8.10 조, 제 8.15 조 및 제 8.16 조를 제외한 제 1 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하고, 그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비지배적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야기한 동일한 사건에 기인하여 제 8.18 조에 따라 청구한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청구가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경우, 그 청구들은 제 8.28 조에 따라 설립된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의 이해가 그 결과로서 저해될 것이라고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함께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3. 투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8.20 조 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서면 의사 통보(이하 "의사 통보"라 한다)를 청구 제기 전 최소한 90 일 전에 분쟁당사국에 전달한다. 의사 통보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청구가 제 8.19 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업의 명칭 및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쟁점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또한 의사 통보와 함께,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한다. 관련될 수 있는 증거의 예는 재산 증서, 기업설립증서, 주권 및 합작투자계약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제 8.21 조 협의 및 교섭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및 분쟁 당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 3 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8.22 조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선행 조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8.18 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동의할 것

나.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지 최소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해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 8.20 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청구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 대한 지분에 손실 또는 손해를 위한 것인 경우, 그 기업이,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 8.18 조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부속서 8-다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8.19 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 이 협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동의할 것

나.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 8.20 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 8.19 조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부속서 8-다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의와 포기는 분쟁당사국에 전달되며, 중재 청구 제기에 포함된다.

4. 제 1 항마호 또는 제 2 항마호에 따른 기업의 포기는 분쟁당사국이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그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규정된 어떤 선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 8.24 조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동의는 무효화된다.

제 8.23 조 중재 청구 제기

1. 부속서 8-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8.22 조에 규정된 선행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나. 한쪽 당사국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중재기관에 대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중재규칙

2.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중재 규칙이 중재를 규율 한다.

제 8.24 조 중재에 대한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 1 항에 규정된 동의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한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2 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 2 조

제 8.25 조 중재인

1.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투자 규칙, 또는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협정에서 야기된 분쟁 해결에 전문성이나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며, 제후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ICSID의 일반적인 중재 보수가 적용된다.

제 8.26 조 사무총장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1. 당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의장 중재인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2.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이외의 중재판정부가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제 8.27 조 중재인 임명 합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9 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7 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이 아닌 다른 근거에 기초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분쟁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 8.18 조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 다. 제 8.19 조제 1 항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그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8.28 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복수의 청구가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그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나. 중재판정부가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사무총장이 중재판정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의 이름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4. 분쟁당사자는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요청서 사본을 송달한다.

5. 사무총장은 요청의 접수 후 60 일 이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중재인 패널 명부에서 임명된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중재인이 그 패널 명부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임명은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으로 1 명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 국민으로 1 명을 임명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자를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한다.

6. 중재판정부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 3 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2 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을 포함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요청에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7. 제 6 항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3 항에 따른 요청에 이름이 기재된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요청서 사본을 송달한다.

8. 제 8.23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9.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 8.23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제 2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8.29 조 비분쟁당사국에 대한 통보

분쟁당사국은 의사 통보와 중재 통보 및 청구서와 같은 그 밖의 문서 사본을 그러한 문서가 분쟁당사국에 송달된 후 30 일 이내에 비분쟁당사국에 송달한다.

제 8.30 조 문서

1. 비분쟁당사국은 자신의 비용으로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다음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었던 증거 사본

나. 중재에 제출된 모든 변론 사본,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의 서면 주장 사본

2.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수령한 비분쟁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 8.31 조 비분쟁당사국의 참여

1.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통보하고 중재판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심리에서 정보를 수령한 비분쟁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 8.32 조 중재지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재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선택된다.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중재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2.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고려한다.

제 8.33 조 절차 언어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는 다음으로 한다.

가. 한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나. 캐나다가 분쟁당사국인 경우, 불어와 영어

2. 교신, 입장제출, 증언 및 서류 증거는 번역 없이 중재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될 수 있다.

제 8.34 조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항변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본안 절차 이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8.35 조 중재 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쟁당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그러한 문서를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 통보

나. 중재 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8.28조, 제8.31조 및 제8.36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이 절은 분쟁당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2.2조(국가 안보)와 제22.5조(정보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어떠한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그 정보를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러한 보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또한 제출한다. 편집본만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목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는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는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그 기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

5. 이 절은 분쟁당사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모든 관련 비편집 문서들을 자국의 각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인들이 그러한 문서들에 포함된 모든 비밀 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제 8.36 조 비분쟁당사자에 의한 입장제출

1. 서면입장제출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 또는 당사국의 영역 내 주요 거주를 가진 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속서 8-라에 따라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인은 신청 시 그 입장을 첨부한다.

2. 신청인은 모든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입장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서면 진술을 송달한다.

3.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입장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적절한 일자를 지정한다.

4.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을 위한 허가 부여 여부 결정시,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의 정도를 고려한다.

가.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 특정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관련 사실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부에게 도움이 될 정도

나.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 범위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비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5.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들이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6.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의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가 부여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회신하기 위한 적절한 일자를 지정한다. 그 일자까지 비분쟁당사국은 제8.31조에 따라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제시된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다룰 수 있다.

7.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를 부여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어느 시점에서 그 입장을 다루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입장을 제출한 비분쟁당사자는 그 중재에서 더 이상의 입장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8. 제8.35조에 따른 심리 및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 관련 조항은 이 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비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심리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을 규율한다.

제 8.37 조 준거법

1.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절에 따른 판정은 그 해석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8.38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부속서 II 또는 부속서 III에 규정된 유보 또는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분쟁당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 후 60 일 이내에 자신의 해석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 8.37 조제 2 항에 더하여,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공동위원회가 60 일 이내에 해석 결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8.39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 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8.40 조 잠정 보호 조치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 8.18 조 또는 제 8.19 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제 8.41 조 최종 판정

1.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을 판정할 수 있다.

2. 제 1 항을 조건으로, 제 8.19 조제 1 항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의 판정은 그 금전적 손해배상과 이자가 그 기업에 지불될 것을 명시한다.

나. 재산의 원상회복의 판정은 원상회복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3.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제 8.42 조 판정의 최종성과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제 3 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5.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은 제 21 장(분쟁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한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6.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절차가 제 5 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 1 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43 조 절차 및 그 밖의 사안

중재에 제기된 청구 시점

1. 청구가 이 절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시점은 다음 시점으로 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중재 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2 조에 따른 중재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규정된 중재 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2.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아래 장소로 그 당사국에게 송부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동
국제법무과,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Office of 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Canada Justice Building
284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H8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른 수령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분쟁당사국은 변론, 반소, 상계권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 8.44 조 제외

이 절과 제 21 장(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 규정은 부속서 8-바에 언급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정의

제 8.4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비밀 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및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공개로부터 달리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적용대상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란 제 2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 2 절에 따른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개정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ICSID 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 년 3 월 18 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의장권, 특허권,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그리고 비공개 정보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일정 기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³¹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그리고

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³²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란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투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³³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³¹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³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³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의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때와 같이 투자자가 언급된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이중 시민권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시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그리고

나. 한쪽 당사국의 시민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은 그 자연인이 시민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제 2 절에 따른 투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ICSID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송금이란 국제적 지불을 포함한다.

중재판정부란 제 8.23 조 또는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부속서 8-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8.5 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 인하여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 8.5 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 기준은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말한다.

부속서 8-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 가. 간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에 기인한다.
- 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상실시키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 다.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³⁴, 그리고

³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 3)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여 선의로 채택되고 적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³⁵.

³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8-다

중재 청구 제기

1. 투자자 또는 기업이 각각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의 소송절차에서 제 1 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캐나다의 투자자는

가. 제 8.18 조에 따라 그 투자자 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 8.19 조에 따라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한국이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캐나다의 투자자 또는 캐나다의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한국이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서 동일한 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은 캐나다의 투자자가 한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된다.

4. 한국의 투자자는 캐나다 국내법에 따른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명령적, 선언적 또는 그 밖의 비상 구제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부속서 8-라

비분쟁당사자들의 입장

1.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 신청은,

- 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고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 및 그 밖의 연락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타자로 다섯 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적절한 경우, 회원자격 및 법적 지위(예: 회사, 무역 협회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구), 일반 목적, 활동의 성격, 그리고 어떠한 모조직(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청인을 지배하는 어떠한 조직을 포함하여)을 포함하여 신청인을 기술하여야 한다.
- 라. 신청인이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 마. 입장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였던 정부, 인, 또는 조직을 밝혀야 한다.
- 바. 신청인이 중재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의 성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이 서면 입장에서 거론하였던 중재의 사실 또는 법적인 구체적 쟁점을 밝혀야 한다.

아. 제8.36조제4항에서 명시된 요소들을 언급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입장을 수락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 중재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비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입장은,

가. 입장을 제출한 인에 의하여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나. 간결하여야 하며, 모든 부록을 포함하여 타자로 20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쟁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진술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라. 분쟁의 범위 내에 있는 사안만 거론하여야 한다.

부속서 8-마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 8.42 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8-바

분쟁 해결의 배제

「캐나다 투자법」상 심사에 따라 그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허용 여부에 관한 캐나다의 결정은 이 장의 제2절 또는 제21장(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9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9.1 조

적용 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며,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역정부, 또는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또는

나. 중앙 또는 지역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로 당사국의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4조 및 제9.7조는 제8.45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³⁶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0.20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또는

3)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다.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

라. 정부지원 융자, 보증 또는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³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9.4 조 및 제 9.7 조의 적용은,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을 포함한 이 장은 제 8 장제 2 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9.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9.4 조

시장접근

당사국은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거나 지역정부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³⁷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9.5 조

현지주재

³⁷ 이 폭은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쪽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9.6 조

비합치 조치

1. 제 9.2 조부터 제 9.5 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이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³⁸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³⁹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2조부터 제9.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³⁸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³⁹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2.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부속서 9-가는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관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9.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은 GATS 제6조제4항의 국내 규제와 관련된 상호 의무에 주목하며, GATS 제6조제4항에 따라 모든 필요한 규범의 수립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확인한다. 그러한 규범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채택되는 한도 내에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규범들을 검토한다.

제 9.8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 5 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9.3조는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 내 관련 기관이 체결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양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 관련 기관이 다음을 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가.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
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교섭을 개시하는 것

나. 부속서 9-나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일부터 12 개월 내에 회합
하는 것

다.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을 위하여 부속서 9-다의 지침을 받
는 것, 그리고

라. 협정 또는 약정의 타결 이후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7. 제 6 항라호에 언급된 통보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협정 또는
약정이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협정 또는 약정을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의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기간 내에 그 협정 또는 약
정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제 9.9 조

임시 면허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2. 제 9.8 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의 관련 기관이 다음
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 면허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을 개시하는 것

나. 부속서 9-나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회합하는 것

다.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대한 협상에 있어 부속서 9-다의 지침을 받는 것, 그리고

라. 양 당사국 각각의 영역 내 관련 기관에 의한 그러한 모든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3. 제 2 항라호에 언급된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기관이 비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 면허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존재를 신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합의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제 9.10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 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9.11 조

지불 및 송금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 및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 및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9.1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공급

그러나 제 8.45 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하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⁴⁰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⁴⁰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이 조들에 따라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할 것이 요구되는 대우는 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관련서비스까지

부속서 9-가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대한 협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의 수립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또한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확장된다.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 는 GATS 제 17 조 및 제 2 조 각각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9-나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할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부속서 9-다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위한 지침

서설

이 부속서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상을 개시하는 정부, 협상 주체 또는 그 밖의 주체에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양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용될 것을 의도한다. 지침은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이하 “MRA”라 한다)의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부속서에 기재된 사례들은 예시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사례들의 목록은 예시적이며, 한정적인 것을 의도하지도 아니하고 양 당사국에 의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의 승인을 의도하지도 아니한다.

제 1 절

협상의 수행 및 관련 의무

서설

제 9.8 조의 양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이 절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을 규정한다.

협상의 개시

1.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협상을 개시하는 의도

나. 논의에 관여하는 주체 (예를 들면, 정부,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기관 또는 그러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또는 달리 권한이 있는 협회)

다.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접촉선

라. 협상의 주제(적용 대상 특정 활동), 그리고

마. 예상되는 협상의 개시 시점 및 제 3 자의 관심표명을 위한 예시적 일자

결과

2. 당사국에 의한 MRA 타결시, 그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새로운 MRA 의 내용, 또는

나. 기존의 MRA 에 대한 증대한 수정사항

후속조치

3.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 의한 후속조치는 다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가. 협상의 수행 및 MRA가 이 장의 규정, 그리고 특히 제9.8조와 합치되는 것,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이 제9.8조제7항에 따라 MRA의 이행과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채택하고 행위를 취하는 것

단일 협상주체

4. 단일 협상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단일협상주체를 설립하도록 장려된다.

제 2 절

MRA 의 형식 및 내용

서설

이 절은 MRA 협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합의되는 경우 MRA 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규정한다. 이 절은 당사국이 MRA 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 전문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참여자

5. MRA 는 다음을 명백히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가. MRA 의 당사자 (예를 들어, 정부, 국가 전문직 기관 또는 협회)

나. MRA 의 당사자 이외에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 그리고 MRA 에 관한 그들의 지위, 그리고

다. MRA 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위 및 권한 분야

MRA 의 목적

6. MRA 의 목적은 명백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MRA 의 적용범위

7. MRA 는 다음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특정 직업 또는 직함, 그리고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전문적 활동의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

나. 관련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

다. 인정 메커니즘이 자격, 출신 국가에서 획득된 면허, 또는 그 밖의 요건에 기초하는지 여부, 그리고

라. 관련 전문직에 대한 임시적 접근, 영구적 접근, 또는 양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MRA 규정

8. MRA는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인정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과 MRA의 당사국 간 합의된 동등성 수준을 명백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MRA의 정확한 조건은,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MRA가 수립된 기초에 따른다. MRA 당사국의 다양한 지역 관할권에서의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상이한 점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MRA는 MRA 당사국의 한 지역 관할권에서 부여된 인정의 다른 지역관할권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정의 적격성 - 자격

9. MRA가 자격의 인정에 기초하는 경우, 그 MRA는, 적용가능한 경우, 다음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가. 요구되는 최소 교육수준 (입학 요건, 학업기간 및 전공을 포함한다)

나. 요구되는 최소 경력수준 (면허취득 전 직무 훈련 또는 감독하의 전문 실습의 위치, 기간 및 조건, 그리고 윤리 및 징계 기준의 체계를 포함한다)

다. 통과된 시험, 특히 직업능력의 시험

라. 현지국에서 인정되는 본국 자격의 한도, 그리고

마. 예를 들어, 일정 기관에서 발급된 특정 학위 또는 증명서 목록을 나열함으로써, 또는 일정 자격수준의 보유로 일부 활동의 인정은 허용되거나 다른 활동의 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출신 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인증되는 특정 최소요건을 언급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인정할 준비가 된 자격

인정의 적격성 - 등록

10. MRA가 출신 국가의 규제당국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 결정의 인정에 기초하는 경우, 그 MRA는 그러한 인정을 위한 적격성이 확립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11. 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MRA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예를 들어, 현지국에서의 자격요건, 또는 현지 법, 관행, 기준 및 규제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 부족함이 있는 경우)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받은 활동의

범위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현지국에서의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요구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나.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MRA 는 그 요건들이 수반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적성 검사, 현지국 또는 출신 국가에서의 추가 실습, 실무 훈련, 그리고 시험에 사용되는 언어)

이행 메커니즘

12. MRA 는 다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가. MRA 의 규정을 감독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규칙 및 절차

- 나. 양 당사자간 대화 및 행정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 다. MRA 에 따른 분쟁의 중재수단

13. 개별 신청자의 대우를 위한 지침으로서, MRA 는 다음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안(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및 주소, 면허발급 절차, 현지국에서 충족되어야 할 추가적 요건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각 당사자의 중요 접촉선

- 나. 현지국의 관련 당국에 의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절차의 기간

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및 제출되어야 하는 형식, 그리고 신청 시한

라. 자격 및 면허와 관련하여 출신 국가에서 발급되는 서류 및 증명서의 접수

마. 관련 당국에 이의제기 또는 관련당국에 의한 검토 절차, 그리고

바.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수수료

14. MRA 는 또한 다음의 약속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조치에 대한 요청이 신속히 처리될 것

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준비 시한이 제공될 것

다. 모든 시험 또는 검사가 합리적인 주기로 준비될 것

라. MRA 의 조건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가 현지국 또는 기관의 비용에 비례할 것, 그리고

마. 실무 훈련을 위한 현지국에서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지국의 모든 약속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현지국에서의 면허 및 그 밖의 규정

15. 적용 가능한 경우,

가. MRA 는 또한 적격성의 확립에 이어 면허를 실제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 및 조건, 그리고 그러한 면허가 수반하는 사항들(면허 및 그 내용, 전문직 기관의 회원자격, 전문직 또는 학문적 직함의 사용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격 이외의 면허요건은,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 사무실 주소, 설립 요건 또는 주거 요건

2) 언어 요건

3) 신원 및 재정상태의 증명

4) 전문직 손해보험

5) 상품명 또는 회사명칭의 사용을 위한 현지국 요건에의 합치, 그리고

6) 예를 들어 독립성과 양립 불가성과 같은 현지국 윤리에의 합치

다.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MRA 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적용될 관련 법과 규정 (징계 조치, 재정적 책임, 의무 등)
- 2) 전문직에 대한 징계 관할권 및 모든 결과적인 제한조치를 포함하는, 직무 규범과 전문직 기준의 시행
- 3) 직무능력의 지속적인 검증을 위한 수단
- 4) 전문직의 등록 철회를 위한 기준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그리고
- 5) MRA 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국적 및 거주 요건 관련 규정

MRA 의 개정

16. MRA 가 검토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의 세부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2일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4)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9.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5)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6)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7)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2014년 9월 22일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4)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9.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5)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8.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6)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7)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2014년 9월 22일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
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8.1조(적용범위) 또는 제9.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
팅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은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⁴¹에 대한 투자는 제8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
리를 유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⁴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2014년 9월 22일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8.1조(적용범위) 또는 제9.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은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⁴²에 대한 투자는 제8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⁴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 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2014 년 9 월 22 일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캐나다 오타와

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양 당사국의 부속서 I 의 유보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 11.10 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2014 년 9 월 22 일

최경림
대한민국 수석대표
한국 서울

최경림 차관보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양 당사국의 부속서 I 의 유보 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제 11.10 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
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이안 버니

캐나다 수석대표

제 10 장 금융서비스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8장(투자) 및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8.10조(투자와 환경), 제8.11조(수용 및 보상), 제8.12조(송금), 제8.14조(혜택의 부인), 제8.15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9.10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8.11조(수용 및 보상), 제8.12조(송금) 및 제8.14조(혜택의 부인)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9.11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0.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3. 이 장은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국내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0.5 조제 1 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도록 요구되는 대우란,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0.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거나 지역정부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⁴³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0.5 조

국경 간 무역⁴⁴

⁴³ 이 목록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⁴⁴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 를 정의할 수 있다.
3.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6 조

신금융서비스⁴⁵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0.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⁴⁵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0.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 10.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⁴⁶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고위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이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⁴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⁴⁷,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⁴⁸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⁴⁹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제9.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0.2조 또는 제10.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⁴⁷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⁴⁸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⁴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제 10.10 조

예외

1.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3장(전자상거래), 제14장(정부조달)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⁵⁰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3장(전자상거래)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8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8.8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⁵⁰ 양 당사국은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자국 시장에서 건전성 요건에 합치되게 신금융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제 10.6 조가 국경 간 금융서비스무역, 또는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 10.11 조

투 명 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공표)를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4. 각 당사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한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0.12 조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0.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실체가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4 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가. 일방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0.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0-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0.16 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0-다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 그리고

다. 제10.19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달리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0.1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그리고 이러한 협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어떠한 요청에 대하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0-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금융규제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관련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요건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이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8 조

분쟁해결

1. 제21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1.7조(패널 구성)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1.7조(패널 구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 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의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 패널의 의장 이외에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21.7 조(패널 구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제21.11조(불이행-혜택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10.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8.18조(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또는 제8.19조(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에 따른 청구를 제8장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고 분쟁 당사국이 제10.10조에 따른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을 위하여 그 사안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10.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사본을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0.18조에 따라 구성되며 그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와 중재판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60일 기간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될 수 있다.

제 10.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

그러나 이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 (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또는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2) 외환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 4)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5) 양도성 증권, 또는
-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그리고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8.45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

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 8.45 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이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⁵¹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한쪽 당사국의 시민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은 그가 시민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금융기관은,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

⁵¹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의 설치를 인가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한 때와 같이,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들을 취했을 때에만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는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가 국경 간 무역

캐나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기술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기술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 1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기술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그리고 신용 조회 및 분석

4. 제 3 항은 외국은행과 그 계열사중 한곳도, 1991 년 「은행법」 c. 46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캐나다에 금융 기관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5.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⁵², 위험평가⁵³,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6. 제 5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7.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⁵⁴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편드운용, 간접투자 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⁵²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⁵³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⁵⁴ 제7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부속서 10-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캐나다

1. 제2항을 조건으로, 캐나다는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
- 2) 신탁 서비스, 그러나 신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의 신탁 보유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서비스

2. 이 약속은 제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이 약속은 지역정부에서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그러한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그러한 조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이 약속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캐나다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또는 그 기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 약속의 목적상, 캐나다에서 집합투자기구란 관련 증권법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되거나 등록된 투자펀드 또는 펀드 운용 기업을 말한다.

한국

6. 한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

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제10.1조 및 제10.5 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7. 제1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이 일단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8. 제1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 2 절

감독 협력

9.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각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3 절

정보의 이전

10.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개인 정보,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를 위한 것, 또는

나. 건전성 고려⁵⁵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을 그러한 정보의 수신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다만, 그러한 권리가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호에 따른 고려사항은 소비자 민감 정보의 보호 및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이 절은 그러한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기록에 접근하고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일정 정부 기관

11. 양 당사국은 다음 기관이 현재 구성된 대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양 당사국은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정부기관이며, 한국의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을 인정한다.

⁵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다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재정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제 11 장

통신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2. 이 장은 공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한 통신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 구축 · 취득 · 임대 ·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한쪽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 구축 · 취득 · 임대 · 운영 또는 공급하는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 관할권 하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1.2 조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1.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바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사설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국경 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제 5 항 및 제 6 항을 조건으로, 그러한 기업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사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와 상호접속하거나, 또 다른 기업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라.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사내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달리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 22.1 조(일반적 예외)에 더하여, 그리고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하여, 또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자신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I 또는 II 에 따라 당사국의 유보에 의하여 제한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6. 제 5 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이용에 대한 제한
- 나.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라.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마. 사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러한 망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 바.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11.3 조 허가 절차

1.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를 위한 조건

2.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며, 허가 거부 시의 경우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알릴 것이다.

제 11.4 조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위의 제 1 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상호접속

3.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하는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4.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제 11.5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제 11.6 조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제 9.4 조(시장접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자국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기초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1.7 조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기관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8 조

집행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의무와 관련된 국내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유지한다. 그러한 절차와 권한은 금전적 벌칙,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제 11.9 조 국내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1. 제 19.3 조(행정절차)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제외한 제11.2조 및 제11.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조치에 대하여 그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한다. 그리고
- 나.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구제를 신청한다.

재검토

2.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에 그 판정 또는 결정의 재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신청은 그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재고는 다음에 관한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 또는

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의 수립과 적용

사법심사

4.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독립적인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불복청구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규정된 의무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제 11.10 조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된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

1)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에 부착하는 데에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나.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 개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제 11.11 조 규제적용 면제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 그 규제적용의 자제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하는 경우

제 11.12 조 부가 서비스의 공급조건

1. 당사국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요율표를 제출할 것

라. 자사 망을 특정 고객 또는 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전송 망 이외의 또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1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1.14 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 11.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이란 제1.8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또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또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간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통신이란 기업이 그 기업 내에서, 또는 그 자회사, 지점,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계열사와, 또는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 간 소통하는 통신을 말하나, 관련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에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자회사, 지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계열사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중단점이란 이용자의 구역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의 최종 경계를 말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정의된 망 중단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통신 전송 서비스로서,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수반한다. 이 서비스는 특히 전보,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의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제8장(투자)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 또는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고객 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상 제고를 통하여, 또는 그 저장 및 복구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12 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2.1 조 일반원칙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제 12.2 조 일반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2.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자 또는 기업인이나 자연인의 입국 또는 노동을 허가하는 그 밖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3 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는 이 장에 따라,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공중 보건, 안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기업인의 일시 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인의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고용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기업인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한다.

제 12.4 조 정보의 제공

1. 양 당사국에 대해 일시 입국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제 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이 장에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을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해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을 허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한다.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12.5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설치한다.

가. 한국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심사과
과장,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부
이민실
일시거주정책과
과장,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2. 접촉선은 제12.4조에 기술된 정보를 교환하고, 이 장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일년에 한 번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정의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

다.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그리고

라. 이 장의 개정 제안

제 12.6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절차에 대하여 제21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통상적인 행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7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및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제19장(투명성), 제20장(제도 규정 및 행정) 및 제23장(최종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그 기업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계약 및 체류 기간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한다.

독립 전문가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 또는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부여된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서, 전문적 수준의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영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인은 그 직업을 위하여 규정된 필수 교육을 소지하거나, 인증 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성 개발 중인 경영 연수생이란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업 내 활동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면허를 가진 피고용인으로서, 기업 내에서 고위 간부직 준비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식과 경험을 확대할 의도로 일시적 직무 과제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전에 계획된 전문직 서비스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전문가의 입국 전에 그 조건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공급될 전문직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 종사자란 부록 12-가-2에 명시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영구적 거주 의도가 없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2-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 절
상용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할 것을 그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신분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그러한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당사국은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에 대한 구두 신고를 통상적으로 수용한다. 그 당사국이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을 입증하는 고용주로부터의 서한을 충분한 증거로 통상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 절차,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5. 각 당사국은 감독자,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 영역과 입국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그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5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제5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3 절 기업 내 전근자

8. 각 당사국은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으로서, 임원 또는 관리자, 전문가 또는 전문성 개발 중인 경영 연수생으로서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 또는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 입국을 부여하고 노동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입국 신청일 직전 3년 내 1년간 그 기업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것을 그 기업인에 요구할 수 있다.

9.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8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제8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4 절

전문가

11. 각 당사국은, 부록 12-가-2에 규정된 직업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의 상용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가인 기업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신분의 증명,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또는 독립 전문가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진 분야에서 사전에 계획된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12.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1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 절차,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제1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5 절 배우자

14. 각 당사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에 따른 일시 입국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인의 배우자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관련 고용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 허가 또는 승인을 제공한다.

15.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14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 절차, 노동 증명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제14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16.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배우자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배우자에게 비자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요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부록 12-가-1 상용 방문자

연구 및 설계

독립 연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작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마케팅

독립 연구 또는 분석,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마케팅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무역 박람회 및 홍보 인력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그러나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아니하는, 판매 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구매자

유통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운송하거나, 그 영역에서 내림이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싣고 운송하는 운송업자

판매 후 또는 임대 후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임대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판매 또는 임대 후 부수되

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그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훈련하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설치자, 수리 및 유지 인력, 그리고 감독자

일반 서비스

전문가 수준에서 상용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경영 및 감독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금융 서비스 인력(보험업자, 은행가 또는 투자 중개인)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 중개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행업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번역가 또는 통역사

부록 12-가-2
전문가 목록

독립 전문가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건축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엔지니어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경영 컨설턴트	학사 학위***	학사 학위***
수의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수의학 박사 학위 또는 주 면허

계약서비스 공급자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회계사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공인전문 회계사(CPA), 공인회계사(CA), 공인일반회계사(CGA) 또는 공인관리회계사(CMA)
보험 계리인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및 전문 보험 계리인 협회의 회원
농경토양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건축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조경사	학사 학위	학사 학위
양봉가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회계 감사관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CPA, CA, CGA 또는 CMA
생물학자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1. 식물학자 2. 생물학자 3. 생태학자 4. 발생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5. 독물학자		
6. 효소학자		
7. 병인학자		
8. 세균학자		
9. 유전학자		
10. 조직학자		
11. 기생충학자		
12. 인간생리학자		
13. 병리학자		
14. 면역학자		
15. 균류학자		
16. 박물학자		
17. 생리학자		
18. 바이러스학자		
19. 혈청학자		
20. 식물병리학자		
21. 작물과학자		
22. 해부학자		
23. 선태학자		
24. 세포화학자		
25. 생태생물학자		
26. 어류학자		
27. 선충학자		
28. 골해부학자		
29. 곤충학자		
30. 전염병학자		
31. 생화학자		
32. 식물육종가		
33. 동물육종가		
34. 가금과학자		
35. 토양과학자		
36. 식품과학자		
37. 동물과학자		
38. 동물학자		
39. 낙농과학자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화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학위**	학사 학위
엔지니어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산림 감독관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지구과학자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1. 고생물학자 2. 암석학자 3. 퇴적학자 4. 지진학자 5. 층서학자 6. 빙하학자 7. 수리지질학자 8. 수리학자 9. 광물학자 10. 해양학자 11. 석유물리학자 12. 제4기학자 13. 화산학자 14. 야금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원예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경영 컨설턴트	학사 학위***	학사 학위***
기상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물리과학자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대학원 학위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1. 물리학자 2. 천문학자 3. 공기역학자 4. 우주학자 5. 연구과학자 6. 방사선생물물리학자 7. 유동학자		
삼림학자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학사 학위
도시 및 토지 이용 계획가	학사 학위***	학사 학위***
수의사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수의학 박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정보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분석가 및 데이터 관리자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분야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및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엔지니어 모빌리티 포럼 (EMF) 면허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정보시스템전문가 (ISP) 지정 또는 인정된 외국 증명기관으로부터의 면허 또는 지정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양방향 미디어 개발자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학위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정보 시스템 전문

직업	한국 요건	캐나다 요건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EMF 면허	가(ISP) 지정 또는 인정 된 외국 증명기관으로부 터의 면허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설계자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학 과의 학사 학위 또는 고등 교육 학위 및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학위 및 컴퓨터 및 정보시 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 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EMF 면허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분 야의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 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정보 시스템 전문 가(ISP) 지정 또는 인정 된 외국 증명기관으로부 터의 면허 또는 지정

* 건축 서비스 제공은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한다.

** 양국에서 법률의 충돌이 없는 경우, 캐나다 전문가가 캐나다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의 고객 또는 고용주가 캐나다 전문가의 요건이 충족했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제공하면 한국의 교육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가 요구될 수 있다.

제 13 장

전자상거래

제 13.1 조

적용 범위

1.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금융서비스), 제11장(통신) 및 제14장(정부조달)을 포함한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제11.2조(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다른 장에서의 당사국의 약속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할 의무를 그 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 13.2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사회 및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촉진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국의 국내 규제 틀의 명확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나.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 지침, 모델 계약 및 행동규약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와 신용을 촉진하도록 민간 부문에 의한 자율 규제를 장려하는 것

다.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라. 국제 및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이 기업, 소비자, 비정부기구 및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마.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전자 환경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국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금지하도록 노력한다.

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치, 또는

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무역보다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더 제한적으로 대우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

제 13.3 조

관세

1.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3.4 조

개인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제 13.5 조

종이 없는 무역 행정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3.6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제 13.7 조 협력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가.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 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신뢰, 전자통신 안보, 전자인증, 지식재산권 및 전자정부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
- 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정보의 국경 간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라. 민간 부문이 행동 강령, 모델 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간 포럼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제 13.8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또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

제 13.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적으로 전달된이란 통신 단독의,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된 통신을 통한 전달을 말한다.

디지털 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란 통신 단독의,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된 통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무역을 말한다.

제 14 장 정부조달

제 14.1 조 목적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확인한다.

제 14.2 조 기존의 권리와 의무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3 조 적용범위

1. 제5조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외하고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의 부속서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를 참조 방식에 의하여 통합한다. 이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부속서 14-가부터 14-사까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조달에 적용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과 일관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에 통합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 제23.2조(개정)에 언급된 개정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된다.

제 14.4 조 수정 및 정정

1.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14-가의 정정, 부속서 14-가로부터의 기관의 철회 또는 부속서 14-가의 그 밖의 수정(이하 “수정”이라 한다)의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이하 “수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통보에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부속서 14-가로부터 그 기관

의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 정부의 그러한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수정제안의 경우, 변경이 이 장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미치는 예상결과에 관한 정보

2.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제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이전에 이 장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정제안을, 그리고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의 경우, 보상조정 청구를 검토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보상조정이 그 수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의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수정 당사국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정제안을 채택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당사국에게 이의사항을 철회하는 서면통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 14.5 조

추가 교섭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비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장 접근 확대를 부여하기 위한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제 14.6 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위원회의 진행중인 작업을 인정하며 상호 관심 사안을 추구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양자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 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촉진
 - 나. 관련 정보의 교환
 - 다. 시장 접근 확대 추구, 또는
 - 라.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3. 제 2 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부 당국을 문의처로서 지정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제 14.7 조 발효

이 장은 양 당사국을 위한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발효일 또는 제 23.4 조(발효)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발효한다.

부속서 14
부속서 14-가

한국 양허표-중앙정부기관

기준가:	상품	원화 100,000,000 원
	서비스	원화 100,000,000 원
	건설서비스	5,000,000 SDR

기관 목록: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문화재청
4. 방위사업청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해양경찰청(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는 제외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
9. 관세청
10. 산림청
11. 특허청
12. 기상청
13. 병무청
14. 농림축산식품부
15. 문화체육관광부
16. 교육부
17. 고용노동부
18. 환경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0. 외교부
21. 여성가족부
22. 법제처

23. 보건복지부
24. 법무부
25. 국토교통부
26. 국방부
27. 해양수산부
28. 국가보훈처
29. 미래창조과학부
30. 안전행정부
31. 기획재정부
32. 산업통상자원부
33. 통일부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5. 소방방재청
36. 국가인권위원회
37. 경찰청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는 제외한다)
38. 국세청
39. 국무조정실
40. 국무총리비서실
41. 조달청(주해 3)
42. 농촌진흥청
43. 중소기업청
44. 통계청
45. 대검찰청

부속서 14-가에 대한 한국의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 이 장은 조달청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또는 이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양허표 - 연방정부기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아래 기준가에 따라 이 부속서에 나열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기준가:	상품	100,000 캐나다 달러
	서비스	100,000 캐나다 달러
	건설서비스	5,000,000 SDR

기관 목록:

1. 대서양 캐나다 기회청 (자체계정)
2.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3.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
4.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
5. 캐나다 국세청
6. 캐나다 공무원 교육원
7. 캐나다 직업 보건 안전 센터
8. 캐나다 식품검사청
9. 캐나다 인권위원회
10. 캐나다 보건연구소
11. 캐나다 정부간회의 사무국
12.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13. 캐나다 핵안전 위원회

14.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 위원회 (자체계정)
15.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안전위원회
16. 캐나다 교통청 (자체계정)
17. 저작권 위원회
18. 캐나다 교정청
19. 법원행정국
20. 농업 및 농산 식품부
21. 캐나다 문화재부
22. 시민권 및 이민부
23. 고용 사회개발부
24. 재무부
25. 해양수산부
26. 외교통상개발부
27. 보건부
28. 캐나다 원주민 및 북부지역 발전부
29. 산업부
30. 법무부
31. 국방부
32. 천연자원부
33. 공공안전방재부
34. 공공근로 및 정부서비스부(자체계정)
35. 환경부
36. 교통부
37. 보훈부
38. 서부경제다양성부(자체계정)

39. 군인정착관리관
40. 전역자토지법관리관
41. 캐나다 퀘백주 경제발전처
42. 이민 및 난민위원회
43. 캐나다 도서 및 국가기록물관
44. 국립 전장위원회
45. 국립 에너지 위원회 (자체계정)
46. 국립 농작물 위원회
47. 국립 가석방 위원회
48.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49. 캐나다 과학 기술 연구 위원회
50. 북부 송유관청 (자체계정)
51. 감사원
52. 선거관리관실
53. 연방법무관무관실
54. 공식언어판무관실
55. 여성지위조정관실
56. 총독비서실
57. 캐나다 사생활 보호관실
58. 금융기관감독관실
59. 캐나다 공원국
60. 특허 약가 검토위원회
61. 추밀원 사무처

- 62. 캐나다 공공보건청
- 63. 공공서비스위원회
- 64. 공공서비스노동관계위원회
- 65. 캐나다 대법원 호적처
- 66. 경쟁재판등기처
- 67.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 68.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외부검토위원회
- 69.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공공고충처리위원회
- 70. 사회인문과학 연구위원회
- 71. 캐나다 통계청
- 72. 캐나다 교통항소법원
- 73. 재무위원회 비서실

부속서 14-가에 대한 캐나다 의 주해

부속서 14-가에 나열된 어떠한 기관도 하부기관을 창설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부속서 14-나
상품

한국 양허표

1.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부속서 14-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 1 항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범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설명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4110	냉장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및 단판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6505	약품 및 생물제재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6840	살충소독제
6850	각종 특수화학물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7350	식탁용 식기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깡통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9310 종이와 판지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 2 항을 조건으로, 이 장은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 1 항의 적용에 따라, 국방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 장은 아래 기재된 연방공급분류(FSC)표에 기술된 상품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FSC 설명

22	철로장비
23	자동차, 트레일러 그리고 자전거 (2310 의 버스, 2320 및 2330 의 군용 트럭 및 트레일러, 2350 의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기존에 2320 으로 분류되었던 2355 의 바퀴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은 제외한다)
24	트랙터
25	차량 관련 장비 구성요소
26	타이어와 튜브
29	엔진 부수품
30	기계 동력 전송 장비
32	목재작업 기계 및 장비
34	금속 작업 기계
35	서비스 및 무역 장비
36	특수 산업 기계
37	농업 기계 및 장비
38	건설, 광산, 채굴 및 고속도로 유지 장비
39	물자 취급 장비
40	줄, 케이블, 체인 그리고 이음쇠
41	냉장 및 공기조절 장비

42 소방, 구조 및 안전 장비(4220: 해양 구조 및 다이빙 장비 그리고
4230: 오염제거 및 주입 장비는 제외한다)

43 펌프 및 압축기

44 용광로, 화력발전소, 건조 설비 및 원자로

45 배관, 가열 및 위생 설비

46 정수 및 하수 처리 장비

47 파이프, 튜브, 호스 그리고 이음쇠

48 밸브

49 유지 및 수리점용 장비

52 측정공구

53 하드웨어 및 연마재

54 조립식 구조물 및 비계

55 목재, 목공 제품, 합판 및 단판

56 건설 및 건축 자재

61 전선, 전력 및 배전 장비

62 조명기구 및 램프

63 경보 및 신호 시스템

65 의료, 치과 및 수의 장비 및 보급품

66 기구 및 실험용 장비(6615: 자동 항법 체계 및 항공 자이로 구성품 및
6665: 위험 감지 기구 및 장치는 제외한다)

67 사진 장비

68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69 훈련 보조물 및 장치

70 일반적 목적의 데이터 자동 처리 장비, 소프트웨어, 보급품 및 지원 장
비(7010: 자동데이터처리장비(ADPE) 환경설정은 제외한다)

71 가구

72 가정 및 상업용 비품 및 기기

73 음식 조리 및 급식 장비

74 사무용 기계, 문서 편집 시스템 및 녹화 장비

75 사무용 보급품 및 장비

76 책, 지도 및 기타 출판물(7650: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제외한다)

77 악기, 축음기 및 가정용 라디오

78 레크레이션 및 운동 장비

79 청소 장비 및 보급품

80 솔, 페인트, 밀봉제 및 접착제

81	용기, 포장 및 포장 보급품
85	세면도구
87	농업용 보급품
88	산 동물
91	연료, 윤활유, 기름 및 왁스
93	비금속 제조물
94	비금속 원료
96	광석, 광물 및 이들의 1 차 제품
99	기타

부속서 14-다 서비스

한국 양허표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다.

<i>GNS/W/120</i>	<i>CPC</i>	<i>설명</i>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i>GNS/W/120</i>	<i>CPC</i>	<i>설명</i>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 인승 미만의 승용차에 한한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에 한한다)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 부수 서비스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유지 및 보수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하는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2.D.e.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음성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i>GNS/W/120</i>	<i>CPC</i>	<i>설명</i>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에 한한다)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행 및 여행 운영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한다)
11.A.b.	7212*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11.A.d.	8868*	선박의 유지 및 보수
11.F.b.	71233*	컨테이너 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11.H.c	748*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통관서비스
11.I.		철도화물운송주선

부속서 14-다에 대한 한국의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 2 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에 따른다. 연방 기관에 대한 이 장의 이행 목적상, 캐나다는 “공통 분류 체계”를 사용할 것이다.
2. 이 장은 다음의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CPC	내용
633	개인 및 가정 물품 수리 서비스
641	호텔 및 유사 숙박 서비스
642-643	식음료 제공 서비스
821	자가 혹은 임차 재산 관련 부동산 서비스
8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서비스
841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842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자문 서비스, 시스템 분석, 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유지 서비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843	처리, 표 작성 및 설비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849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
861	법률 서비스(외국법 및 국제법에 한한 자문 서비스)
862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863	세무 서비스(법률 서비스는 제외한다)
874	건물 청소 서비스
876	포장 서비스
883	시추 및 현장 서비스를 포함한 광업 부수 서비스
94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유사한 서비스
7471	여행 대행업 및 여행 운영 서비스
7512	상업적 쿠리어 서비스(복합 모드를 포함한다)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7523	전자메일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코드와 프로토콜 변환 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7523	음성 메일
8660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86602 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외한다)
8671	건축설계서비스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86731 의 교통 인프라 터키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제외한다)
8674	도시 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8676	품질관리 및 점검을 포함한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FSC 58 관련 및 교통 설비는 제외한다)
8814	산림관리를 포함한 산림 및 벌목 부수 서비스

8861 부터
 8864 까지
 및 8866 금속 생산품, 기계 및 설비에 부수된 보수 서비스

83106 부터
 83109
 까지에 한함 기계 및 설비와 관련한 운영자 미포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83203 부터
 83209
 까지에 한함 개인 및 가정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86501 일반적 경영 자문 서비스

86503 마케팅 관리 자문 서비스

86504 인적 자원 관리 자문 서비스

86505 생산 관리 자문 서비스

부속서 14-다에 대한 캐나다의 주해

1. 이 장은 GATS 의 캐나다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2. 캐나다의 통신 서비스 적용범위는 공중 통신 전송 네트워크의 공급자로부터 임대 한 기초 통신 설비의 공급을 위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한정된다.
3.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정부시설 또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여 정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이 소유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
 2. 공익사업
 3. 비행장, 통신 및 미사일 설비에 관련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4. 선박 건조 및 수리 그리고 관련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5. 국방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및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구매한 것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 그리고
6. 해외주둔 군병력 지원관련 서비스 조달

부속서 14-라 건설 서비스

한국 양허표

정의:

1. 건설 서비스 계약이란 중앙품목분류 제 51 부에서 뜻하는 토목 또는 건축 공사의 모든 수단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건설·운영·이전(이하 “BOT” 라 한다)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BOT 계약을 포함한다.
2. BOT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이다.

기준가: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관에는 5,000,000 SDR

BOT 기준가: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관에는 5,000,000 SDR

건설서비스의 목록:

CPC 설명

51 건설업

부속서 14-라에 대한 한국의 주해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캐나다 양허표

b)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 2 항에 따라, 이 장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제 51 부의 모든 건설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c)

d) 2.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 가. 준설 서비스, 그리고

나. 연방 교통부에 의한, 또는 대신하여 조달되는 건설 서비스

f) 부속서 14-마
 일반 주해

한국 양허표

1. 부속서 14-다에 기재된 서비스는 다른쪽 당사국에 대하여서는 다른쪽 당사국이 그 서비스를 부속서 14-다에 포함시킨 한도에서만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양허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부속서 14-가부터 14-라까지를 포함하여 이 장에 적용된다.

1.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선박건조 및 수리
 2. 도시철도 및 도시 교통 설비, 체계, 구성요소 및 그에 포함된 자재뿐만 아니라 철 또는 강철 자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3. FSC 58(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4. 농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농산물, 그리고
 5. 조달 계약의 부분을 이루는 또는 부수적인 교통 서비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소기업 및 소수자 소유 기업을 위한 할당분
 - 나. 원주민에 대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조치. 이 장은 1982 년 「헌법」의 제 35 절에 따른 캐나다 원주민의 기존 원주민의 권리 또는 조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국제 협정에 따른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 또는 개발을 위하여 의도된 계약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에 따라 해석된다.

가. 캐나다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조달은 정부의 직접적 혜택 또는 사용을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계약적 거래로 정의된다. 조달 과정은 조달기관이 조달 요건에 대하여 결정한 이후에 시작하여 낙찰까지 포함하여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과 다른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 간 조달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에 의하여 낙찰될 계약이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은 그 계약을 구성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14-가의 연방 기관에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예외는 승계 기관이나 기관군 또는 기업이나 기업군에게 이 제안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또한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14-바
공고의 공표

한국의 경우, www.g2b.go.kr 상의 한국 온라인 E-정부조달 시스템(KONEPS) 또는 필요시, gwanbo.korea.go.kr 상의 전자 관보

캐나다의 경우, <https://buyandsell.gc.ca/>상의 정부 전자 입찰 서비스(GETS)

부속서 14-사 기준가 조정

1. 부속서 14-가에 언급되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필요시에 양 당사국간 협의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2. 부속서 14-가에 언급되어 있는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결정에 관한 위원회 GPA/1, 부속서 3 에 있는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3. 양 당사국은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발효 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초 조정일부 터 시작하여 매 2 년마다 조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 15 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 15.1 조

경쟁법과 경쟁정책

(2)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 목적의 이행을 증진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때때로 각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협의한다.

(3)

2.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따라 자국이 취하는 집행조치는 투명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로부터의 배제는 투명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배제가 자국의 최우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국의 배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의 경쟁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상호 법적지원, 통보,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경쟁법 집행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한다.

4.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의 어떠한 형태도 이용될 수 없다.

(4)

제 15.2 조

독점⁵⁶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독점을 유지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⁵⁶ 이 조 및 제 15.3 조의 목적상, “유지하다”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정되고 발효일에 존재함을 말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려고 의도하고 그 지정이 다른 쪽 당사국 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지정 당사국은,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지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규제적 통제, 행정적 감독 또는 그 밖의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자국이 지정하는 민간 소유 독점 또는 자국이 유지하거나 지정하는 정부독점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독점이 그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나. 다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⁵⁷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관련 시장⁵⁸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⁵⁹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다. 관련 시장⁶⁰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라. 자국 영역내 비독점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에 있어, 그런 관행이 적용 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⁵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정 조건은 개정될 수 있다.

⁵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그리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⁵⁹ 이 규정은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다호 또는 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⁶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그리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런 관행에 관여하는 데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제3항은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3 조

공기업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공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규제적 통제, 행정적 감독 또는 그 밖의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이 유지하거나 설립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공기업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공기업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한다.

제 15.4 조

가격차별

제 15.2 조 및 제 15.3 조는 가격차별이 공급 및 수요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5.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임한이란 입법적 부여,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하여, 독점 또는 공기업에 정부권한을 이전하거나, 독점 또는 공기업에 의한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하다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독점을 설립·지정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달을 의미하고, 정부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독점이란 당사국의 중앙 정부 또는 다른 그러한 독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되는 독점을 말한다.

상업적 고려에 따라라 함은 관련 영업 분야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움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지식 재산권을 부여받은 실체는 그러한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비차별적 대우란 이 협정의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기업이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15-가

공기업의 국가별 정의

제 15.3 조제 3 항의 목적상, “공기업” 이란,

가.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미 내에서의 공적 기업 및 준 정부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금융행정법」의 의미 내에서의 정부 기업, 상당하는 모든 주법의 의미 내에서의 정부 기업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주법에 따라 통합된 상응하는 실체를 말한다.

제 16 장

지식재산

제 16.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발상, 기술 및 창의적인 활동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 교역 및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 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 다.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의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간 균형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 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제 16.2 조

지식재산의 범위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을 지칭한다.

제 16.3 조

국제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지식재산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16.4 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 체계와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3. 이 협정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일반적인 법 집행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 16.5 조

공중 보건 사안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장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결정과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 16.6 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하 “WPPT”라 한다)에 따라 이 장에서 특별히 부여된 내국민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제공함으로써 제 1항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제 16.7 조

소진

이 장은 양 당사국이 지식재산권의 소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8 조

정보의 공개

이 장은 당사국에게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거나 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공개로부터 면제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6.9 조

상표

상표 보호

1. 당사국은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⁶¹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 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⁶¹ 당사국은 표지에 대하여 적절한 표현 또는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다.

상표권에 대한 예외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 상표

5. 당사국은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상표가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의 소유자에게 구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등록여부

나. 유명상표 목록에의 등재 여부, 또는

다. 유명성에 대하여 이미 인정받았는지 여부

6.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이하 “파리 협약”이라 한다) 제6조의 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

명상표⁶²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상표 등록 및 출원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당사국은 출원인에게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10.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정보체계를 제공한다.

11.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 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 16.10 조

⁶²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공중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⁶³

1. 캐나다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그리고 “이천쌀” 과 각각의 번역어인 “Korean Red Ginseng”, “Korean White Ginseng”, “Korean Fresh Ginseng”, “Icheon Rice” 의 지리적 표시⁶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⁶⁵을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그 관련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인삼 또는 쌀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한국은 “캐나다 위스키”, 그리고 “캐나다 라이 위스키”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그 증류주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이

⁶³ 이 조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⁶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한쪽 당사국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복합 명칭의 개별 명칭은 그 개별 명칭이 관련 상품을 위한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경우 그 당사국에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⁶⁵ “법적수단”은 지리적 표시권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추가조치 없이 이러한 용어가 인정되는 것과 제16.13조제1항부터 제16.13조제4항까지, 제16.13조제6항 및 제16.13조제7항과 일치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당사국은 제16.18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따라 민사조치 또는 국경조치 등과 같은 집행 문제를 논의한다. 양 당사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보호에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또는 선의로 사용되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에서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원산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조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5. 당사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요청은 보호 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그 당사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상표가 그 당사국내에서 상표등록일까지 공표되고 그 등록일이 부정적 사용이 그 당사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6.11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1961 년 10 월 26 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 이라 한다)

나.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 이라 한다)

다. 1996 년 12 월 20 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이하 “WCT “라 한다), 그리고

라. WPPT

저작권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과 실연⁶⁶ 및 음반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상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67, 68, 69}.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⁶⁶ 이 장의 목적상, “실연” 이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⁶⁷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저작물 또는 특정한 분류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이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 법의 사안임을 재확인한다.

⁶⁸ 제한 및 예외에 관한 모든 합의의사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재된 협정 및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권에 적용 가능한 WCT와 WPPT의 합의의사록은 이 항에도 적용된다.

⁶⁹ 당사국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⁷⁰

기술조치의 보호

4.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⁷¹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5. 제 4 항에 언급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가. 자국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 1)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진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우회하는 것, 그리고

⁷⁰ 당사국은 WPPT에 따른 이러한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⁷¹ 이 조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당사국의 국내법에 포함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적용범위를 저해함이 없이,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암호화 또는 스크램블과 같은 관련 접근통제나 보호 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장치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공중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나. 다음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나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만 있는 것

6.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소비자 전자, 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이 항들을 이행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법에 상호운용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장치, 제품, 구성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의무는 없다.

7. 제4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8. 전자적 권리관리정보⁷²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9. 제8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8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8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⁷² 이 조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을 말한다.

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다. 위의 가호 그리고 나호에 기술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이러한 정보의 어느 것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민사 또는 형사 범죄로 한다.

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수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신 또는 재배포하는 것

각 당사국은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구성된 민사 위법에 대하여 그 신호의 내용에 이해 관계를 가진 모든 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16.12 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⁷³.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그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

⁷³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다.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6.13 조

지식재산권 집행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적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절차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 유지, 또는 적용되는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그러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참여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다.

3. 이 장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침해의 심각성, 제 3 자의 이익, 그리고 적용 가능한 조치, 구제 및 처벌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다.

4. 이 장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⁷⁴

6.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⁷⁵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조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금지 명령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인에게 침해의 중지, 특히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연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이 조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권리자의 승인 없는 정부의 사용 또는 정부가 승인한 제 3 자의 사용에 대하여 가능한 구제를 보상지불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그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2 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 이 조에 따른 구제가 적용되거나 이러한 구제가 당사국의 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판결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 배상^{76,77}

⁷⁴ 당사국은 비공개정보의 보호를 이 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⁷⁵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한다.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⁷⁸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상실된 이익 또는 시장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여 권리자가 제시하는 정당한 가치 측정 방법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다.

11.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이익을 제 10항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최소한 저작물·음반 및 실연을 보호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가. 법정손해배상액

나. 침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기에 충분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⁷⁹, 또는

⁷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침해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의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⁷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 10 항부터 제 12 항까지의 구제가 병행해서 명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⁷⁸ 당사국은 또한 상표 비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권리자가 제 10 항부터 제 14 항까지에 규정된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⁷⁹ 이 호에 언급된 추정은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적어도 저작권의 경우, 추가적 손해배상

13. 당사국이 제12항가호에 언급된 구제 또는 제12항나호에 언급된 추정을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권리자가 제10항과 제11항에 언급된 구제의 대안으로서 그러한 구제나 추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14.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상표 및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적절한 변호사 보수,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구제

15. 최소한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과 상표위조상품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사법당국이 가지도록 규정한다.

16.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그러한 침해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에 대하여서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
- 가. 권리자의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제3자에게 실제로 양도된 상품의 수량에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하였을 상품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액수
 - 나. 합리적인 로열티, 또는
 - 다. 최소한, 침해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한 일괄지급

17. 당사국은 제15항 및 제16항에서 기술된 구제가 침해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침해 관련 정보

18. 면책 특권, 정보원에 대한 기밀보호 또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침해자 또는, 그 대안으로서 침해 혐의자에게 최소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규정된, 침해자 또는 침해 혐의자가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침해 또는 침해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및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 3 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 또는 침해혐의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침해 또는 침해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잠정조치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가. 당사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제 3 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의 방지, 그리고

나. 침해의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의 보존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일방적으로 수행된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에게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부당한 지연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 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의심상품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 및 도구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조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서는 침해와 관련된 원본 또는 사본 형태의 증거서류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당국이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러한 잠정조치를 위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4.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6.14 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국경조치의 적용범위

1.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제 51 조 각주 14 의 적용대상인 상품을 포함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환적⁸⁰ 화물 또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규정을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국가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권리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이 조에 언급된 국경 조치를 취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사국은 또한 권리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⁸⁰ “환적”은 통관 절차에서의 다음의 화물 또는 상품의 이동을 의미한다.

가. 세관 통제하의 한 세관사무소에서 다른 세관사무소로의 운송, 또는

나. 세관 통제하의 수입과 수출 모두를 담당하는 세관사무소 구역 내에서의 수입 운송수단에서 수출 운송수단으로의 이동

직권 조치

5. 각 당사국은 수출과 수입 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권리자에 의한 신청

6. 각 당사국은 수입과 수출 화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은 신청인이 이 조에 기술된 절차를 남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을 기각, 중지,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6 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요청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상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담보가 피고가 상품의 반출 정지 또는 유치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침해의 결정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항에 기술된 절차의 개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구제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항에 언급된 침해 결정에 따라 침해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11.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2.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항에 언급된 침해결정에 따라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수수료

13.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기술된 절차와 관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산정되는 신청수수료, 보관수수료, 또는 폐기수수료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정보 공개

14. 각 당사국은 사생활 보호 또는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저해함 없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상품을 보유하거나 압수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권리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 정보는 상품의 명세와 수량,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상품의 원산지국 및 상품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소량 탁송물품과 개인 휴대품

15. 각 당사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되거나 소량의 탁송 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 물품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 16.15 조

형사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영화관에서의 상연으로부터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무단 복제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처벌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장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합치하는 벌금형⁸¹뿐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⁸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동시 부과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압수, 몰수 및 폐기

4.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 의심 상품과 위법혐의행위에 사용된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 증거, 그리고 침해혐의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혐의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당사국이 제 4 항에 언급된 명령의 전제조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압수의 목적상 그 품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 품목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몰수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상표위조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이 폐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상품이 권리자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상품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최소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침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그러한 재료, 도구, 또는 자산이 몰수 또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8.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압수, 그리고

나.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의 몰수

직권에 의한 형사 집행

9.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 당사국이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수사나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16.16 조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1. 이 장에 규정된 범위의 각 당사국의 민·형사 집행 절차는 침해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수단의 불법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적용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가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업계 내 상호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당한 행위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하면서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⁸²

제 16.17 조

협력

1. 제 16.1 조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에 합의한다. 협력 영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특허, 영업 비밀, 산업 디자인 및 인접권

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및 인접권

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⁸² 예를 들어, 당사국의 법을 저해함이 없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가능한 구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유지

라. 지식재산 관리, 등록 및 개발

마.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분야 지식재산 보호

바. 지식재산 교육 및 인식 증진 프로그램

사. 특히 위조 방지 및 불법 복제와 같은 상호 공유 관심사에 대한 비당사국과 관련한 사안

아.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자. 지식재산 및 개발, 그리고

차. 지식재산에 관한 상호 관심 있는 그 밖의 사안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식재산 분야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양 당사국의 각각의 기관 간 접촉의 발전을 촉진,

나. 다음의 정보를 교환

1)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각 당사국의 정책, 법규, 활동과 경험

2)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등록을 증진할 목적의 지식 재산 시스템의 이행, 그리고

3)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이니셔티브

- 다.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접촉선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 라. 각 당사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경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여하도록 전문가를 교환
- 마. 비당사국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 대화 그리고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의 지식재산 이니셔티브
- 바. 관련 학술 및 연구 기관간의 교류 촉진,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

제 16.18 조

지식재산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지식재산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3.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나. 제16.19조에 따른 협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감독한다.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 16.19 조

협 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지식 재산에 관한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 당사국이 간주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틀 내에서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가. 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3. 양 당사국이 제2항의 협의에 따른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7 장 환경

제 17.1 조 배경과 목적

1. 양 당사국은 「1992 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및 「2002 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 법을 규정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한다.

제 17.2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환경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제17.3조에 언급된 협정에 합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7.3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 및 협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각각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제 17.4 조 환경보호에 유익한 무역

양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포함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7.5 조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실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사, 공소, 규제 또는 준수의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함을 반영하거나 또는 보다 우선한다고 결정된 다른 환경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선의의 결정의 결과일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제 17.6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 목적의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 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7.7 조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자국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기된 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자국법에 따라 이용가능하고, 공정·공평·투명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에서의 공청회는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법집행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자가 그 당사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하여 제 2 항에 언급된 절차와 그 법위반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언급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기술하며 적기에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6. 제19.3조(행정절차) 및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8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자국의 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법에 대하여서 다른 쪽 당사국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표하거나 미리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제19.1조(공표)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9 조 정보 공개

1. 각 당사국은 대중에게 환경법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 거주 또는 설립된 인의 문의를 접수하고 고려함을 규정한다.

제 17.10 조 협력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상호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대중 및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환경협의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협력 이행을 감시한다.

제 17.11 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접촉선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자국 정부 내에 지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 정부의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대표자로 구성된다.
3. 협의회는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며, 적절한 경우, 이 장에 따른 진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의 발효 시점부터 1 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제 17.12 조 정부간 협의

1. 양 당사국은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과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⁸³ 요청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적시하고, 제기된 문제의 충분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된다.
3.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협의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는 해결책은 공개된다.
5.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고위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된다.

제 17.13 조 전문가 패널⁸⁴

1. 사안이 제17.12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제17.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120일 후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에 대한 위임사항은 “환경 장의 관련조항에 비추어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⁸⁵ 패널위원 선정에 대하여는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2. 최종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이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결정할 경우,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권고에 대한 양 당사국간 합의 결과는 신속하게 공개된다.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대한 이행은 협의회에 의하여 점검된다.

⁸³ 제17.5조제1항의 협의는 무역 또는 투자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그러한 사안에 제한된다.

⁸⁴ 전문가 패널을 요청하기 전에, 당사국은 패널 검토의 대상이 될 환경법과 그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법을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⁸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권고만을 포함하고 무역제재나 벌칙금과 같은 구제의 사안을 다루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 그리고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17.14 조 정보 보호

이 장은 당사국에게 정보에의 접근과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공개가 금지되거나 면제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7.15 조 분쟁해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당사국은 제 21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7.16 조 캐나다 주에의 적용

제 1.4 조(의무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주에 대한 이 장의 적용은 부속서 17-나에 따른다.

제 17.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환경법이란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법령 또는 규제 규정,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말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보호되는 자연 지역의 보전 및 보호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천연자원에 대한 상업적 채취나 개발, 또는 자급자족이나 원주민의 수확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7-가 전문가 패널과 관련된 절차

1.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전문가 패널은 3 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각 당사국은 1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 다.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추가 7 일 이내에 자국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으로 자격을 갖춘 개인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2. 의장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면서 의장이 될 자격을 갖춘 3 명의 후보 이름을 제공한다. 그 명단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시부터 30 일 이내에 제공된다.
 - 나. 요청 당사국은 그 명단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명단이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후보자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 명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명단은 가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 후 37일 이내에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3명의 후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의장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 중에서 추가 7일 이내에 추첨으로 선정된다.
3. 패널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들은 환경법 또는 이 장에서 다루는 사안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어야 한다.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어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정부와도 연계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와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은 전문가 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나. 양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관련 정보나 전문성이 있는 비정부기구, 기관 및 개인은 전문가 패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다. 각각의 패널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가 개최되고, 심리는 정보에의 접근과 사생활의 보호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대중에 공개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가 선정된 후 1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사실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명시하고, 사안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중간 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패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전문가 패널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하거나, 적절한 경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최종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그 최종보고서를 공개한다.

부속서 17-나
캐나다 주에의 적용

1. 이 협정의 발효 후, 캐나다는 주의 관할 영역 내에서의 사안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구속되는 주를 명시한 서면 선언문을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한국에 제공한다. 그 선언문은 한국이 수령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캐나다는 이 장이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캐나다는 자국 선언문에 대한 수정 6 개월 이전에 이를 한국에 통보한다.
4. 캐나다는 위에 언급된 선언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7.12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 18 장

노동

제 18.1 조 공동약속 성명

양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이하 “국제노동기구선언”이라 한다)의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확인한다.

제 1 절 의 무

제 18.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확인하고, 각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며 자국의 노동정책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보호를 구현하고 제공함을 보장한다.⁸⁶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의 철폐

⁸⁶ 이 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성립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이 조에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의 보호를 자국의 노동법에 구현하고 제공함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 라.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의 철폐
- 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고용기준
- 바.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의 예방
- 사. 직업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그리고
- 아.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비차별

제 18.3 조 보호수준 저하 금지

면제 또는 이탈이 제18.2조에 규정된 권리에 불합치할 경우,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18.2조를 이행하는 자국의 노동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제 18.4 조 정부집행 조치⁸⁷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부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⁸⁷ 이 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무역 또는 투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과 분쟁의 사안이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의 임명 및 교육

나. 준수여부의 감시 및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의 조사

다. 기록보관 및 보고 요구

라. 작업장의 노동규정을 다루기 위한 노사협의회의 설치 장려

마. 조정, 화해 및 중재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장려, 그리고

바. 자국 노동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 또는 구제를 위한 절차의 시의 적절한 개시

2. 각 당사국은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당사국 노동법의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청할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요청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고려함을 보장한다.

제 18.5 조

사적 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다음의 권한을 가진 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그 당사국의 노동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인의 노동권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노동법 또는 노동권 위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권한

제 18.6 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항나호, 제18.4조제1항바호 그리고 제18.5조에 언급된 조사 또는 절차가

가. 공정 · 공평 · 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나. 이러한 절차의 적절한 운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 공개되고,

다. 불합리한 수수료, 지연 또는 시간 제한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절차의 본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하며, 적기에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적절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 18.7 조 정보공개

각 당사국은 집행 및 준수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제 2 절 제도적 장치

제 18.8 조 장관급 노동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회를 설치한다.
2.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장에 따른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협의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의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또는 협의회가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경험에 비추어 이 장의 운영 및 유효성을 검토한다.

제 18.9 조 국가 접촉선

각 당사국은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내에 국가접촉선(이하 “NPC” 라 한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외교문서를 통하여 자국 접촉선의 연락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18.10 조 공중의견제출제도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노동법 사안에 대한 공중의견의 제출 및 접수를 규정하고, 그 목록을 주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사안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 그리고

다. 제 1 절상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8-나에 따른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안을 검토한다.

제 18.11 조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제도에 대한 각 당사국의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 협력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제 18.12 조 일반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NPC에 서면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의 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협력,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3. 양 당사국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제18.13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 3 절 의무검토 절차

제 18.13 조 노동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장관급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응답한다.
2. 각 당사국은 개인 및 상업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제기된 사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고려중인 사안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한 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보고서 준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고서는 장관의 수령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중에 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전문가 또는 복수의 전문가 선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보고서 준비에 있어 그 전문가 또는 복수의 전문가와 협력한다.

4. 노동협의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종결된다.

제 18.14 조
검토판널^{88,89}

1. 노동 협의 종결 이후에, 협의를 요청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검토판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 그 사안이 노동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판널은 이 절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검토판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중단한다.

4. 검토회는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⁸⁸ 상호주의 원칙을 인정하며, 검토판널 요청 전에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의무가 자국영역 내 자국 노동력의 합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⁸⁹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이 조에 따른 분쟁해결에 회부하여야 할 것이다.

제 18.15 조
패널위원

1. 검토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은
 - 가. 노동 또는 유관 분야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및 올바른 판단력에 기초하여 선정된다.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 다.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3.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한다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해임된 패널위원 선정시 사용되었던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이 선정된다. 기한은 양 당사국이 그 패널위원을 해임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기산된다.
4. 개인은 그 또는 그와 제후관계에 있는 인 또는 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검토에 관하여 패널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다.
5.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6. 패널위원은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제 18.16 조
검토판널을 위한 정보

1. 양 당사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검토판널에 서면 및 구두로 입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검토판널은 관련 정보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협회, 대중 그리고 인에게 서면입장 및 그 밖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다.

제 18.17 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판널은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18.16조에 따라 패널에게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판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18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사실의 조사결과

나.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1절의 의무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판정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 그리고

다.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한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3. 패널위원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판널은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부터 45 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5. 그러한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검토패널은 자체발의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 보고서의 재검토, 그리고

다. 검토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

제 18.18 조 최종 보고서

1. 검토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별도의 의견을 포함하여,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3. 검토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90일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이내에 검토패널의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 후, 양 당사국이 조치계획을 결정할 수 없거나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조치계획을 그 조건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부속서18-마에 따라 금전적 평가액의 산정 및 지불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패널이 재소집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4 절 일반규정

제 18.19 조 집행원칙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8.20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불합치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였음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 18.21 조 국내절차의 보장

각 당사국의 재판소의 결정 또는 계류 중인 결정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는 이 장에 따른 수정 또는 재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8.22 조 정보 보호

1.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 또는 독점적 정보로 확인된 정보를 받은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기밀성 또는 독점성을 보호한다.
2. 이 장에 따라 검토패널에게 제공된 비밀 또는 독점적 정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다 제32항(비밀 유지)에 따라 취급된다.

제 18.23 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합의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또는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가진 그 밖의 모든 권한 있는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의 도움을 추구할 수 있다.

제 18.24 조 분쟁해결

당사국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 21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8.2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적법절차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그 사안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로, 그 절차의 당사자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지지 또는 방어하고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그 결정이 그러한 정보 또는 증거에 근거함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은 강제적인 군 복무, 특정한 시민의 의무, 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도소 노역 그리고 비상시에 요구된 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노동법이란 제18.2조에서 규정된 노동원칙과 권리를 시행하고 보호하는 법,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제를 말한다.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이란 양 당사국에서 동일한 일반적 대상을 권리, 보호 또는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노동법을 말한다. 그렇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법이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이란 자연인, 기업 또는 사용자나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부속서 18-가

협력활동

1. 제18.9조에 따라 설치된 NPC는 노동협력활동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역할을 한다.
2.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한다.
 - 가. 노동 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마. 국제노동기구선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3. 양 당사국간의 협력활동은 다음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공통관심의 정책사안 및 그것의 효과적인 적용: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고용의 비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직업상 보건 및 안전, 작업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근로기준, 근로혜택, 그리고 이주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 관행 및 이행
 - 나. 노사관계: 노사정간 협력 형태 및 분쟁해결
 -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실업지원 프로그램
 - 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능력개발과 평생학습 및 훈련
 - 마.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방법론 및 경험

바. 노동통계,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4. 제3항에 따라 합의된 협력활동은 다음을 통하여 시행될 수 있다.

가. 연수와 그 밖의 기술교류를 포함하는 대표단, 전문 직업인 및 전문가교류

나. 발간물 및 연구 논문을 포함한 정보, 표준, 규정 및 절차 그리고 최적 관행의 교환

다. 공동회의 · 세미나 · 워크숍 · 회의 · 훈련 · 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라. 합작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마.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 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

바. 노동관련 사안에 대하여 ILO 와 같은 국제적인 포럼 내에서의 협력,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교류 또는 협력

5.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견해를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부속서 18 - 나 공중의견제출제도

NPC에 공중의견을 제출하는 인의 권리와 관련되는 각 당사국의 공중의견제출 절차는 특히 다음을 명시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의견의 수락과 관련된 요건

- 1)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내 재판소에서 구제가 추구되었고 그러한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내 재판소의 절차가 제18.5조에 합치하여야 한다.
- 2)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 사안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 3) 사소하거나, 경솔하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의견의 제출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4) 의견은 이전에 제출된 의견과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이전의 의견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롭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

나. 다른 쪽 당사국과의 조기 협의가 있을 것

다. 최종보고서는 제출자,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것, 그리고

라. 의견에 대하여 검토할 것임을 공표하는 경우와, 최종 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것

부속서 18-다

의무의 범위

1. 이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캐나다는 그 관할 지역내의 사안에 관하여 캐나다가 구속될 주의 목록과 함께 서면 선언문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제공한다. 선언문은 한국에 전달 시 효력을 발생하며, 캐나다 내의 내부적 권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캐나다는 자국의 선언문을 수정하기 6개월 이전에 한국에 통지한다.
2. 캐나다는 제1항에 따른 선언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 정부의 요청으로, 또는 그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3절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3. 한국은 그 주가 제1항에 따른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주의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제3절에 따른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는, 제3항의 적용범위내의 사안에 관하여 제18.14조에 따라 검토패널이 소집된 날보다 더 늦지 아니하게, 제18.18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검토 패널의 권고 또는 부속서18-마에 따라 결정된 캐나다와 관련한 금전적 평가가 캐나다의 군주로서 여왕에게 송부되는지 또는 관련 주의 군주로서 여왕에게 송부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한국에 통지한다.
5. 캐나다는 이 장이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부속서 18-라

검토판널과 관련된 절차

검토판널선정절차

1.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각 당사국은 검토판널 설치 요청의 접수시부터 20일 이내에 한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이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인 자격을 갖춘 개인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다. 다음의 절차는 의장의 선정에 적용된다.

- 1)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게 의장이 될 자격이 있는 3명의 이름을 제공한다. 그 이름들은 검토판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제공된다.
- 2) 요청 당사국은 그 개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이름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그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에게 의장이 될 자격을 갖춘 3명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이름들은 1목에 따라 이름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또는 검토판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후 25일 이내에 제공된다. 그리고
- 3)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2목에 따른 이름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3명의 개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에게 25일 이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즉시 요청한다.

절차규칙

2. 제21.8조(절차규칙)에 따른 절차규칙은 이 장에 따른 검토패널절차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검토패널절차 각각을 위한 별도 예산에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그 예산에 균등하게 기여한다.

패널 위임사항

4. 양 당사국이 검토패널이 소집된 후 30 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 1 절 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18.17 조제 1 항 및 제 18.17 조제 2 항에 따라 조사, 판정 및 권고함”

부속서 18-마

금전적 평가액

1. 검토패널은 제18.18조제4항에 따른 요청이 전달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된다. 검토패널은 재소집 이후 90일 이내에 조치계획의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또는 불이행이 달리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부정적 판정을 내리는 경우 및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패널은 제18.14조제1항의 의미 내에서의 불이행 또는 조치계획의 불이행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무역효과에 동등한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산정하고, 검토패널은 다음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검토패널의 최종 보고서 이후 그 당사국이 그러한 불이행 시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울인 선의의 노력, 그 당사국이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진실된 이유와 같은 감경요인, 그리고
 - 나. 그 당사국이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의 만연성 및 지속 기간과 같은 가중요인
3. 금전적 평가액은 협의회에 의하여 지정된 이자가 붙는 기금에 지불되며 협의회의 지시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된다.
4. 제2항에 따라 검토패널이 금전적 평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90일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제소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금전적 평가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금전적 평가액은 요청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후 120일부터 시작하여 양 당사국의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검토패널 결정일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불된다.
5. 검토의 대상이었던 당사국이 불이행을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검토패널은 그 통보시부터 60일 이내에 재소집되고 그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캐나다에서 금전적 평가의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은 캐나다가 제4항에 따른 통보 후 180일 이내에 그 통보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상기 제2항에 따른 검토패널 판정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나. 검토패널의 판정은, 제출시,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법원의 명령이 된다.
- 다. 한국은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 집행을 위하여, 그 법원에 부속서 18-다의 제4항에 따라 검토패널의 판정이 송부된 캐나다의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라.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는 캐나다에서 약식절차방식으로 실시된다. 다만, 그 법원이 검토패널 판정의 사실 또는 해석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그 판정을 내린 검토패널에 회부하고 그 검토패널의 결정은 법원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 마.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은 국내법에 따른 재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바.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명령은 재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한국은 자국영역에서 금전적 평가의 집행을 규정한다.

제 19 장

투명성

제 19.1 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 19.2 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최대한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조치를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제 19.3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9.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가호에 언급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될 것

제 19.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 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 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제2 항나호에 언급된 결정이 문제가 된 행정조치와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이행되 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19.5 조 **투명성 제고에 관한 협력**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자·지 역·다자 포럼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 19.6 조 **상품 및 서비스의 비차별적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정책**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 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19.7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 20 장 제도 규정 및 행정

제 20.1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 나. 이 협정의 일반적인 기능을 검토한다.
 -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정교화를 감독한다.
 - 라.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마. 부속서 20-가에 기재된 것들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 바. 제21장(분쟁해결)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사.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 가.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 및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재판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이 협정과 관련한 해석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나. 비정부 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 및 부속서 1-가(다자간 환경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마. 분쟁해결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4. 제 3 항라호에 언급된 개정은 국내적으로 필요한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는 공동위원회가 승인하는 권한에 따라 작업한다.

6. 공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정한다.

7.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으로 개최된다.

8.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제 20.2 조 협정 조정자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협정 조정자(이하 “조정자” 라 한다)를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협정 조정자는

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나. 공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설치를 공동위원회에 권고한다.

다.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다.

라.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통보 및 정보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그리고

마.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대로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조정자는 필요시 회합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조정자 특별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그 요청 접수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속서 20-가
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

1. 설치된 위원회는
 - 가. 상품무역위원회
 - 나.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
 -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 라.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
 - 마. 무역구제위원회
 - 바. 금융서비스위원회
 - 사. 정부조달 위원회
 - 아. 지식재산 위원회, 그리고
 - 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2. 설치된 소위원회는
 - 가.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그리고
 - 나. 자동차제품무역소위원회
3. 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될 수 있는 작업반은
건축 제품 및 관련 조립에 관한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작업반
4. 설치된 그 밖의 기구는
 - 가. 환경협의회, 그리고
 - 나. 장관급 노동 협의회

부속서 20-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캐나다의 이익,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때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모든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제 21 장 분쟁해결

제 1 절 분쟁해결

제 21.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1.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의 분쟁해결 규정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다. 또는
- 다. 부속서 21-가의 의미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한다.

제 21.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한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통상 협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어느 분쟁해결절차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제1.3조(다자간 환경협정과 관계)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그 사안이 이 협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이후로는 오직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1.4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자동차상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을,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부속서 2-다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상품 무역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행된 협의를 통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5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부패성 제품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 또는 독점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상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1.5 조 주선, 조정 및 중재

1. 양 당사국은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을 취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2.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수립된 절차는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4.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연관된 절차는 비밀로 하며,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1.6 조 패널의 설치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를 이용함으로써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 (a)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35일, 또는
 - (b) 제21.4조제5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서면 통보 접수시 설치된다.

2. 제소 당사국은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을 적시하고,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を提供한다.

제 21.7 조 패널 구성

1. 이 절에서 “접수일”이란 한쪽 당사국의 제21.6조제1항에 언급된 패널 설치를 위한 서면통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날을 말한다.
2.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각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패널위원 1명을 임명하고, 패널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역할을 수행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한 후보자를 4명까지 추천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자국의 패널위원 임명과 의장 역할을 수행할 추천된 후보자를 통보한다.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제 3 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5. 양 당사국은 접수일 후 60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5 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의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이 기간 내에 양 당사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7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추가적인 4 일 이내에,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의장이 선정된다.

6.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30 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 일 이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4 항에 따라 임명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양 당사국은 대체자 임명에 신속하게 합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전에 의장으로 추천된 나머지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에 의한 선정을 통하여 임명된다. 남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제 3 항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추천하고, 의장은 그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그러한 경우,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에 시작하여 대체자가 선정된 날로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이 중단된다.

7. 각 패널위원은

가. 국제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 한다.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서도 고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부속서 21-나에 규정된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8. 패널위원이 제7항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속서 21-나에 규정된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당사국이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를 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된다.

제 21.8 조 절차규칙

1. 이 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은 부속서 21-다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보충적인 절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절차 규칙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나. 사호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그러한 정보가 패널에 제출된 후 언제라도 대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c) 각 당사국이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d) 사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e)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할겠다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비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패널이 고려할 것

바. 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입장 및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사. 비밀정보⁹⁰의 보호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서면 통보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21.9조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는 것”

⁹⁰ 제22.2조(국가 안보) 및 제22.5조(정보 공개)에 따라 규정된 대로, 패널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규정에서 확인되는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소 당사국이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5.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된 모든 조치의 부정적 효과의 정도 또는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정도에 대하여 패널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6.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패널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7. 패널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다.
8. 제21.9조의 의미상의 패널의 조사·판정 및 권고는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한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패널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 절에 따른 패널 절차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21.9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패널은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1조, 제 32조, 제 33조를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해석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패널에 제출된 정보와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3명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패널은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당사국의 이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나.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나 침해가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패널 위임사항에 포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4. 패널은 최초 보고서에 조사 결과와 판정의 기본적 근거를 포함한다.

5.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최초 보고서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다.

6.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후,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자신의 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는

다.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7. 패널은 최초 보고서 제출시부터 30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7 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8. 제 21.8 조 및 부속서 21-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최초 보고서는 비밀로 한다.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비밀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그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날부터 15 일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공표될 수 있다.

제 21.10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제거하거나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양 당사국이 분쟁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를 제거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대신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제 21.11 조 불이행-혜택의 정지

1. 제소 당사국의 보상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제21.10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보상이 제21.10조제3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요청되지 아니한 경우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로 30일,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이 경과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또는

나. 각 경우에 맞게, 가호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후에 그 정지를 이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경우,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부속서 21-가의 의미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 패널이 그 사안에 대하여 판정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제1항가호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제공한 서면통보의 수령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패널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래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패널이 그 설치일부터, 또는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대체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25일 이내에 단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예외로,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하여 채택되는 절차와 발행되는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은 이 항에 따른 패널 판정에 합치하는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기 위하여 철회 또는 수정된 때까지만,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때까지만 제소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 21.12 조

이행 검토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의 준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그 조치의 이 협정과 합치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서 그 사안을 분쟁해결 패널(이하 “이행패널”이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접수되면 이행 패널이 설치된다.⁹¹ 이행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그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적시하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 패널은, 가능한 한도에서,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이행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 및 발행된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제21.11조에 따라 혜택을 정지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절차 동안 그러한 혜택의 정지를 지속할 수 있다. 이행패널은 최종보고서에 그러한 정지가 종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된 혜택의 규모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1.13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로부터의 사안 회부

1. 한쪽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절차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한쪽 당사국의 견해를 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대응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⁹¹ “존재 또는 ~와의 합치성” 과 “~의 준수를 위해 취하여진 조치” 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이행패널은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상의 관련 있는 법리를 고려한다.

3.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1.14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 21.15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한도에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중재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3. 당사국이 「뉴욕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1-가 무효화 및 침해

1.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의 의미상, 무효화되거나 침해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 제1절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7 장(무역구제)

나. 제 9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다. 제 14 장(정부조달)

이 장 제1절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에 따른 관련 법리를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제 22.1 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7 장(무역구제)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규정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하는 한도에서, 제 1 항 가호, 또는

나. 제 1 항 나호

이에 더하여, 당사국은 제 22.6 조(문화 산업)에 따라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서 제 1 항 가호, 나호 및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나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패널위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나. **후보자**란 제21.7조에 따라 패널의 구성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고려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 마.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그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은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만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5.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 3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모든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패널위원의 임무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0.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한쪽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2. 패널위원은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패널위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패널위원의 의무

15. 모든 전임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 유지

16.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련되거나 절차 동안 획득된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7. 패널위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다 모범 절차 규칙

적용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절차 규칙은 이 장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에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후보인은 제21.7조에 따라 패널 구성원으로서의 선정을 고려 중인 자연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1.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공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에 의하여 이 규칙의 목적상 휴일로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1.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의 정부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3.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절차의 운영

4.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조직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한쪽 당사국은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 및 각 패널위원에게 제공한다. 그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제출된다.

8.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국 또는 캐나다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의 개시

10.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라 패널위원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3 명의 패널위원의 임명시부터 7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하거나 접촉한다.

11. 양 당사국은 합의된 패널 위임사항을 3 명의 패널위원의 임명으로부터 2 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최초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3 명의 패널위원 임명 후 20 일 이내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 입장의 전달일 후 20 일 이내에 반박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 절차의 수행

13.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보조인이 그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6.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8. 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의 이유와 필요한 기간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심리

19.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과 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이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0.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실시되며, 첫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21.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2.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3. 다음의 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및 법원서기,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문인만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4.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 또는 발언을 할 사람 및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단을 패널에 전달한다.

25.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26.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7.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8. 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심리 후 가능한 조속히 양 당사국에게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29. 각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충적인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의

30.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든지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패널에 의하여 제시되는 모든 질의서 사본을 받는다.

31. 한쪽 당사국은 패널 질의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국에게 전달일부터 5 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비밀 유지

32. 제25항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 양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그 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패널에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또는 제출일 중 더 늦은 날 후 15일 이내에 그 입장서에 포함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33.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하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패널 또는 개인 패널위원과의 사소통하지 아니한다.

34. 제13항을 조건으로, 패널의 어떠한 구성원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외부조언자의 서면 입장

35.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 입장은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하고, 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야 한다.

36. 그 서면 입장은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한 그 제출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해야만 한다.

37. 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5항 및 제36항에 합치하는 모든 서면 입장을 판정에 목록화한다. 패널은 이러한 서면 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

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5항 및 제36항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서면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긴급사건

38. 제2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번역 및 통역

39.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10항에 언급된 회합 보다 더 늦지 않게 양 당사국은 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0. 양 당사국이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신의 서면 입장을 다른 쪽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국은 구두 입장을 양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41. 패널 판정은 양 당사국이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2. 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43. 당사국은 제40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기한 계산

44. 제9항의 적용을 이유로, 당사국이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과 다른 날에 문서를 접수한 경우,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가 실제로 접수된 날부터 기산된다.

제 22 장

예외

제 22.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표준 관련 조치), 제7장(무역구제) 및 제13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제13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의 가호, 나호 및 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제8장(투자)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투자 간 또는 투자자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다.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 22.2 조

국가 안보

이 협정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무기·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밀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또는 그 밖의 안보 시설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그 밖의 제품·재료·서비스 및 기술의 밀거래 및 거래와 관련되는 조치
 - 2) 전시에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 3)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 폭발장치의 비확산과 관련된 국가 정책 또는 국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또는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 22.3 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은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간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 및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8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및 제2.9조(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
가. 제9.2조(내국민 대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5조(국경 간 무역)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는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최혜국 대우), 제9.2조(내국민 대우) 및 제9.3조(최혜국 대우) 및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 4 항은

- 가.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나.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그 개정 시점에 제4항에 언급된 조들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 바. 공평하고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과세 체계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거나 과세의 기피 또는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 양 당사국의 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8.8조(이행요건)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7. 제8.11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이 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 투자자는 제8.11조(수용 및 보상)를 제8.18조(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또는 제8.19조(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에 따른 청구의 근거로 원용하지 아니한다. 투자자는 제8.20조(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정 당국에 회부한다. 지정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

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8.23조(중재 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8. 이 협정은 공개될 경우 납세자의 세무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당사국 법에 반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4 조

송금

1.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은 한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⁹²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 캐나다와 사전에 조율할 것이다.

나. 물수적이지 아니할 것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라. 규제 자산⁹³에 관하여 한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⁹² 한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캐나다 투자자에 의하여 한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마. 캐나다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사. 부속서 I·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한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 8.3조, 제9.2조,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 제9.3조, 제10.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

아.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러한 조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⁹⁴, 그리고

2) 한국이 그러한 조치를 캐나다와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⁹⁴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제 22.5 조

정보 공개

1. 이 협정은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각료급 정부 행정기관의 심의 및 정책 결정 과정, 개인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인 고객에 대한 금융 사무 및 계좌를 보호하는 당사국의 법에 반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과정 중에 자국 경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특별 취급을 받거나 공개로부터 달리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의 경쟁 당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6 조

문화 산업

이 협정은 제1.6조(문화 협력) 및 제2.3조(관세철폐)상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7 조

세계무역기구 의무면제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중복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도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한 의무면제 결정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는 이 협정에 또한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합치 조치를 이

유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제8장(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제2절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2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경쟁위원회,
-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문화 산업이란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 가.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을 인쇄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판,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단순한 인쇄 또는 조판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함
-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전시
- 라. 음악을 인쇄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 배포 또는 판매
- 마. 일반 대중의 직접 수신을 의도하여 전송되는 무선 통신

바. 라디오·텔레비전 및 케이블 방송사업, 또는

사. 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지정 당국이란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말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재정부 조세정책 담당 차관보를 말한다.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분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란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50조 및 제62조의 범위내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경쟁법」 제29절의 범위내의, 또는 모든 승계 규정상의, 정보를 말한다.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 및 조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1.8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서 정의된 “관세”, 또는

나. 그 정의에 대한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

부속서 22-가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8-나(수용)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 라. 그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3 장

최종규정

제 23.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3.2 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23.3 조

유보

이 협정은 일방적인 유보나 일방적인 해석적 선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 23.4 조

발효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7조(발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두 번째 통보일로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23.5 조

존속 및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고 하는 의도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종료된다.

제 23.6 조

정본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한국어본, 영어본 및 불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 년 9 월 22 일 오타와에서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캐나다를 위하여

부속서 I

기존의 조치에 대한 유보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라. 제 8.8 조(이행요건)
 -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 8.9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조치**⁹⁵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 8.9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8.9 조제 1 항다호 및 제 9.6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9.2 조(내국민 대우), 제 9.3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5 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⁹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8.9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 9.2 조)와 현지주재(제 9.5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1.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2012 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24616 호, 2013.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3 조(국토교통부령 제 10 호, 2013.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782 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 조(별표 1)(대통령령 제 24417 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2 조(안전행정부령 제 3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법률 제 11919 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 조부터 제 63 조까지, 제 65 조의
2 및 제 65 조의 3(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3.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 20 조, 제 44 조, 제 44 조의 2, 제 45 조, 제 45 조의 2 및 제 53 조(법률 제 11929 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8 조, 제 83 조, 제 87 조 및 제 111 조(국토교통부령 제 24 호, 2013.9.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 16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4.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업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5 조(대통령령 제 24519 호, 2013.4.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7 조 및 제 7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131 호, 2010.3.3) 주세법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법률 제 11873 호, 2013.6.7) 주세법 시행령 제 9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2-68 호, 2012.10.1)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3-15 호, 2013.4.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아니한다. 또는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6.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법률 제 11860 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보건복지부령 제 193 호, 2013.4.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 인은 한국에서 1 개의 영업소를 초과하여 개설하지 아니한다.

7.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업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약사법 제 42 조 및 제 45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 31 조의 2(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3.2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6 조(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3.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 4 조 및 제 12 조(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63 호, 2013.4.18) 의료기기법 제 15 조(법률 제 12107 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0 조(총리령 제 1016 호,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 조(법률 제 11508 호, 2012.10.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5 조(총리령 제 1010 호, 2013.3.23) 식품위생법 제 24 조, 제 36 조 및 제 37 조(법률 제 11819 호, 2013.5.2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3 조 및 제 24 조(대통령령 제 24800 호, 2013.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3 조 및 제 36 조(별표 14)(총리령 제 1041 호, 2013.1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제 6 조의 2(법률 제 11984 호, 2013.7.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약사법 제 2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2074 호,

약사법 제 2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 개 이상의 약국을 설치할 수 없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9.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 5 조, 제 6 조 및 제 12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 9 조(법률 제 12025 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 8 조(법률 제 12023 호, 2013.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6 조 및 제 3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 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 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 년 6 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 12345 호, 2014.1.28)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 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1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궤도운송법 제 4 조(법률 제 11647 호, 2013.3.2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 3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해운법 제 24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2092 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19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
(해양수산부령 제 1 호, 2013.3.24)
도선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 3 조 및 제 31 조(법률 제 11756 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기업이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항공법 제 2 조, 제 3 조, 제 6 조, 제 112 조, 제 113 조, 제 114 조, 제 129 조, 제 132 조 및 제 135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2, 제 15 조, 제 278 조, 제 278 조의 3, 제 296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국토 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는 당해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부정기 항공운송 서비스는 지점 간 운항 서비스, 관광비행 서비스 및 전세 비행기 서비스를 포함한다.

13.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사용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조치

항공법 제 3 조, 제 6 조 및 제 134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투자

항공기 사용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다.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및 관측,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그리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를 포함한다.

14.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6 조 및 제 37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73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주차장법 제 12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 36 조(법률 제 12045 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제 139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306 조(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 제 24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1933 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 조, 제 34 조 및 제 41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19 호, 2013.7.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442 호, 2013.3.23) 제 3 조에 따라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6.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21 조 및 제 87 조(법률 제 12035 호, 2013.8.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4 조(법률 제 5385 호, 1997.8.28)

전파법 제 13 조 및 제 20 조(법률 제 11712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된다.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KT 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 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 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 조(법률 제 11866 호, 2013.6.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 조, 제 66 조 및 제 68 조(대통령령 제 23919 호, 2012.6.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 조 및 제 26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 리스 ·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업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2107 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2 조 및 제 24 조(총리령 제 1016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 리스 ·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 및 제 64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법률 제 12091 호, 2013.8.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5 조(법률 제 10524 호, 2011.4.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변호사법 제 4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34 조, 제 45 조, 제 58 조의 6, 제 58 조의 22 및 제 109 조(법률 제 11825 호, 2013.5.28)

법무사법 제 2 조, 제 3 조 및 제 14 조(법률 제 8920 호, 2008.3.21)

공증인법 제 10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1823 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그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6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2.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 5 조, 제 7 조의 2,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법률 제 10321 호, 2010.5.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15 조 및 제 19 조(대통령령 제 24447 호, 2013.3.2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 6 조 및 제 10 조(고용노동부령 제 78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 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3.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변리사법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6 조의 3(법률 제 11962 호, 2013.7.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하지 아니한다.

변리사 1 인은 1 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24.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7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5.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세무사법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제 16 조의 4
및 제 20 조(법률 제 11610 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 97 조(대통령령 제 24824 호,
2013.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50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325 호,
2013.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1 조(대통령령 제 24574 호,
2013.6.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5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323 호,
2013.2.23)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 20 조 및 제 22 조
(국세청 훈령 제 1761 호, 2009.8.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
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
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
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8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6.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관세사법 제 3 조, 제 7 조 및 제 9 조(법률 제 10570 호, 2011.4.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52 조의 4(법률
제 11882 호,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제
19 조의 2 및 제 19 조의 3(대통령령 제 24684 호,
20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8 조, 제 20 조,
제 21 조 및 제 136 조의 8(고용노동부령 제 86 호,
2013.8.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
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
다.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건축사법 제 2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령 제 22 조 및 제 2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3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법률 제 12299 호, 2014.1.21)

기술사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법률 제 11928 호, 2013.7.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제 25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91 조 및 제 108 조(대통령령 제 24390 호, 2013.2.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8 조(국토교통부령 제 4 호, 2013.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4 조 및 제 54 조(법률 제 11943 호, 2013.7.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45 조, 제 46 조 및 제 47 조(대통령령 제 24596 호, 2013.6.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온천법 제 7 조(법률 제 11896 호, 2013.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법률 제 11782 호, 2013.5.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9.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방송법 제 13 조 및 제 73 조(법률 제 12093 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1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4632 호, 2013.6.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되지 아니한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 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30.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구재(제 9.5 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 19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1048 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33 조(대통령령 제 24076 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18 조 및 제 36 조(고용노동부령 제 72 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1668 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대통령령 제 23853 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고용노동부령 제 64 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법
률 제 11690 호, 2013.3.23)

선원법 제 109 조, 제 110 조, 제 112 조, 제 115 조, 제 116 조, 제 117 조, 제 142 조 및 제 14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 5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 년 10 월 29 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32 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 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31.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경비업법 제 3 조 및 제 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4 조(대통령령 제 24419
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3 조(안전행정부령 제 20 호,
2013.10.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서비
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분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3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제 137 조, 제 137 조의 2 및 제 138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304 조 및 제 305 조(국토 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 3 조, 제 4 조, 제 32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2036 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 조(대통령령 제 24847 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 3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1622 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 조의 3(대통령령 제 24665 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 1 조 및 제 2 조(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최소 50 퍼센트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최소 절반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 분의 2 미만을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의 한국의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34.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조의 2 및 제 1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 30 조 및 제 33 조부터 제 38 조까지(법률 제 11770 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

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35.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8 조, 제 32 조 및 제 36 조
(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4 조 및 제 26 조(대
통령령 제 24628 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14 조 및
제 18 조(고용노동부령 제 57 호, 2012.6.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
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의사법 제 17 조,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4 및 제 22 조의 5(법률 제 11354 호, 2012.2.22)

민법 제 32 조(법률 제 11728 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내 사무소를 설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7.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2 조(법률 제 11915 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 조(법률 제 11713 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7(법률 제 11464 호, 2012.6.1)

지하수법 제 29 조의 2(법률 제 11803 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 68 조(법률 제 11750 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 5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0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법률 제 11965 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8 조(대통령령 제 24543 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조치

공연법 제 6 조 및 제 7 조(법률 제 11048 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6 조(대통령령 제 23759 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 4 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 94 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 799 호, 2013.10.1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9.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5, 제 16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및 제 10 조(대통령령 제 24183 호, 2012.11.20)

전파법 제 20 조(법률 제 11712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0.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약사법 제 42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 조(총리령 제 1022
호, 2013.3.23)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41.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 12 조(법률 제 11641 호, 2013.3.22)

축산법 제 30 조 및 제 3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종자산업법 제 142 조(법률 제 11704 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 20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2059 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 14 조 및 제 20 조의 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3-29 호 2013.5.1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9.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4 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2.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¹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7 조(대통령령 제 24697 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02 호, 2013.5.27)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17 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 6-2 조(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3-40 호, 2013.12.4)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¹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 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43.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¹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 11 조(2013.8.9)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¹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

기존의 조치에 대한 유보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의 유보목록은 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캐나다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9.2조(내국민대우)

나. 제8.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대우)

다. 제8.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8.8조(이행요건)

마. 제9.4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9.5조(현지주재)

2.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보된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조치¹는, 표시된 곳에서 **유보내용** 요소에 의해 한정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분류를 제외한 그 유보사항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는 유보가 취하여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8.9조제1항가호 및 제9.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9조제1항다호 및 제9.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의 **유보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캐나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9.2조(내국민 대우), 제9.3조(최혜국 대우), 제9.4조(시장접근) 또는 제9.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는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8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9.2조)와 현지주재(제9.5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9.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9.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는 1991년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77호 임시중양품목분류에 규정된 중양품목분류(CPC)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SIC는 1980년 캐나다 통계청 표준 산업 분류 제4판에 규정된 표준산업분류 번호를 말한다.

부속서 I
캐나다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이행요건 (제 8.8 조)

조치 캐나다 투자법, R.S.C. 1985, c. 28 (1st Supp.)

유보내용 요소 제 8 항부터 제 12 항까지에 의해 한정되는
캐나다 투자규정, SOR/85-611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인이 아닌 자가
다음과 같은 캐나다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투자감독관의
검토를 조건으로 한다.

가. 자산이 5 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직접 인수

나. 자산이 5 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그리고

다. 5 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5 천만 캐나다 달러 사이의 자산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이 해당 거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권이 인수되는 모든 실체들의 자산 가치의 50 퍼센트 초과에 해당되는,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2. 이 유보의 목적상,

“비캐나다인” 은 캐나다인이 아닌 개인, 정부 또는 그의 기관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캐나다인” 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캐나다 내의 정부 또는 그의 기관, 또는 「캐나다 투자법」에 명시된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3. 이에 더하여, 통상적으로는 신고해야 하는, 캐나다 문화유산이나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정된 종류의 사업활동을 하는 신규회사의 구체적인 인수나 설립은, 총독이 공익을 위하여 검토를 승인하는 경우, 검토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 대상인 투자는, 「캐나다 투자법」을 담당하는 장관이 투자가 캐나다에 게 순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될 수 없다. 이 결정은 다음에 요약된 대로 그 법에 명시된 6 개 요소에 따라 이루어 진다.

가. 고용,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부속품·서비스의 사용, 캐나다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여, 캐나다 내 경제활동의 수준과 성격에 대한 투자의 효과

나. 투자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참여 정도와 중요성

다. 캐나다에서의 생산성, 산업효율, 기술개발 및 제품혁신에 대한 투자의 효과

라. 캐나다 내 산업 또는 산업들 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투자의 효과

마. 투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의 정부나 입법기관이 밝힌 산업, 경제 및 문화적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투자와 산업, 경제 및 문화적 국가정책과의 양립가능성, 그리고

바. 투자의 국제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력에 대한 기여

5. 순익 결정을 내릴 때, 장관은, 제안된 인수가 캐나다에 순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신청인이 설명한 계획을, 투자감독관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신청인은 또한 검토 대상인 제안된 인수와 관련하여 장관에게 약정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약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준수를 지시하는 법원명령이나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인정되는 그 밖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6. 상기된 검토 대상이 아닌 캐나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비캐나다인은 투자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캐나다 회사의 총자산가치가 적용 가능한 기준액 이상인 경우, 투자감독관은 「캐나다 투자법」에 정의된 대로 한국 투자자에 의한 그 캐나다 회사의 “지배권 인수”를 검토할 것이다.

8. 제 13 항에 규정된 대로 계산된 더 높은 검토 기준은 문화산업분야의 인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제 8.45 조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투자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인이거나 한국인이 지배하는 실체인 투자자만이 더 높은 검토 기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제 8 항에 명시된 분야 외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캐나다 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11. 제 8.8 조(이행요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투자법」상 투자 인수 검토와 관련하여, 한국의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양도인과 관계되는 캐나다 국내에 있는 국민이나 기업에게 양도하기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12. 이 유보사항 제 11 항에 규정된 기술이전과 관련된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제외하고, 제 8.8 조(이행요건)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에 적용된다. 제 8.8 조(이행요건)는, 캐나다에서의 생산의 입지, 연구·개발 수행, 근로자 고용 또는 훈련, 또는 특정 설비의 건설 또는 확장을 위하여,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모든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한국 투자자를 위한 검토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액은 2014 년에 354 백만 캐나다 달러이다. 그 후 매년 1 월 장관이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그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연조정 =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

----- x 전년도 결정금액

시가기준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가장 최근의 연속 4 분기 동안의 시가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의 평균을 의미한다.

시가기준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은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해 전년의 상응하는 기간의 연속 4 분기 시가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의 평균을 의미한다.

상기에 언급된 목적 상, 금액은 가장 가까운 백만 달러로 반올림될 것이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유보내용 요소에 규정됨.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들에 의한 기업 또는 그들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는 고위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부과나 이 유보에 명시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기존의 조치이다. 그리고

- 나. “공기업”은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조치 캐나다 회사법, R.S.C. 1985, c. C-44
캐나다 회사규정, 2001, SOR/2001-512
캐나다 협동조합법, S.C. 1998, c.1
캐나다 협동조합규정, SOR/99-256

유보내용 투자

1. 회사는 연방 단위에서 설립된 회사 주식의 발행·양도 및 소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캐나다인의 소유 또는 지배가 면허, 허가, 보조금, 지급금 또는 그 밖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회사가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특정 법에 따른 캐나다인 소유권 또는 지배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캐나다인 소유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합의 없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고 공개시장에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캐나다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인이 되거나, 금융 중개업자 및 캐나다인의 소유 또는 지배가 면허, 허가, 보조금, 지급금 및 그 밖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투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캐나다인 소유요건을 협동조합이

충족하도록 허락하기 위하여서, 협동조합의 투자주식이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발행되거나 양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을 「캐나다 협동조합법」은 규정한다. 투자지분의 소유나 지배가 협동조합이 캐나다인 소유권이나 지배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캐나다 협동조합법」은 소유 투자지분 수의 제한 또는 투자지분의 소유권의 금지를 규정한다.

3. 본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인은 「캐나다 회사 규정, 2001」이나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 정의된 “캐나다인”을 의미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캐나다 회사법, R.S.C. 1985, c. C-44
캐나다 회사규정, 2001, SOR/2001-512
캐나다 협동조합법, S.C. 1998, c.1
캐나다 협동조합규정, SOR/99-256
캐나다 법인법, R.S.C. 1970, c. C-32
특정회사 설립에 관한 의회특별법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회사법」은 대부분의 연방 단위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사의 25 퍼센트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그런 회사의 이사가 4 명 미만인 경우, 최소 1 명의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분야의 회사의 경우 단순 과반수의 캐나다 거주자 이사가 요구된다: 우라늄 광업, 서적출판 또는 유통, 서적판매가 회사 사업의 주요부분인 경우 서적판매, 그리고 영화 또는 영상 유통. 유사하게, 「의회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최소 캐나다인 소유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는 과반수의 캐나다 거주자 이사를 보유하도록 요구된다.

2. 「캐나다 회사법」의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는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등급에 속하는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1년을 초과하여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개인을 의미한다.

3.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캐나다에서의 수익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총수익의 5 퍼센트 미만인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이사가 이사의 1/3 보다 많을 필요는 없다.

4. 「캐나다 협동조합법」에서는 이사의 2/3 이상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협동조합 이사의 최소 25 퍼센트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협동조합 이사가 3명에 불과한 경우, 최소 1 명의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5. 「캐나다 협동조합법」의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개인과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으로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서 정의된다: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서 규정된 등급에 속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1년을 초과하여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자

6. 「캐나다 법인법」 제 4 장에 따라, 특별법 상 회사의 선출 이사의 단순 과반수는 캐나다 거주자이고 영연방 국가 시민권자여야 한다. 본 요건은 「의회 특별법」에 의

하여 1869 년 6 월 22 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합작주식회사에 적용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시민권법, R.S.C. 1985, c. C-29
외국인토지소유규정, SOR/79-416

유보내용 투자

1. 「외국인토지소유규정」은 「시민권법」 및 「농업 및 휴양용 토지소유법」, RSA 1980, c. A-9 에 따라 제정된다. 앨버타에서,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는, 합하여 최대 20 에이커를 포함하는 최대 2 필지로 구성되는 규제대상 토지에 대한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자격이 없는 인은 다음의 인을 의미한다.

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연인

나.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다. 캐나다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규제대상 토지는 앨버타주의 토지를 의미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앨버타 정부 토지

나. 도시, 읍, 신도시, 마을 또는 하계마을 내의 토지, 그리고

다. 광산 또는 광물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에어캐나다 공공참여법, R.S.C. 1985, c. 35(4th Supp.)
캐네디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매각승인법, S.C. 1986, c. 20
엘도라도 뉴클리어 유한책임회사 구조조정 및 매각법, S.C. 1988, c. 41
노르디온 및 쉐라트로닉스 매각승인법, S.C. 1990, c. 4

유보내용 투자

1.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들”은 각 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특정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제한은 개별주주들에게 적용되며, 다른 회사의 경우 제한은 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캐나다인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퍼센트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은 또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에어캐나다: 합하여 25퍼센트,
- 카메코 유한책임회사(이전의 엘도라도 뉴클리어 유한책임회사): 비거주자 자연인 1명당 15퍼센트, 합하여 25퍼센트,

- 노르디온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합하여 25퍼센트
- 쉐라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 합하여 49퍼센트, 그리고
- 캐나다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합하여 25퍼센트

2. 이 유보의 목적상, “비거주자” 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캐나다 시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 나. 캐나다 밖에서 설립되거나, 형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회사
-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부기관 또는 외국 국가 또는 그러한 정부를 대신하여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자
-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나 실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 마. 신탁,
 - 1) 과반수가 캐나다 거주자인 자연인의 이익을 위한 연금기금의 운영을 위한 신탁을 제외하고, 나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인 또는 실체에 의해 설립된 신탁, 또는

2)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인 또는
실체가 실질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
과하여 소유하는 신탁, 그리고

바. 마호에 언급된 신탁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수출입허가법, R.S.C. 1985, c. E-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연인,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캐나다 지점만이 「수출입허가법」에 따른 통제를 조건으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허가 또는 통과 승인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관세사

산업분류 SIC 7794 관세사
CPC 749 기타 지원 및 보조 운송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9.2 조)
현지주재 (제 9.5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관세법, R.S.C. 1985, c. 1 (2nd Supp.)
관세사면허규정, SOR/86-106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에서 면허받은 관세사가 되기 위하여는

- 가. 자연인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 나. 회사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 다. 파트너십은 캐나다 국민 또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의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인 회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면세점
산업분류	SIC 65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소매점 (면세점에 한함) CPC 631, 632 (면세점에 한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관세법, R.S.C. 1985, c.1 (2nd Supp.) 면세점규정, SOR/86-107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캐나다 국경 통과 지역에서 면허받은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하여, 자연인은 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나.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다. 캐나다에 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라. 면허 신청 연도 전년에 최소 183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2. 캐나다 국경 통과 지역에서 면허받은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는 가. 캐나다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캐나다 국민이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문화재 수출입과 관련된 검사 서비스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CPC 96321 유적지 및 건물을 제외한 박물관 서비스(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CPC 8790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사업 서비스 (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문화재 수출입법, R.S.C.1985, c. C-5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캐나다 거주자나 캐나다에 있는 기관만이 「문화재 수출입법」 목적 상 문화재 전문검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기관은 공적으로 소유되고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되며, 교육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대상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이
나, 캐나다에 본사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사업과 관련
하여 고용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무소를 캐
나다에 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특허대리인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특허대리점에 한함) CPC 8921 특허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특허법, R.S.C. 1985, c. P-4 특허규칙, SOR/96-4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특허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고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상표대리인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상표대리점에 한함) CPC 8922 상표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상표법, R.S.C. 1985, c.T-13 상표규정, SOR/96-195; SOR/2007-91, s.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상표청에서 상표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상표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고 상표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캐나다 석유자원법, R.S.C. 1985, c.36 (2nd Supp.) 영토토지법, R.S.C. 1985, c.T-7 연방부동산법, S.C. 1991, c.50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 석유자원협약 실행법, S.C. 1988, c.28
유보내용	투자

1. 이 유보는 적용 가능한 조치에 정의된 대로 “국경 지대” 및 “연안지역” (주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발급되는 생산면허에 적용된다.

2. 석유 및 가스 생산면허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 S.C. 1992, c.35 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라,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보존법, R.S.C. 1985, c. O-7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 석유자원협약 실행법, S.C. 1988, c. 28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법, 1998, c.5, s.20 및 석유 및 가스법, RSY 2002, c.162 를 포함하여,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조치 구 노스웨스트 준주의 승계 준주로서 누나부트에 적용되거나 그에 의해 채택된 실행조치를 포함하여,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조치 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자원협약 실행조치

1.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따라, “복지계획”은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을 이행하도록 승인받기 위하여 장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 “복지계획”은 캐나다인의 고용 및 경쟁을 통하여 복지계획에 기재된 제안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평한 기회를 캐나다 제조사, 컨설턴트, 계약자 및 서비스회사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의해 고려되는 복지계획은, 혜택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가 훈련 및 취업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갖거나 복지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에 사용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관이 신청자에게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4.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에 계속되는 규정은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 협약」을 실행하는 법에 포함된다.
5.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에 계속되는 규정은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협약」 그리고 「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자원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법이나 규정에 포함될 것이다. 이 유보의 목적상, 이러한 협약들은 일단 체결되면 기존의 조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6.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석유자원협약 실행법」 및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은 복지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계획이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가. 계획을 제출하는 회사나 기타 기구는, 연안 지역에서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주에 적절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사무소를 설립한다.

나. 주에서 이행될 연구·개발 및 주에서 제공될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지출을 한다.

다. 주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정시가, 품질, 납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 이러한 법에 따라 복지계획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혜택 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이 소유하는 회사나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복지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나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복지계획에 포함되도록 또한 요구할 수 있다.

8. 또한, 캐나다는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개발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캐나다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을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하이버니아 개발사업법, S.C. 1990, c.41

유보내용 투자

1. 「하이버니아 개발사업법」에 따라, 캐나다와 하이버니아 사업소유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사업소유주가 캐나다 및 뉴펀들랜드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계획”의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및 뉴펀들랜드의 특정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복지계획”은 부속서 I의 캐나다 유보목록, I-CA-19 쪽부터 21쪽까지에 자세히 설명된다.

2. 또한, 캐나다는 하이버니아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캐나다 국민이나 기업에게 이전하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우라늄

산업분류 SIC 0616 우라늄광산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조치 캐나다 투자법, R.S.C. 1985, c.28 (1st Supp.)
캐나다 투자규정, SOR/85-611
우라늄 광업분야 비거주자 소유권 정책, 1987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투자법」에 정의된 대로 “비캐나다인”의 우라늄광업권 소유권은 최초생산단계에서 49퍼센트로 제한된다. 광업권이 「캐나다 투자법」에서 정의된대로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2. 총독의 승인을 조건으로, 광업권 소유에 있어서 캐나다인 참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정책으로부터의 면제가 허용된다. 1987년 12월 23일 전에 이행되고, 허용된 소유권 수준을 초과한, 비캐나다인에 의한 광업권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비캐나다인에 의한 소유권의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전문직, 기술 및 특화 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2 감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은행법, S.C. 1991, c.46
보험회사법, S.C. 1991, c.47
신용협동조합법, S.C. 1991, c.48
신탁 및 대부회사법, S.C. 1991, c.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은행은 은행의 감사로 회계 법인을 선정하도록 요구된다. 회계 법인은 「은행법」에 규정된 대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되는 자격요건 중에는, 법인의 2 명 이상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과, 법인과 은행에 의해 감사를 수행하도록 공동으로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이 포함된다.

2.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 또는 대부회사는 자연인이거나 회계 법인인 감사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관의 감사인은 「보험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신탁 및 대부회사법」에 규정된 대로, 각 경우에 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인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감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요구되는 자격 중에는, 감사인으로 임명된 인이 캐나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이 있다. 회계 법인이 이러한 금융 기관의 감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법인과 금융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73 항공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아래 유보내용 에 규정된 대로, 특수항공서비스 CPC 7512 쿠리어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3 조)
조치	캐나다 운송법, S.C. 1996, c.10 항공법, R.S.C. 1985, c. A-2 캐나다 항공규정, SOR/96-433: 제 2 장, 제 2 부 “항공기 표시 및 등록” 제 4 장 “직원 면허 및 훈련” , 그리고 제 7 장 “상업 항공서비스”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 항공법」은 제 55 절에서 “캐나다인” 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다.

“... ‘캐나다인’ 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의 의미 내 영주권자, 캐나다 정부 또는 그러한 정부의 대리인,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며, 최소

75 퍼센트 또는 총독이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그보다 적은 퍼센티지의 의결권있는 지분이 캐나다인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되는 회사나 그 밖의 실체를 의미한다...”

「항공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은 「캐나다 운송법」에 따른 “캐나다인”의 정의를 참조방식에 의하여 통합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업 항공서비스의 캐나다인 운영자가 캐나다 등록 항공기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정은 캐나다 항공 운전자 증명서를 취득하고 “캐나다의” 항공기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운영자가 캐나다인일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인”만이 다음과 같은 상업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가. “국내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들 간 또는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또는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에 있지 아니한 지점 간의, 항공서비스)
- 나. 기존의 또는 미래의 항공서비스협정에 따라 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항공사에게 유보된 경우, “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의 지점 간의 정기 항공서비스)
- 다. 「캐나다 운송법」에 따라 부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항공사에게 유보된 경우, “부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의 지점 간의 부정기 항공서비스)
- 라. “특수항공서비스” (항공지도제작, 항공측량, 항공촬영, 산불관리, 화재진압, 항공광고,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

콥터를 이용한 벌채, 항공 순찰, 항공 관측, 비행 훈련, 항공 관광 및 항공작물살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외국인은 캐나다 등록 항공기의 등록된 소유주가 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캐나다 항공규정」에 추가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나 캐나다인 소유권 및 지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항공기 사용의 상당 과반수(최소 60 퍼센트)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인 용도의 항공기만을 등록할 수 있다.

「캐나다 항공규정」은 또한 “비캐나다인”인 회사에 등록된 외국 등록 민간항공기가 12 개월 기간 동안 최대 90 일만 캐나다에 위치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외국 등록 민간 항공기는, 민간운항증명서를 요구하는 캐나다 등록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용도로 제한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않음. 제 9.12 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R.S.C. 1985, c. A-2 캐나다 항공규정, SOR/96-433 제 4 장 “직원 면허 및 훈련” 제 5 장 “내공성” 제 6 장 “일반 운항 및 비행 규칙” , 그리고 제 7 장 “상업항공서비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등록 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제품의 내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제품의 수리, 정비 또는 유지보수 활동은 캐나다 항공규제요건을 충족하는 인(즉, 승인된 유지보수 조직 및 항공기 유지보수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된 유지보수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캐나다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 외부에 위치한 인에게는 증명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육상운송
산업분류	SIC 456 트럭운송산업 SIC 4572 도시간 및 지방 운송시스템산업 SIC 4573 통학버스 운영산업 SIC 4574 전세 및 관광버스 서비스산업 CPC 7121 철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정기육상여객운송 CPC 7122 철도를 제외한 그 밖의 부정기육상여객운송 CPC 7123 철도를 제외한 육상화물운송 CPC 7512 쿠리어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S.C. 2001, c. 13 에 의해 개정된 자동차 운송법, R.S.C. 1985, c.29 (3rd Supp.), 캐나다 운송법, S.C. 1996, c. 10 관세, 1997, c. 3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에 등록된 그리고 캐나다에서 제조되거나 관세가 납부된 트럭 또는 버스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만이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 간 트럭 또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 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기타 수상운송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사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그 밖에 선박에서 이행되는 상업해양활동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 해운법, 2001, S.C. 2001, c.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캐나다에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나 해당 선박을 독점 점유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제1항의 의미 내의 영주권자

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다. 선박이 이미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가 활동 중인 경우,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1)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회사

2)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지점의 캐나다내의 직원이나 이사, 또는

3)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관리회사

2. 용선주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선체용선된 외국에서 등록된 선박은 선박의 등록이 등록국에서 정지된 동안은 임차기간동안 캐나다에 등록될 수 있다.

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된 영주권자, 또는

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산업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그 밖에 선박에서 이행되는 상업해양활동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해운법, 2001, S.C. 2001, c. 26 해상인사규정, SOR/2007-1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선장, 항해사, 기술자, 그 밖의 특정 선원은 캐나다 등록 선박에서 근무하기 위한 요건으로 운송부 장관이 부여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CPC 74520 수로안내 및 선박접안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로안내법, R.S.C. 1985, c. P-14 일반 수로안내규정, SOR/2000-132 대서양수로관리국규정, C.R.C., c. 1264 로렌시아 수로관리국규정, C.R.C., c. 1268 오대호 수로안내규정, C.R.C., c. 1266 태평양 수로안내규정, C.R.C., c. 127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부속서 II 의 유보목록, II-CA-11 쪽을 조건으로, 캐나다 영토의 의무수로안내수역에서 수로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지역 수로관리국에서 발행하는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가 요구된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이 이러한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도선사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발급받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면허

나 수로안내증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5 년 내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 수상운송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해운동맹면제법, 1987, R.S.C. 1985, c. 17(3rd Supp.)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해운동맹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영업하는 캐나다 지역에 공동으로 사무소나 대리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운동맹은 운송인들이 수상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요금과 조건을 규제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해양운송인들의 조합이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조치 연안무역법, S.C. 1992, c.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부속서 II 의 유보목록, II-CA-9 쪽에서 10 쪽까지에 규정된 「연안무역법」에 따른 금지는, 미국정부가 소유하는 상품을 캐나다 영토에서 원거리조기경보지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운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미국정부가 소유한 선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통신
하위분야	통신운송망 및 서비스 무선통신
산업분류	CPC 752 통신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조치	통신법, S.C. 1993, c. 38 캐나다 통신사업자 소유권 및 지배규정, SOR/94-667 무선통신법, R.S.C., 1985, c. R-2 무선통신규정, SOR/96-484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다만, 캐나다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20 퍼센트의 직접투자와 33.3 퍼센트의 간접투자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를 의결권 있는 지분의 누적합계 46.7 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실제 캐나다인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다. 기간통신사업자 이사회 의 최소 80 퍼센트가 캐나다인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2. 다음의 예외는 이 유보에 적용된다.

가. 국제해저케이블면허에 따라 영업하는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 까지 허용된다.

나. 캐나다인 서비스공급자는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무선위성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고정위성시스템은 캐나다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의 모든 지점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라. 위성승인에 따라 영업하는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마. 캐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공급으로부터의 소득(계열사로부터의 소득 포함)이 캐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 연간수입 총액의 10 퍼센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모든 주 및 준주의 모든 기존 비합치조치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투명성만의 목적상, 부록 I-가는 지역정부수준에서 유지되는 비합치조치의 예시적, 비구속적 목록을 규정한다.

부록 I-가
캐나다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목록⁹⁸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u>거주</u>: 서스캐처원, 브리티쉬 컬롬비아,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앳라브라도, 매니토바, 앨버타 <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앳라브라도, 매니토바, 온타리오
건축설계서비스	<u>거주</u>: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앳라브라도 <u>회사형태</u>: 프린스 에드워드섬은 비거주자 회사에게 파트너십에서 종사자의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u>거주</u> : 서스캐처원, 브리티쉬 컬롬비아,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앨버타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u>거주</u> : 뉴펀들랜드앳라브라도, 서스캐처원
부동산 서비스	<u>거주</u> : 앨버타, 퀘벡, 유콘, 매니토바, 브리티쉬 컬롬비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

⁹⁸ 본 문서는 투명성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속력이 있는 목록은 아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는 캐나다의 2005년 5월 서비스 수정 조건 제안(TN/S/O/CAN/Rev.1, 12 May 2005)이다.

	편들랜드앤래브라도. <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앨버타
경영컨설팅서비스	<u>거주</u> :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톨 리파이닝 (Toll refining)	<u>이행요건</u> : 온타리오는 비(卑)금속이 캐나다에서 처리 또는 정련될 것을 요구한다.
직업소개 및 파견 서비스	<u>현지주재</u> : 온타리오
조사 및 경비 서비스	<u>고위경영진 및 이사회</u>: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u>현지주재</u>: 온타리오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u>거주</u>: 온타리오, 브리티쉬 콜롬비아,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u>시민권</u>: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니토바 <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u>훈련요건</u>: 온타리오는 토지측량사의 경우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을 주 내에서 완료하도록 요

	구한다.
그 밖의 사업 서비스	<u>거주</u>: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유통 서비스	<u>시민권</u>: 퀘벡. <u>현지주재</u>: 퀘벡,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노바스코샤,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 <u>경제적 수요 심사</u>: 프린스 에드워드섬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u>거주</u>: 앨버타,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 <u>거주/시민권</u>: 앨버타,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퀘벡 <u>현지주재</u>: 온타리오, 퀘벡 <u>조세</u>: 온타리오는 비거주자가 20 퍼센트의 토지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도로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u>경제적 수요 심사</u> : 브리티시 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앳래브라도,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준주
도로운송서비스 (화물운송)	<u>현지주재</u> : 퀘벡 <u>경제적 수요 심사</u> :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앳래브라도

부속서 II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 8.8 조(이행요건)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그리고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3. 제8.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고려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9.2조)와 현지주재(제9.5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9.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9.2조)에 반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투자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2012) 제 4 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제 5 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2. 제 8.18 조 및 제 8.19 조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 8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 1 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 8 장(투자) 제 2 절이 준용되며, 제 8 장(투자) 제 1 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 8 장(투자) 제 2 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 8 장(투자) 제 1 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 1 항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 1 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 10 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이행된다.

제 10.9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 10.2 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분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구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구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분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

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 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 16 조제 2 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 9.6 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 9.5 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분야 모든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라. 철도 운송

10.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42 번째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 8.8 조제 1 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13.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43 번째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14.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쌀, 인삼, 그리고 홍삼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중개서비스

나.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서비스, 그리고

다. 소매서비스

15.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 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쿼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수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내륙수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쌀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
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필요로 함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속
하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대하
여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법에 따
라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
적 권리를 유보한다. 이 배타적 권리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도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그러한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 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3.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구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4.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10 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 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5.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이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20 번째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6.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7.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8.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9.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0.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1.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2.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3.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
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4.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
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5. 분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6.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 승인 · 등록 ·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한국 변호사 · 법무회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 상사연합 ·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
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무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캐나다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
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
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
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 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 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무회사가 한국법무회사와 합작투
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
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
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
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법무회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 내에 있는 법무회사를 말한다.

37.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캐나다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 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1 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공인회계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38.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나. 외국 세무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1)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캐나다 세무법인이 캐나다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 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 1 인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세무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39.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 9.1 조(적용범위)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 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나. 제 10 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한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41.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나.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되며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한국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한 선박
- 2)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3)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그리고
- 4)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부록 II-가

GATS 제 16 조에 적용되는 한국 분야

다음 분야/하위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다.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나. 여행 대행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부속서 II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캐나다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대우)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 8.8 조(이행요건)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마. **유보내용**은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바. **기존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4. 제8.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 따라, 유보의 **유보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유보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분류를 제외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보다 우선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는 1991년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 77호 임시중앙품목분류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CPC)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SIC는 1980년 캐나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제 4판에 규정된 표준산업분류(SIC) 번호를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 9.2 조)와 현지주재(제 9.5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I
캐나다의 유보목록

분야 원주민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권리 또는 우선권을 한국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한국 서비스공급자에게는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캐나다법 1982 스케줄 B(U.K.), 1982, c. 11 인 헌법 (Constitution Act), 198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한국 투자자들 또는 그들의 투자가 임해지를 소유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과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어업
하위분야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SIC 031 어업 SIC 032 어업 부수 서비스 CPC 882 어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외국 어선이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항구에 진입하는 것 및 그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 면허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어업법, R.S.C. 1985, c. F-14 연안어업보호법, R.S.C. 1985, c. 33 연안어업보호규정, C.R.C. 1978, c. 413 상업어업면허정책 캐나다 어업분야 외국인 투자정책, 1985

분야 정부재정

하위분야 증권

산업분류 SIC 8152 금융 및 경제 행정

유보사항 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 또는 캐나다 지역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 또는 그 밖의 종류의 채무증권을 한국 국민이 취득,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재정행정법, R.S.C. 1985, c. F-11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혜택을받지 못한 소수집단에 권리나 특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법 집행과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아니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에 정의된 대로 항공기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수리, 정비, 유지보수 설비의 승인 및 캐나다 등록 항공기와 그 밖의 관련 항공제품에 대하여 수행된 작업에 관한 그런 설비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 국가의 조직, 항공당국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선택적으로 협정이나 약정을 교섭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아니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에 정의된 대로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129 그 밖의 중건설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

SIC 4552 항구 및 항만 운영산업 (정박, 적재 및 그 밖의 항구에서의 선박운영에 한함)

SIC 4553 해양구난사업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내항 항만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아래 **유보내용** 부분에 규정된 그 밖의 상업적 성격의 해양 활동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다음을 포함하여 연안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직접적으로 또는 캐나다 외부의 장소를 경유하여, 캐나다 영역 내의 또는 캐나다 대륙붕 위의 지점 간, 선박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것, 그러나 캐나다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에만 관련된 상품 또는 여객의 운송, 그리고
- 나. 선박이 캐나다 영역 내에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및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과 관련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이 유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서비스공급자의 현지주재요건, 외국 선박에 임시 연안해상운송 면허를 발행하는 기준 및 외국선박에 발급되는 연안해상운송 면허 수의 제한과 관련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사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지선서비스에 적용된다.

기존의 조치

연안무역법, S.C. 1992, c. 31

캐나다 해운법, 2001, S.C. 2001, c. 26

관세법, R.S.C. 1985, c. 1 (2nd Supp.)

관세 및 소비세 역외적용법, R.S.C. 1985, c. C-53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 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 SIC 4551 해상화물취급산업 SIC 4552 항구운영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사업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상호 관심 수역에서의 상업적 성격의 그 밖의 해양활동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오염통제(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요건 포함), 안전항해, 바지선검사기준, 수질, 수로안내, 구난, 약물남용규제 및 해양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관심 수역에서의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정, 약정 및

그 밖의 공식 또는 비공식 약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하위분야 해양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76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를 대신한 선박의 법정 검사 및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1994 년 1 월 1 일 전에 시행되었거나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다음과 관련하여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어업,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시장접근(제 9.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의 목적으로만,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명시된 대로 수정된다.

기존의 조치

부록 II-가
GATS 제 16 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캐나다의 분야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제 16 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감사</u> - 상업적 주재요건: 노바스코샤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매니토바, 퀘벡 -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온타리오 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 <u>감사</u> - 상업적 주재요건: 노바스코샤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매니토바, 퀘벡 -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온타리오
건축설계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건축사</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엔지니어링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컨설팅 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 <u>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앳래브라도, 노바 스코샤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 <u>컨설팅 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 <u>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앳래브라도, 노바 스코샤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컨설팅 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 <u>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앳래브라도, 노바스코샤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 <u>컨설팅 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 <u>엔지니어</u> –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앳래브라도, 노바스코샤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공동체/도시계획</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부동산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공인감정인</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경영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농학자</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u>전문행정가 및 공인 경영 컨설턴트</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전문 행정 기업 <u>산업관계 상담가</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 <u>농학자</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조사 및 경비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u>회사 및 직원 정보 조사</u> － 외국인 소유권을 전체 25 퍼센트 및 개인 소유 지분 10 퍼센트로 제한: 온타리오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토지 측량가</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노바스코샤, 퀘벡 <u>지각조사서비스</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u>과학기술분야전문가</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u>화학자</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 <u>토지측량가</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노바스코샤, 퀘벡 <u>지각조사서비스</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기타 사업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u>인증 통 · 번역사</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서비스 공급형태 2 에서 삭제: <u>인증 통 · 번역사</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u>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u> – 외국인 소유권을 전체 25 퍼센트 및 개인 지분 10 퍼센트로 제한: 온타리오
쿠리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 경제적 수요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노바스코샤, 매니토바

일반 토목 건축공사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u>건설</u> - 수력발전소 개발허가 신청인 및 보유자는 온타리오에 설립되어야 한다.
도매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어류가공품 마케팅(노바스코샤): 노바스코샤 거주자는 비 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장관승인을 필요로 한다.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공급형태 1 에서 삭제: - 연안해운 제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u>도시 간 버스 운송 및 정기 서비스</u> - 공공의 편의 및 수요 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프린스 에드워드섬

도로화물운송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u>고속도로 화물운송</u> － 공공의 편의 및 수요 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브리티쉬 컬롬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섬, 노바스코샤
통신	서비스 공급형태 3 에서 삭제: 노바스코샤: 어떠한 인도 마리타임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리미티드의 주식을 1,000 주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나호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나. 제1절에서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1) 제 10.2 조(내국민 대우)

2) 제10.3조(최혜국 대우)

3)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4)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5)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 2 절에서는,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한국이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제 10.5 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 10.8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

2. 제 1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 의무는 제 4 항에 규정된 대로, 제 10.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 의무는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 1 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10.9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0-나(구체적 약속)에 비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 2 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 10.9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 10.5 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는 양 당사국이 제 10.2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비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10.10 조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 9.2 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0-가(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 10.5 조제 1 항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 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⁹⁹.
3. 제 10.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의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한국은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10.9 조제 1 항다호는 제 10.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 10.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⁹⁹ 예를 들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I
한국의 유보목록

제 1 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 제 91 조 및 제 100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대통령령 제 24097 호, 2012.9.7)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거래자나 투자중개자의 2 명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 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 및 은행에 의하여 판매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대출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제하

는 등의 불공정 영업관행을 규제함으로써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규제한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11369 호, 2012.2.2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695 호, 2011.5.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140 호, 2011.12.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 10711 호, 2011.5.24)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 10959 호, 2011.7.25) 선원법(법률 제 11141 호, 2011.12.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169 호, 2012.1.17)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 11344 호, 2012.2.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343 호, 2012.2.22)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 10458 호, 2011.3.9)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 10660 호, 2011.5.1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9740 호, 2009.5.27)

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 11196 호, 2012.1.17)

도로교통법(법률 제 11298 호, 2012.2.10)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 10893 호, 2011.7.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10804 호, 2011.6.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11569 호, 2012.12.18)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11180 호, 2012.1.17)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 10912 호, 2011.7.25)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 11473 호, 2012.6.1)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11442 호, 2012.5.23)

낙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 10801 호, 2011.6.15)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11461 호, 2012.6.1)

전자서명법(법률 제 10465 호, 2011.3.29)

변호사법(법률 제 10922 호, 2011.7.2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874 호, 2011.7.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916 호, 2011.7.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394 호, 2012.3.2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61 호, 2012.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580 호, 2011.4.12)

공인회계사법(법률 제 10866 호, 2011.7.21)

관광진흥법(법률 제 10599 호, 2011.4.14)

궤도운송법(법률 제 11060 호, 2011.9.16)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091 호, 2012.9.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61 호, 2012.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136 호, 2010.3.17)

세무사법(법률 제 11610 호, 2013.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 11235 호, 2012.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276 호, 2012.2.1)

우주손해배상법(법률 제 8852 호, 2008.2.29)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 10447 호, 2011.3.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96 호 2012.7.20)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247 호, 2012.12.21)

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303 호, 2012.2.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 11461 호, 2012.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61 호, 201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048 호, 2011.9.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8 호, 2009.2.3)

주택법(법률 제 11590 호, 2012.12.18)

항공법(법률 제 11244 호, 2012.1.26)

해운법(법률 제 11480 호, 2012.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1037 호, 2011.8.4)

유보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 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15 조,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및 제 16 조의 2(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은행법 시행령 제 1 조의 6, 제 5 조, 제 9 조, 제 10 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 23427 호, 2011.12.28)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 및 제 8 조의 2(법률 제 10361 호, 2010.6.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6 조의 3(대통령령 제 23644 호, 2012.2.29)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¹⁰⁰”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을 목적으로

¹⁰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비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나. 자연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업체가 9 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보유 비율을 10 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라.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체 또는 관련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이거나 금융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58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은행법 시행령 제 24 조의 8 및 별표(대통령령 제 23427 호, 2011.12.28) 은행업감독규정 제 5 조의 4, 제 11 조 및 별표(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31 호, 2012.12.26)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서의 각 지점 위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373 조, 제 375 조, 제 379 조 및 제 386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유보내용	한국거래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그 밖의 대체 거래체제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 및 제 294 조부터 제 323 조까지(법률 제 11758 호, 2013.4.5)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한국의 공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8 조, 제 323 조의 2, 제 323 조의 3, 제 323 조의 10 및 제 378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중앙의 동등기관만이 증권 및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4 조 (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유보내용	비전문 투자자 및 일부 전문 투자자 ¹⁰¹ 가 외화표시 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이나 외국 파생상품시장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투자중개자를 통하여 거래한다.

¹⁰¹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2 호, 2009.2.3)의 기관투자자는 제외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62 조 및 제 63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은행법 시행령 제 25 조 및 제 26 조(대통령령 제 23427 호, 2011.12.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5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 조 (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 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회사의 실체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신용협동조합법 제 7 조(법률 제 11545 호, 2012.12.11) 상호저축은행법 제 6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 조(법률 제 11410 호, 2012.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4 조, 제 258 조, 제 263 조 및 제 355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 조(법률 제 10465 호, 2011.3.29) 외국환거래법 제 9 조(법률 제 11407 호, 2012.3.21)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되지 아니한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 30 조(법률 제 11461 호, 2012.6.1)
유보내용	한국에서 특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 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 10303 호, 2010.5.17)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 11501 호, 2011.9.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10924 호, 2011.7.25)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11532 호, 2012.12.11)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 11320 호, 2012.2.17)

유보내용

한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 (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협,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나. 다음을 포함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그리고
-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공공자산 및 특정조세의 면제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8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16 조(법률 제 10924 호, 2011.7.25) 농업협동조합법 제 49 조(법률 제 11532 호, 2012.1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51 조(법률 제 11320 호, 2012.2.17)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 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으로 한다.

1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주택법 제 75 조(법률 제 11243 호, 2012.1.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2 항(국토해양부령 제 554 호, 2012.12.21)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 9 조(법률 제 11407 호, 2012.3.21)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 2 절

1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1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한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58 호, 2013.4.5)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이 다음을 보장하면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공모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보전하는 것, 그리고 나. 공모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이 동종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캐나다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하는 것

부록 III-가

제 10.2 조 또는 제 10.4 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10.10 조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1. 다음의 조치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 가.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1 조의 2 및 제 11 조의 3(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15 조 및 제 16 조(대통령령 제 24097 호, 2012.9.7)}
 - 나.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 조 및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 다.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 2 조(금융통화위원회, 1999.8.19)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대통령령 제 23987 호, 2012.7.24)}
 - 다.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법률 제11407호, 2012.3.21)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8호, 2009.9.30)}

- 라.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거래자 또는 투자중개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2조(법률 제11758호, 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대통령령 제24497호, 2013.4.5)}
- 바.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24 조(법률 제 11410 호, 2012.3.21)}
- 사.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 27 조,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및 제 41 조(법률 제 11758 호, 2013.4.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4497 호, 2013.4.5)}
- 아.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 38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보험업법 제 105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 자.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까지, 그리고 제 7-36 조부터 제 7-39 조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그리고
- 차. 한국은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 밖의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 30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12.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1 조의 2 및 제 15 조(법률 제 11544 호, 2012.12.11)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및 제 9 조(대통령령 제 24076 호, 2012.8.31)}

2. 다음의 조치는 제 10.10 조제 1 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 10.2 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 9 조제 3 항(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25 조의 2(대통령령 제 24097 호, 2012.9.7)}, 그리고

나. 외국보험사의 한국의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 75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나. 제 1 절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들과 관련하여, 제 10.9 조제 1 항에 따라 캐나다가 취하는 유보

1)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2) 제 10.3 조 (최혜국 대우)

3) 제 10.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4) 제 10.5 조 (국경간 무역), 또는

5) 제 10.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 2 절에서는,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 10.5 조(국경간 무역) 또는 제 10.8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캐나다가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 10.9 조 제 2 항에 따라 캐나다가 취하는 유보

2. 제 1 절의 각 유보는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 1 항나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내용** 요소에 의하여 한정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이 부속서의 캐나다 유보목록의 다른 절에 따라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참조사항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기존의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는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 1 항다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 1 절 유보의 해석에 있어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는 유보가 취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특정 언급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 2 절 유보의 해석에 있어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들보다 우선한다.

6. 캐나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10.2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최혜국 대우),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 10.5 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유보는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로 작용한다.

두주

1. 이 유보목록에 열거된 하위 분야에서,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의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제 1 절 또는 제 2 절에 유보사항으로 조치가 열거되는 것은 제 10.10 조(예외)에 따라 신중함을 이유로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로서 달리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는 제 10.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0.9 조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제 10.9 조제 1 항다호는 제 10.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고, 제 10.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I
캐나다의 유보목록

제1절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조치	은행법 s.s. 159(2) 보험회사법 s.s. 167(2) 신탁 및 대부회사법 s.s. 163(2) 신용협동조합법 s.s. 169(2)
유보내용	금융기관 이사들의 단순 과반수는 캐나다인 거주자일 것이 요구된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최혜국 대우(제 10.3 조)
국경간 무역(제 10.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8 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

유보내용 모든 주 및 준주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제2절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전체

유보유형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0.4 조)

유보내용 캐나다의 GATS상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16/Suppl.4/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캐나다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전체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서 삭제:

7 억 5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기준액에 도달한 후 5 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퍼센트가 널리 보유하고, 캐나다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상장할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 추가:

10 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기준액에 도달한 후 3 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퍼센
트가 널리 보유되고, 캐나다의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상
장할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형태 3(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에서 삭제: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캐나다 은행법」 별
표 I 은행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없다.

서비스 공급형태 3(모든 분야)에 추가: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장관 승인 없이 연방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10 퍼센트를 초과
하여 소유할 수 없다.

어떠한 인도(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50 억 달러를 초과하
는 자기자본을 가진 연방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의 어떠한 종류든 20 퍼센트,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어떠
한 종류든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유보내용

캐나다는 15 만 캐나다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시중은행지점과 대출은행지점이 캐나다 예금보험공사의 회원기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연방

유보내용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지점을 설립하도록 승인된 외국 은행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또한 외국대출지점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10.3 조)
정부수준	연방 및 지역
유보내용	캐나다는 국경 간 증권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